

월간
재정포럼 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3년 2월호 제200호

- 현안분석** •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 박한준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허경선
 - 사회복지지출(SOCX) 추계에 관한 소고/ 김현아

- 공공정책포럼** •
-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

- 정책흐름** •
- 2012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부 마감 외

CONTENTS

권두 칼럼

재분배정책 강화, '경제양극화'의 해법인가? · 좌승희 02

현안분석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 · 박한준 08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 허경선 27

사회복지지출(SOCX) 추계에 관한 소고 · 김현아 49

공공정책포럼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 6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 통과 외 75

정책흐름

20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104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108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110

2012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114

이슈&포커스

구직실패는 '낙인효과' 외 119

부록

한 눈에 보는 2013 나라살림



재분배정책 강화, ‘경제양극화’의 해법인가?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경제양극화, 자본주의의 문제인가?

오늘날 ‘경제양극화’라는 말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성을 비판하는 인기 용어로 소득 혹은 부의 재분배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경제양극화는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 모순이 아니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경제평등주의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가 왜곡된 결과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서, 그 대처방안 또한 재분배정책의 강화보다는 시장의 차별적 동기 부여와 동반성장 메커니즘을 살려내는 데 있음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동반성장의 메커니즘이다

시장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동반성장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동기 부여 장치’이다. 시장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차별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모두를 앞선 자의 ‘성공 노하우’를 따라 배워 스스로 돕는 자로 태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시장은 경제적 차이, 차등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경제력 집중을 조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이것 없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

시장경제주체로서 우리 모두는 집합적으로 스스로를 도와 더 많은 시장성과 과를 내는 경제주체만을 상대적으로 더 우대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킴으로써 동기 부여를 통해 모두를 경제적 향상과 발전의 길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와 동기 부여 기능인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래서 모두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만들어낸다.

경제적 차이, 차등, 불평등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경제의 변화를 지속시키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니 경제적 불평등이 없이는 경제 역동성도, 부의 창출 노력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셈이다. 그래서 “경제적 차별화

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인 반면 이를 부정하는 경제적 평등주의는 경제 정책의 충분조건이다.”

경제평등주의 정책은 동반성장을 막고 양극화를 초래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와 동기 부여 기능을 잘 살려내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더 대접받도록 경제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국가는 흥하는 기업과 국민들을 양산함으로써 경제발전이 성공하였으나, 역으로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무력화시켜 기업과 국민들의 일할 동기를 차단하는 나라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경제적 성과를 무시하고 평등하게 취급하는 경제운영체제, 즉 평등주의 정책체제는 시장에서나 기업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주체들을 역차별하고 노력하지 않는 주체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대함으로써 모두 '일 안하기 경쟁', 즉 '사보타주(sabotage)'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하향 평준화시키게 된다. 소위 경제양극화란 바로 이러한 경제 하향 평준화 과정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서구 선진국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소위 경제양극화 현상도 바로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를 내걸고 지난 50여 년 동안 성과가 높은 흥하는 경제주체들은 폄하하고 오히려 성과가 낮은 주체들을 우대하는 재분배 복지정책 등 평등주의 정책들을 남발한 결과이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근본 원인은 선진국 민주주의의 경제 평등주의 이념에 따른, 소위 노조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선진국들이 후발공업국들에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한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봐야 옳다. 경제주체들이 세계화와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동기를 차단해온 반차별화, 경제평등주의 정책이 자본주의 동반성장 메커니즘을 약화시켰고, 이것이 바로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끝없이 우수한 경제주체들을 우대함으로써 동기 부여를 통해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려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폄하하여 모두를 사보타주에 나서게 하면 시장은 작동을 멈추고 경제는 하향 평준화에 되면서 양극화 현상을 노정하게 되는 것이다.

.....
 경제주체들이 세계화와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동기를 차단해온 반차별화, 경제평등주의 정책이 자본주의 동반성장 메커니즘을 약화시켰고, 이것이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

**양극화에 대한 대응은
투자와 소비할
능력이 있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투자와
소비마인드를 살려내고
중산층·저소득계층의
성장과 일할 동기를
살려냄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복원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

시장의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 회복이 해법이다


그러면 양극화의 진전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자본주의 동반성장 메커니즘에 반하여 양극화를 초래해온 재분배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답일 수는 없다. 새로운 대안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차별적 동기 부여와 동반성장 기능을 살려내는 데서 찾아야 한다. 시장의 동반성장 기능 약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우선은 과도한 소득재분배정책이나 규제로 투자나 소비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투자와 소비마인드를 저상(沮喪)시켜 그들의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투자와 소비의 연쇄파급 효과를 통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혹은 동시에 국가가 과도한 재분배 보편복지, 사회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책임진다고 약속함으로써 국민들이 부의 창출과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고자 하기 보다는 정부의 혜택만 바라게 하는 경우, 경제 정체와 실업의 증가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하향 평준화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모든 경우, 정부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시장의 차별화와 동기 부여 기능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대응은 투자와 소비할 능력이 있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투자와 소비마인드를 살려내고 중산층·저소득계층의 성장과 일할 동기를 살려냄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복원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도덕적 해이와 경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해온 재분배 보편복지제도나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자조(自助)하는 경제주체를 더 우대하는 차별적 인센티브를 담아 일할 동기를 이끌어내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은 차별화 정책의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험과 해법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수익을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로 환원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중소기업,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내·외수, 대·중소기업, 서비스·제조업의 동반성장 속에서 중산층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추진된, 강자인 대기업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 약자인 중소기업과 지방 우대와 기득권 노조의 방치 등 경제평등주의 정책이 결국은 투자할 능력이 있는 수출·제조 대기업들의 해외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해외에 넘기고, 국내투자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수요기반을

잠식함으로써 부문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양극화 해법은 결국 수출·제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규제와 노조문제를 풀어내어 이들이 수출과실을 마음껏 국내투자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대·중기업 상생도 자본의 공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 간 자본협력을 막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동반성장이 가능해지며, 중소기업, 저소득계층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경제적 성취에 따라 차별화해야 발전의 동기를 살려낼 수 있다. 역으로 지금의 평등주의 정책들을 지속·강화하면, 결국 모두 더 어려워지는 경제 하향 평준화와 양극화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양극화 해법은 결국 수출·제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규제와 노조문제를 풀어내어 이들이 수출과실을 마음껏 국내투자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
박한준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허경선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회복지지출(SOCX) 추계에 관한 소고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



박한준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hanpark@kipf.re.kr)

I. 배경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 flexible workplace)는 근로자에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나 제도로 시간적 정형성과 공간적 정형성을 완화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근무형태로 정의되고 있다(이경목 외, 2010; 홍승아, 2010). 주 5일, 1일 8시간 출퇴근 형태의 전통적인 근무방식에 벗어나, 근로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근무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기대 역할이 다양해지고 가구별 수입구조가 다원화되면서, 일과 가정의 갈등(work-life conflict)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고용환경과 인력 관리구조의 한계를 비판하는 ‘일과 가정의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업무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업무결과와 성과를 강조(result-oriented)하는 문화의 확산이다. 고용과 근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유연근무제를 이끌고 있는 양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의 여성고용률을 살펴보면, 유연근무제의 잠재적 수요와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2011년도 기준 여성고용률¹⁾은 53.1%로 OECD 회원국 평균 56.7%보다 3.6%p 낮으며, 호주(66.7%), 독일(67.7%), 스웨덴(71.9%) 등 주요국에 비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변화를 추적하여 비교하여도 2001년 50.9%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젊은 인력군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사실이다(〈표 2〉 참조).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동기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도 크게 확대되고

1) 15~64세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에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들을 앞서기 시작하여, 기업 입장에서 고급노동력의 공급주체로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출산회피나 저출산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의 산물이라고 보는 일차적인 단순 결과론적 시각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균형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업무과정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제공하여 최종 성과를 강조하는 관리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유명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Best Buy는 'Result-Oriented Work Environment (ROWE)'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의 요청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성능 조직(high-performing organization)으로 전환하여 '투입 시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혁신 전략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의 균형에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조직의 성과 제고와 우수인력의 이직을 예방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용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부처부터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응'이라는 정책 어젠다의 해결책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공공기관은 주요 노동·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과와 쟁점을 검증하는 시험대(test bed)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새로운 인력관리 방식의 도입과 확산과정에서 민간부문에 비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업무과정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제공하여 최종 성과를 강조하는 관리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 실행 동력이 매우 크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우수 여성인력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할 것을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 실시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용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와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인식수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유연근무제 의의와 유형

1. 도입배경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사의무를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노동시간과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탄생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에서 여성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 2월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선도모형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할 것을 협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family-friendly)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2011)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근로자 가운데 1만 5천여명, 약 8.3%만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유연근무형태

전통적인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방식에 따라, 크게 업무일정의 유연성(flexibility in scheduling), 업무량의 유연성(flexibility in amount), 그리고 업무장소의 유연성(flexibility in place)으로 구분할 수 있다(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0). 업무일정의 유연성은 근무일정을 탄력적, 집약

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량의 유연성은 시간제근무나 직무공유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업무장소의 유연성은 재택근무와 같은 물리적 장소의 제약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배귀희·양진모, 2011).

〈표 1〉 유연근무제 유형별 개요

구분	근무방식	내용
업무량	시간제근무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업무일정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 등을 자율 조정
	사차출퇴근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조정 매일 동일한 출근시각을 정하거나,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을 선택(출근시간대는 07:00~10:00 중에서 선택)
업무장소	근무시간 선택	주 5일 근무하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특정하지 않고, 4~12시간에서 조정하여, 일일근무시간 차별
	집약근무	주 3.5일 내지 4일 근무하여 주당 근무일수를 줄이나, 1일 근무시간을 10~12시간으로 연장
	재택근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공간에서 근무하거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재량근무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업무량의 유연성과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출퇴근 중심의 전통적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형태 중에서 규칙성과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방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다른 형태에 비해 활용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인 '사차출퇴근제'는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근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이나 집약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보다 규칙성 수준이 낮거나 근무일수를 축소할 형태로 전통적인 근무형태에서 좀더 유연성을 확대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제근무의 경우, 해외에서는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고용방식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근무방식이라기보다는 업무와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장소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근무형태는 업무량이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보다 더욱 자율적인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최대한 자율성을 제공하는 재량근무형태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근무방식도 세부 유형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도 활용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2012년 상반기 274²⁾개 공공기관의 유연근무 현황을 점검한 자료에 따르면, 159개(58.0%) 기관이 시차출퇴근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근무시간선택형을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51개(18.6%), 집약근무형 도입기관은 26개(9.5%), 재량근무형은 12개(4.4%), 재택근무형은 25개(9.1%), 스마트워크는 23개(8.4%) 기관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연성 수준이 낮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있는 159개 기관들은 대부분 실제 활용하고 있었으나, 근무시간선택형은 33개, 집약근무형은 10개, 재택근무형은 9개, 스마트워크는 11개 기관만이 실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재량근무의 경우 12개의 기관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유연근무제와 같이 기존의 조직업무구조와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성공은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나 조직문화와 같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비제도적 요인에 달려있다.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기관의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유연근무제와 같이 기존의 조직업무구조와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혁신의 성공은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나 조직문화와 같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비제도적 요인에 달려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유연근무제 활용의 잠재가치와 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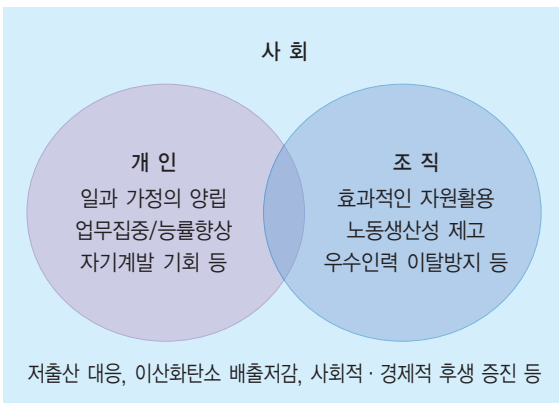
유연근무제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균형에 초점을 두고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인력관리의 효과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 확대·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시차출퇴근 활용으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자녀들의 생활패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조기출근과 퇴근으로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출 변화가 발생하여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하거나 출퇴근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유연근무제의 효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유연근무제 확산에 따른 교통분산효과가 사회적·경제적인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

2) 전체 2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연근무 도입현황 설문조사에 274개 기관이 회신하였음(응답률: 95.14%)

해외 주요국들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생애주기 가운데 결혼, 출산, 육아기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에 따른 출퇴근 교통 혼잡 및 집중 해소,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에 대한 논의도 유연근무제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³⁾

[그림 1] 유연근무제 활용편익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장소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할 경우 조직관리 관점에서 의미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재택근무나 재량근무가 활성화되고 전통적 방식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감소할수록 사무공간 확보와 유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 근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물리적 공간과 유지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탄력적 자원운용의 폭을 확대시켜주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 효과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효용과 잠재 가치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친화적인 유연근무제가 여성근로자들에게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인력관리 관점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일과 가정 양립기반 제공

가.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

우리나라 여성인력 노동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주영, 2010). 여학생 대학진학 증가에 따른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새롭게 참여하는 20대 중후반 연령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 변화추이를 연령구간별로 나누어 통계치를 살펴보면,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생애주기 가운데 결혼, 출산, 육아기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민현주, 2011). 여성인력의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표 2〉 참조).

지난 10여 년간 25~29세 구간의 여성고용률은 2001년 55.25%에서 2011년 67.76%까지 12.51%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30~34세 연령대 여성고용률은 47.76%에서 53.21%로 5.45%p 완만하게 증가하

3) Digital Quality of Lif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향후 10여 년 내 전체 근로자 중 10%가 추가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면 온실가스 281억톤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 주요국 연령구간별 여성고용률 비교 (2001~2011)

(단위: %)

국 가	연령구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15~64	50.95	51.96	51.11	52.16	52.54	53.08	53.24	53.19	52.21	52.63	53.11
	25~29	55.25	57.54	58.12	61.22	63.04	64.27	65.35	66.34	65.55	66.23	67.76
	30~34	47.76	48.57	48.37	48.89	48.60	51.62	52.05	51.74	50.13	52.86	53.21
	35~39	58.36	58.16	56.76	57.33	57.27	58.42	57.38	57.39	54.87	54.35	54.06
	40~44	61.99	62.79	62.81	64.14	64.02	64.30	65.20	64.62	63.97	64.14	64.20
	45~49	63.17	63.23	60.34	61.21	61.64	63.31	64.14	64.69	64.15	64.22	65.61
호주	15~64	61.67	62.04	62.96	63.00	64.60	65.50	66.14	66.74	66.28	66.18	66.70
	25~29	69.98	69.04	69.80	69.73	71.47	71.62	72.34	72.44	70.76	70.17	72.29
	30~34	63.86	63.61	64.44	64.55	67.16	67.18	66.85	69.03	67.77	67.72	68.04
	35~39	65.07	65.51	66.73	64.70	66.22	68.16	69.71	68.69	69.75	69.40	69.77
	40~44	70.92	70.67	70.76	70.91	73.40	73.68	73.56	75.11	73.99	73.01	73.79
	45~49	70.98	72.90	74.80	74.95	75.23	75.74	76.91	76.97	77.15	76.93	76.65
프랑스	15~64	55.73	56.43	58.22	58.23	58.36	58.55	59.57	60.24	59.85	59.69	59.66
	25~29	68.92	70.81	71.82	71.34	71.90	72.79	72.52	72.85	72.31	72.18	70.88
	30~34	69.44	69.24	71.67	71.12	71.91	70.56	73.51	76.24	73.80	73.72	73.29
	35~39	71.61	72.34	73.86	74.61	73.73	75.04	76.47	78.17	78.07	77.74	76.63
	40~44	73.84	75.10	76.88	76.86	76.09	77.31	79.13	79.46	79.27	78.68	79.37
	45~49	73.57	74.24	75.13	76.18	78.21	78.95	79.31	80.35	79.80	80.40	80.47
독일	15~64	58.72	58.83	58.74	59.19	59.55	61.43	63.19	64.32	65.18	66.12	67.68
	25~29	69.73	69.59	68.53	67.95	65.29	67.61	68.91	70.24	71.40	72.39	74.64
	30~34	70.95	71.09	68.37	72.01	66.48	70.00	70.96	70.53	72.23	72.61	74.92
	35~39	72.43	72.09	71.68	72.92	71.28	72.65	74.34	74.61	74.69	74.86	76.18
	40~44	74.95	75.20	76.35	74.76	75.16	76.63	77.46	78.15	78.61	79.71	80.81
	45~49	74.34	74.74	75.94	74.44	74.91	76.09	77.46	78.28	78.47	79.76	80.74
일본	15~64	57.01	56.52	56.81	57.36	58.10	58.83	59.48	59.74	59.75	60.10	60.25
	25~29	65.98	66.24	68.07	69.59	70.33	71.53	71.43	71.81	72.09	72.65	72.81
	30~34	55.07	55.98	56.28	58.14	58.76	59.71	60.99	61.74	63.00	64.15	64.19
	35~39	59.30	58.62	59.47	59.35	60.00	60.93	61.51	62.16	62.13	62.63	63.88
	40~44	67.79	67.62	67.44	67.60	68.25	68.92	69.80	68.67	68.16	68.30	67.98
	45~49	70.40	69.76	70.28	70.66	71.83	72.14	73.77	72.87	72.16	72.73	73.02
스웨덴	15~64	73.48	73.40	72.81	71.81	71.78	72.12	73.21	73.20	70.21	70.27	71.86
	25~29	75.35	74.47	74.64	72.68	74.02	74.44	75.76	76.31	73.97	72.65	74.76
	30~34	80.66	81.06	79.00	79.19	78.26	81.14	82.78	83.38	81.24	80.89	81.87
	35~39	83.39	83.49	82.46	82.07	82.87	82.59	84.42	85.91	83.53	83.32	83.24
	40~44	86.06	85.71	84.83	83.68	84.21	83.48	85.11	85.67	85.40	85.31	86.82
	45~49	85.76	85.12	85.12	84.79	84.23	84.31	85.88	85.16	83.29	84.35	85.85
OECD	15~64	55.08	55.05	55.08	55.44	55.91	56.68	57.23	57.57	56.67	56.63	56.74
	25~29	61.23	61.37	61.55	62.05	62.65	64.01	64.44	65.06	63.81	63.79	63.58
	30~34	61.47	61.51	61.06	62.23	62.15	63.07	63.90	64.29	63.46	63.38	63.48
	35~39	64.37	64.15	63.96	64.51	64.65	65.42	65.74	66.35	65.27	65.23	65.13
	40~44	67.31	67.13	67.26	67.46	67.88	68.63	69.28	69.33	68.54	68.31	68.41
	45~49	66.98	67.12	67.46	67.56	68.09	68.52	69.28	69.71	68.83	69.00	69.22

자료: OECD DB(updated 2012.7)

유연근무제는 여성근로자에게 노동시장 이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탈 이외의 다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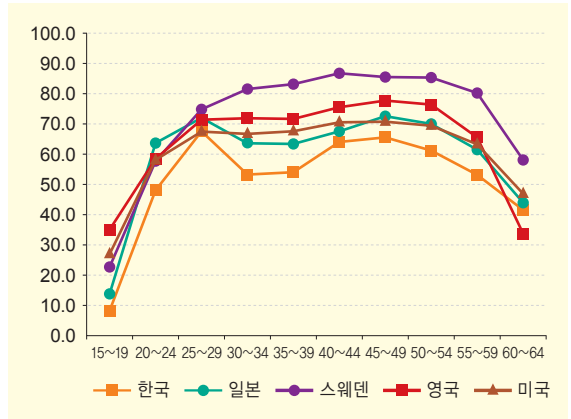
였다. 즉,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여성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령구간별 고용률 수준을 비교하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011년 OECD 회원국 여성고용률 평균을 살펴보면, 30대 여성고용률은 25~29세 연령구간 여성고용률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 경우 30~34세, 35~39세 연령대 고용률이 타 구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양 구간의 고용률은 인접구간인 25~29세, 40~44세 연령대 고용률에 비해 약 10%p 이상 낮아,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30대 초중반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가 30대 후반, 40대 진입하면서 다시 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원종학, 2007).

[그림 2]에서 관찰한 것과 같이 한국과 일본에서 연령구간별 M-curve를 그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경력단절현상은 역시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사, 출산, 양육의무에 따른 가사노동의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녀간 임금격차, 승진기회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부담이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더욱 강하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민현주, 2011, p.54).

[그림 2] 주요국 연령구간별 여성고용률 (2011)

(단위: % 세)



경력단절현상은 개인적으로도 경력이 중단된다는 점, 유희노동력이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대부분 과거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개인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결국 여성관리자와 인재양성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연근무제는 여성근로자에게 노동시장 이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탈 이외의 다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나. 직급별 여성고용 현황

2011년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2011.10.4)에서도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구조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승진경로를 따라 인사계층의 상층부에 가까워질수록 여성인력의 진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주목

하여야 하는 것은 상위직급일수록 여성인력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표 3〉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직급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단위: 명, %)

구분	계	임원급	과장급 이상	과장급 미만	
1,000인 이상 (674개)	민간기업 (610개)	688,907 (37.1)	1,433 (7.17)	42,270 (15.85)	645,204 (42.22)
	공공기관 (64개)	63,599 (29.95)	12 (3.36)	4,080 (12.72)	59,507 (34.77)
999인 이하 (873개)	민간기업 (692개)	164,104 (34.2)	3,260 (8.37)	10,932 (16.17)	149,912 (38.47)
	공공기관 (181개)	16,676 (31.63)	47 (5.19)	1,470 (12.47)	15,159 (40.75)

주: ()안은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적극적 개선조치 현황 자료」(2011.10.4. 보도자료)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접근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승진과정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인력의 중도이탈에 따른 준비된 관리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양자 모두 결과적으로는 경력사다리(career ladder)의 상층부에 근접할수록 여성인재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여성임원 선발대상(pool)도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타 연령구간에 비해 30대 여성고용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최근 여성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중 대졸 여성인력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신규 여성 입사자의 비율이 남성 입사자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기에 진입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간과 중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유연근무제는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전통적 근무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와 가사의무 간의 갈등 소지를 감소시키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에서 현재와 같은 경력단절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업무역량이 가장 활발할 30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은 기업의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연근무제가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여야 한다. 유연근무제는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전통적 근무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와 가사의무 간의 갈등 소지를 감소시키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의 직급별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나아보이지만, 공공기관 중에서 인력수요와 규모가 큰 공기업들이 남성근로자 수요가 많았던 SOC나 발전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기업의 상황이 나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의 직업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 모델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인력 및 조직관리 수단

유연근무제는 업무량, 일정, 및 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장기휴가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과 조직관리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Beauregard & Henry, 2009). 다양

**글로벌기업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유연근무제는 기업의 필요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도 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용에 따른 조직 효과성 측면의 연구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도입사례와 긍정적인 활용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Deloitte & Touche, 영국의 제약업체인 Astra Zeneca 이외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다. 단지 근로자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고 기존 우수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Deloitte & Touche가 매우 적극적인 유연근무형태로 설계된 장기휴가프로그램(Personal Pursuits Program)을 도입하였던 것도 이직하는 기존 인력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에서 기인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 채용업계의 대표적 전문가 집단인 '채용 및 고용연합(Recruitment and Employment Confederation: REC)'이 작성한 유연근무 관련 보고서 「REC Flexible Work Commission Report」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인력관리의 효과성을 개선한 사례들이 인용되어 있다. 글로벌 렌터카 회사인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Rent-a-Car)에서는 정상근무자보다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근속유지가 더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최대 전자제품 소매체인 업체 Best Buy에서는 유연근무 활용 경험자가

활용 이전에 비해 이직 의사가 3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연근무제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우수인력 유인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Perry-Smith & Blum(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시간제근무(reduced hours)도 해외에서는 인재채용과 근속유지의 중요한 인센티브라는 연구결과도 있다(Williams, Ford, Dohoring, Lee, & MacDermid, 2000). 우수인력의 채용과 근속유지 효과뿐만 아니라, 유연근무 활용자의 생산성 향상도 기업 차원의 효과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연근무제는 조직의 전략적 인력관리 수단으로도 잠재적 가치가 큰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글로벌기업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유연근무제는 기업의 필요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도 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일반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용과 확산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한계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유연근무제 활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한계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연근무제는 개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과 장소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간 접촉기회를 감소시킨다. 소속감이 떨어지게 되고 조직 소외와 고립이

심화된다는 지적과 동시에, 이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과 같은 파생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외부고객이나 협업파트너와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우려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유연근무자들은 업무분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기피업무를 담당하게 되거나, 업무량이 편중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도 관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연근무제가 인력감축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자나 재량근무자 관련 사고에 대한 인식과 산업재해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라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의 정책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활성화 과정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한계와 장애 해결을 모색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공공기관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인식 수준

현재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관근로자들의 인식 수준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업형, 기금·금융형, 연구진흥형을 포함한 31개 주요공공기관 근로자 8천여 명의 활용경험과 인식수준을 조사한 설문결과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개 유연근무방식(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에 대한 활용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시차출퇴근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1. 유연근무제 활용의사

7개 유연근무방식(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에 대한 활용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시차출퇴근(28.2%)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집약근무제 활용의사를 밝힌 근로자는 응답자의 26.5%, 근무시간선택형의 경우는 1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의 유연근무방식 활용의사는 10% 미만이었다. 활용의사가 가장 많았던 시차출퇴근, 집약근무, 근무시간선택은 모두 업무일정의 유연성(flexibility in scheduling)을 제공하는 근무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장소의 유연성보다는 업무일정의 유연성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유연근무 유형별 활용의사

(단위: %)

유형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총계	
전체	9.3	28.2	19.0	26.5	5.3	5.7	5.9	100.0	
성별	남성	8.2	30.2	18.9	26.1	5.3	5.1	6.1	100.0
	여성	11.9	23.7	19.1	27.5	5.1	7.1	5.5	100.0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무는 유연한 근무형태라기

4) 2012년 10월, 31개 공공기관 근로자 10,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8,165명이 응답하였음(응답률: 80.3%)

**업무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재량근무는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제보다
더욱 견고한 신뢰기반이 필요하다.**

보다 불안정한 근무형태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활용의사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업무장소의 유연성(flexibility in place)을 제공하는 근무형태에 대한 활용의사도 5% 수준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나 재량근무의 직접적인 활용이나 관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본질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의 기반인 조직 신뢰가 성숙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업무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재량근무는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제보다 더욱 견고한 신뢰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근무방식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유연성이 낮은 유형의 활용의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유연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호가 낮다기보다는 제도 활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규칙성과 보수적 형태를 선호하면서 안전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활용의사가 높게 나타난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근무형태 중에서도 규칙성이 강한 시차출퇴근이나 집약근무가 근무시간선택보다 활용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성향을 일관성이 있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5〉 향후 유연근무 활용 동기

(단위: %)

구분	육아양육 가사의무	학업 지속	취미여가 시간활용	출퇴근 체증회피	건강 문제	업무수행 효율증대	활용가능 업무성격	시간활용 자율성	총계	
전체	19.8	4.7	17.7	17.2	1.0	23.3	8.6	7.8	100.0	
성별	남성	17.9	4.2	18.4	17.2	1.0	24.8	9.5	7.0	100.0
	여성	23.9	5.7	16.0	17.3	0.9	19.9	6.8	9.5	100.0

성별에 따른 활용의사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집약근무에 대한 활용의사가 시차출퇴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주당 근무일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유연근무형태 활용의사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도 남성근로자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근로자는 육아와 가사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⁵⁾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17.9%)도 육아와 양육 등 가사의무 때문에 유연근무제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은 맞벌이 형태의 가구별 수입구조가 증가하면서 조직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5) 10세 단위 연령구간별로 비교하면, 30대 근로자의 경우 '집약근무제' 활용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택이유도 '육아와 가사의무'에 대한 응답빈도가 가장 높았음

〈표 6〉 주요기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의사

(단위: %)

구 분	업무량		업무일정		업무장소		
	시간제 근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재량근무
한국수자원공사	9.5	31.3	21.0	30.3	2.5	1.9	3.5
한국남부발전	12.9	32.1	25.4	22.6	2.8	1.4	2.8
한국전기안전공사	6.2	31.3	16.1	16.5	7.2	12.0	6.0
한국도로공사	6.5	26.8	13.3	35.7	4.4	9.7	3.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1	34.7	22.4	16.3	4.8	1.4	1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5	28.4	16.8	24.2	5.3	3.2	1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8	31.0	24.5	21.5	5.0	3.0	8.0
한국원자력연구원	5.6	39.9	21.5	22.3	3.1	0.8	6.7
정보화진흥원	4.1	22.4	14.2	25.7	9.7	18.7	5.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8.7	18.2	16.9	29.4	8.2	7.8	10.8
한국고전번역원	2.2	6.7	39.3	25.8	16.9	1.1	7.9
서울대학교병원	19.2	18.9	20.6	23.6	3.7	3.0	10.9
한국소비자원	7.9	7.1	12.4	38.6	13.7	13.3	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5	20.7	18.0	27.2	10.6	7.2	2.9
국민체육진흥공단	19.5	26.0	29.6	20.3	2.8	1.8	0.0
예금보험공사	9.0	24.3	11.2	24.5	9.0	17.0	5.1

근로자들의 활용의사를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에너지나 SOC기관과 비교하여 심사평가기관이나 연구기관 근로자의 활용의사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 기관들도 시차출퇴근이나 집약근무를 활용하겠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하나, 다른 기관보다 재택근무와 재량근무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가 주로 연구과제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정책연구기관의 재택근무와 재량근무수요가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기술과학연구기관보다 높게 나타

근로자들의 활용의사를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나고 있는 것도 역시 기관의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책연구기관과 달리, 특수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 랩(lab)에서만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술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유연성에 대한 수요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유사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근로자들도 담당하고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실제 활용되지 않고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기관도 있으며,
특정 형태를 중심으로 편향된 활용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있는 업무성격과 환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물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위해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원격근무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기관의 업무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화진흥원 근로자의 스마트워크 활용의사가 높은 것은 주무부처와 함께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며, 이미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스마트워크 활용에 대한 부담이나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요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의사 분포는 근무형태별 활성화를 기관의 사업성격에 따라 다원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주요 유연근무형태 활용만족도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실제 활용되지 않고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기관도 있으며, 특정 형태를 중심으로 편향된 활용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한 측면도 있으나, 도입 초기부터 활용 경험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연근무제의 개선 여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활용수준이 미비한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를 제외하고,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스마트워크 활용 경험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시간제근무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무의 유연성보다 고용형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 기혼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간제 근무형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7〉 유연근무 경험자 평균 만족도 비교

(단위: 점 / 7점 척도)

유형	시간제 근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스마트워크	
전체	5.12	5.53	5.17	5.70	
성별	남성	5.05	5.51	5.05	5.62
	여성	5.31	5.58	5.39	6.02
결혼여부	미혼	4.87	5.35	5.13	5.69
	기혼	5.24	5.59	5.50	5.73

공공기관 유연근무자의 활용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시차출퇴근 유형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향후 활용의사도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출퇴근 피크타임을 피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육아의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근무방식에 가장 근접해 있어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에서도 활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시차출퇴근제와 함께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근무시간선택형태는 활용만족도가 높지 않다. 반면, 업무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형태 중에서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

대되고 스마트워크의 활용만족도는 5.70/7점 수준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는 광의의 원격근무방식을 스마트워크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워크센터(원격근무센터)에서 근무하는 형태 이외에도 안전점검과 시설검사 등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경우, 사무실 출퇴근을 강제하지 않고 지급된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어, 스마트워크센터 활용근로자의 만족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개별 유연근무방식의 활용만족도 결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첫째, 시간제근무제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일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근로자보다는 기혼근로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연근무형태가 활성화된다면 기혼·여성근로자의 직업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둘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시차출퇴근제와 같이 보편적 활용범위가 높거나, 원격근무와 같이 특정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의 활용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활용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만족도가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활용규모가 늘어나는지 선후관계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3. 유연근무제 활용 중단이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속부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제도의 도입, 설계, 관련규정 정비 등은 인사관리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인사부서는 지원업무를, 사업부

시간제근무제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일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근로자보다는 기혼근로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는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에는 유연근무제의 실제적인 집행과 활용수준, 그리고 성과는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해당부서의 조직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566명이 유연근무제 활용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가운데 31.2%가 더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서 중단하였다고 밝혔지만, 27.6%는 상사나 팀원들의 눈치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연근무자에 대한 과도한 업무량 편중현상(6.9%), 승진과 인사상 불이익(3.7%), 조직생활 고립(2.7%),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협(1.6%)과 같이 제도자체나 업무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조직문화·근무환경적인 원인이 42.5%에 이르는 점은 많은 유연근무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설문응답자 가운데 유연근무를 중단한 여성근로자의 37.8%가 상사나 팀원의 눈치로 유연근무제를 중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원 모두가 운영과정상 발생하는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유연근무자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조직 분위기(organizational atmosphere)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우수기업의

6)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유연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용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인사담당 부처(장)는 승인이 아닌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전통적 근무방식을 대체하는
실질적인 근무형태로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입과정에서도 관찰되었던 문제점으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거점을 둔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Lilly and Company도 유연근무제 도입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다.

유연근무의 문제점으로 외부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내부적 의사교환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중단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연근무제의 문제점이 아니

라 기존 조직 및 업무구조와 유연근무제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내외부적 업무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체계를 재설계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업무수행의 불편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때문에 유연근무를 중단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전통적 근무방식을 대체하는 실질적인 근무형태로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연근무는 조직 전반의 일하는 방식을 본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근무형태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재량구조의 재조정과 조직구성원의 인식 전환도 모두 성공적으로 수반될 때 완성될 수 있다.

〈표 8〉 유연근무 활용중단 이유

(단위: %)

구분	제도활용 원인소멸	업무수행 지연불편	인사승진 불이익	업무량 증가집중	조직생활 고립우려	상사눈치 팀원불만	소득감소	고용불안	기타	총계	
전체	31.2	13.1	3.7	6.9	2.7	27.6	1.0	1.6	12.2	100.0	
성별	남성	32.1	16.5	4.0	6.5	2.8	23.2	1.5	1.5	11.9	100.0
	여성	29.5	5.1	2.6	7.7	2.6	37.8	0.0	1.9	12.8	100.0

〈표 9〉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단위: 점 / 7점 척도)

구분	유연근무 인식제고	상급간부 우선활용	명확한 업무부여	전체업무 매뉴얼화	성과결과 공정평가	자기계발 지원강화	직원역량 우선강화	업무수행 자율부여	시설기기 지원강화	엄격한 근태관리
전체	5.65	5.67	5.75	5.14	5.78	5.68	5.65	5.83	5.54	5.24
성별	남성	5.62	5.67	5.71	5.06	5.74	5.67	5.62	5.51	5.20
	여성	5.71	5.69	5.85	5.34	5.84	5.72	5.72	5.60	5.34
직급별	실무자	5.70	5.72	5.76	5.11	5.79	5.69	5.63	5.56	5.22
	관리자	5.45	5.51	5.70	5.20	5.74	5.59	5.73	5.45	5.33
	임원급	5.67	5.73	5.88	5.47	6.00	5.35	5.90	5.43	5.31

주: 유연근무 인식 제고: 자리를 지켜야 일을 한다는 인식 탈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공감수준(5.83)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공정한 성과평가(5.78), 명확한 개인별 업무부여(5.75), 상사들의 선도적 활용(5.67), 자기계발 지원제도의 확대(5.68), 자리를 지켜야 일이 된다는 인식 개선(5.65) 등 조직 내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방향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모든 업무의 매뉴얼화(5.14)와 보다 정밀한 근태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강화(5.24)하는 것과 같은 통제나 (업무)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에는 상대적으로 동의수준이 낮았다.

무엇보다도 남녀근로자 모두 유연근무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기기 제공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조성보다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활성화 방향에 대한 견해에서 직급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실무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강한 데 비해, 관리자급 이상의 경우에는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업무과정을 하나씩 정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엄격한 근태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방향보다는 자율성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환경이 활성화를 위한 토양을 제공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즉, 유연근무 중단이 주요 원인이었던 ‘상사나 팀원들의 눈치’ 때문에 활용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통제보다는 먼저 자리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인식의 개선, 충분히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결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원칙이 경영진부터 실무자까지 공유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녀근로자 모두 유연근무를 위한 시설구축 및 기기 제공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조성보다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었다.

V. 맺음말

유연근무제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유연근무제가 일-가정 균형(work-life balance)을 지향하는, 또는 가정친화적(family-friendly)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유연근무제 도입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가 간과되고 있다.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경력단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일과 가정의 갈등, 업무와 가사의무 불균형에 대한 책임소재를 근로자로부터 사용자인 기업과 기관에 180도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과거 사용자인 기업이나 기관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직장업무 수행과 가사의무 이행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 책임은 대체로 개인 근로자에게 미루어져 있었고, 이들에게는 노동시장 이탈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 즉, 기업이나 기관이 갈등 해결이 아닌 회피하는 상황에서 해결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었고, 기혼여성근로자들은 노동시장 이탈이라는 개별적 희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선 사용자에게 일-가정의 균형책임을 부과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새로운 근무방식의 도입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의 충분조건이라면, 오랫동안 구성원들이 집단경험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한 문화의 변화는 필요조건이다. 조직문화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판단의 기본전제이고 신념이다.

**활용여건이 성숙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아 근로자들의 활용의사가
미분화 상태에 머물러 특정 근무형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보수적인 조직문화의 변화가 없다면 유연근무제는 단지 신화(myths)로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기관에서는 유연성 수준이 가장 낮고 전통적 근무 방식과 유사성이 높은 시차출퇴근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직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유연근무에 대한 수용도(acceptance level)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낮은 형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전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유연근무방식 중에서 향후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겠다는 근로자 비중이 가장 크며, 이밖에 활용의사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방식들도 모두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 아직은 유연근무제 활용에 친화적이지 않은 조직문화 가운데 근로자들이 직·간접적인 경험과 학습을 반복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형태의 유연성이 높은 근무방식보다는 시차출퇴근처럼 활용부담이 적은 근무형태만을 중심으로 활용의사와 선호도가 재강화(reinforcement)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용여건이 성숙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아 근로자들의 활용의사가 미분화 상태에 머물러 특정 근무형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기관별 활용의사 비중에서 확인한 것처럼, 병원과 같이 업무가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관에서는 시간제근무에 대한 수요가, 시설 및 안전점검을 위해 외근이 많은 기관에서는 스마트워크가, 연구기관과 같이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

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재량근무가 절대적으로는 미비한 수준이기는 하나 타 기관에 비해 활용의사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기관 성격과 근무형태의 적합성(fit)에 따른 활성화전략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 밖에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반 시설과 기기가 보급되어야 하고,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자리를 지켜야 일을 한다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과 상사부터 선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 모두 중요한 전략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조직 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 상사에 대한 신뢰, 동료 간의 신뢰, 하급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유연근무자들이 업무를 회피하고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악용한다는 불신이나 유연근무를 하면 인사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신은 장애가 될 뿐이다.

둘째, 업무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유연근무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접근방식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성과를 강조하는 업무환경 속에서, 특정 형태의 유연근무를 하면서 과연 담당업무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책임별 연구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재택근무와 같이 ‘업무장소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정책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근무형태(재택근무, 재량근무, 스마트워크)를 활용할 의사가 20%가 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학과 기술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재량근무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있으며, 스마트워크 활용의사는 가장 낮

게 나타나고 있다. 고도화된 랩(lab)과 같은 특수한 시설과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담당자들은 기관이나 본인에게 어떤 근무형태가 적합한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관 업무성격에 따라 활성화 전략의 차이는 필요하나, 굳이 유연근무형태를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관 내·외부감사는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유연근무제 활용의 기본 전제는 '신뢰'이다. 관리자와 실무자 사이의 신뢰 기반이 없다면, 유연근무제는 성공할 수가 없다. 단지 감사를 위한 감사를 지양하여야 한다. 그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유연근무자들의 '근태관리' 강화를 주장하거나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업무수행 과정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스크린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종적인 성과로 평가하는 방식이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근태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감사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주도할 기관의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유연근무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악용하는 소수를 막기 위해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대다수 수요인력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불신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어렵게 하고, 근태관리를 강조하는 일차원적인 감사방식은 불편함을 증가시킬 뿐, 신뢰를 구축·강화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문화가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재택근무나 재량근무와 같은 자율적인 근무방식의 도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와 상급자들의 적극적인 활용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성화 노력은 최근 논의되는 여성임원 30% 의무할당제와 정부부처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중요하다. 역사 속에서 형성된 기존 조직문화의 기본적인 전제(basic assumptions)와 가치체계(values)를 흔들 수 있는 핵심동인(動因)이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E. H. Schein은 “문화와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leadership and culture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고 하였다. 늘 성공적인 혁신사례에서 리더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유이다. British Telecommunication, Eli Lilly and Company, Astra Zeneca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에서 유연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이 CEO의 결단, 고위층(Senior Leaders)의 지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도 조직문화의 변화역군(change agent)으로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성화 노력은 최근 논의되는 여성임원 30% 의무할당제와 정부부처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임원 30% 의무할당제 역시 고용과 인력관리의 시험대인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30% 의무할당제가 여성인재 진출 확대의 본질적인 해법이 될지, 승진과 인사과정에서의 불이익과 차별을 제거하고 비자발적인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목격되고 있는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 심각한 가족분리현상이 공공기관 이전과정

에서도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낭비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유연근무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에게 상황에 맞게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의 자율성을 제공한다면, 우수인력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들도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강한 유인구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PF

〈참고문헌〉

- 김주영,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리뷰』 36, 2010
- 배귀희 외, 「공무원 유연근무제 정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탄력근무, 시간제근무 및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2011
- 민현주,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4(1), 2011
- 원종학,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예지은,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 홍승아 외,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Harrington, B., *The Work-Life Evolution Study*, Boston College Center for Work & Family, 2007
- Moen, P. & Kelly, E. L., *Flexible Work and Well-Being Study*, University of Minnesota, 2007
- Perry-Smith, J. E. & Blum, T. C., “Work-Life Human Resource Bundl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2000
- Recruitment & Employment Confederation, “REC Flexible Work Commission Report,” REC, 2011
- Schein, E. G.,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4th(ed.), John Wiley & Sons Inc., 2010
- Beauregard, T. A. & Henry, L. C., “Making the Link between Work-Life Balance Practi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9(1), 2009
- Galinsky, E., Bond, J. T., & Hill, J., “When Work Works: A Status Report on Workplace Flexibility,” IBM, 2004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I. 서론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kheo@kipt.re.kr)

공공기관 임원에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후보를 선임하는 낙하산 혹은 정치적 임용의 이슈는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이러한 정치적 임용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수용도 역시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다.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한 단계 선진화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석 또는 공석 예정인 공공기관의 임원 직책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임원 후보의 모집과 자격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다. 2007년 이전에도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사장 직위에 대하여 사장 후보를 모집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존재하였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이후에는 사장 혹은 기관장뿐만 아니라 감사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등을 통해 후보를 모집하고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와 추천을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 절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한 목적은 공공기관 임원 후보 선정에 대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임원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함이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큰 환영을 받으며 도입되었다.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임원추천위원회는 현재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핵심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가 도입 당시 기대했던 역할과 효과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7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효과, 실제 운영상 발생하는 이슈를 파악하는 것을 목

2012년 2월 현재 공공기관은 288개로 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 공공기관 177개로 구성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의 수는 약 3,000명에 달한다.

적으로 한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와 후보추천 과정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적용 대상인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학계전문가, 주무부처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정치적 임용

1. 공공기관 임원 현황

2012년 2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88개로 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 공공기관 177개로 구성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의 수는 약 3,000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의 임원 인사를 진행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체 임원은 약 1,300명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

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관장의 임기는 3년, 감사와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는 연중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 (2013년 2월 기준)

(단위: 개, 명)

		기관장	감사 (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상임)	이사 (비상임)
공기업 (28)	시장형 공기업 (14)	14	11	1	52	87
	준시장형 공기업 (14)	14	13	3	55	92
	소계	28	24	4	107	179
준정부기관 (83)	기금형 준정부기관 (17)	17	13	4	55	12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6)	66	20	48	117	528
	소계	83	33	52	172	65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111)		111	57	56	279	833
기타 공공기관(177)		178 ¹⁾	41	156	109	1,179
전체 공공기관(288)		289	98	212	388	2,012

주: 1)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재)명동·정동극장은 복수의 기관장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2013

2.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이슈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용 문제는 공공기관 관리제도에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엽관제(獵官制)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운동원과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관행으로, 엽관제는 정치적 지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정부에 대한 헌신을 높이고, 또한 정부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물을 정무직에 임명함으로써 정부와의 협력을 향상시켜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

면, 임명된 이의 자질이나 직책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헌신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적격한 인사운영을 초래하기도 하며, 선임된 임원이 공공기관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사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정부 내 임명직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공기관 임원직의 직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임용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은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정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적격자에 대한 임명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낙하산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자질이나 적격성에 상관없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밀실에서 결정해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관행을 지칭하는 용어를 뜻한다(김병섭·박상희, 2010). 넓은 의미의 낙하산 인사는 기관의 내부 승진자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모든 정치인, 관료,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좁터 좁은 의미의 낙하산 인사는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임용된 임원 중에서도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5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별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을 분석한 연구(곽채기, 2002)는 전직 공무원, 군인, 정치인 및 정당인이 사장과 감사에 임명된 경우가 전체의 80~9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및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2008년 신규 임명된 180명의 기관장¹⁾에 대한 성향과 경력을 분석한 결과 58명(32.2%)의 기관장이 대통령 측근, 낙천·낙선 인사 등 낙하산 인사로 평가되었으며(참여연대, 2008), 중앙일보의 2012년 분석은 286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45%가 대선캠프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

5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별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을 분석한 연구(곽채기, 2002)는 전직 공무원, 군인, 정치인 및 정당인이 사장과 감사에 임명된 경우가 전체의 80~9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에 있어서 정치인·관료들이 공공기관을 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사회공공연구소, 2011)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임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부적격한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임원의 경영 역량과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곽채기, 2002). 또한, 직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청렴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다면 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연구는 기관장이 비실적 요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용된 경우에 실적 요인에 의해 임용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실적을 보여주며, 관료 출신의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이명석, 2001).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의 정치적 임용 여부와 경영성과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대신 해당 기관에 대한 경험과 업무 전문성 여부가 경영성과 향상에 더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현, 2007; 유승원, 2009). 이는 정치적 임용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최근의 정치적 임용은 유사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추진현황」(2008.6)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에 맞게 전문성 있는 임원을
투명하게 선임하여 기존의 낙하산 논란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한 분야의 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임원 후보에 대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이민호·강정석, 2010). 그러나 최근에도 해당 기관이나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를 기관의 임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경우 기관의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임용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정치적 임용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기관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기관 내부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어 기관 내부의 동기(motivation)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임용의 범위가 임원뿐만 아니라 간부직 일반 직원에까지 확대된다면 인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기관 내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치적 임용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기관에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수용도 역시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임이 일방적으로 내정되고 통보되므로, 임원선임에 대하여 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임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선임된 임원에 대한 기관과의 일체감도 낮아진다. 또한, 임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임원의 자격 논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선임된 임원에 대한 수용도도 낮아지게 된다.

기존의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대한 연구는 공공기관

의 임원선임에 대한 논쟁은 임원의 이전 주요 경력이 관료, 군인, 정치인 출신인지 혹은 현 정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보다는 선임된 임원이 적절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임원선임의 과정 역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수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제도 개선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임원에 대한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에 맞게 전문성 있는 임원을 투명하게 선임하여 기존의 낙하산 논란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III.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1. 공공기관 임원선임 제도의 변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공공기관 관리법률인 「정부투자기관 관리법」(’73.2.6)에서 시작되었다. 동법의 제6조 임원의 선임 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를 임명제로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임명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임명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84.3.1)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1999년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인사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추천제’라는 명칭의 기관장 공모제를 정부투자기관에 도입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개정(’99.2.5)으로 도입된 기관장 공모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다방면의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정치적 임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순수한 취지였다. 공모제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여 추천하도록 하였고, 기관장 이외 임원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명제를 운용하였다. 정부산하기관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4.4)」의 도입에 따라 기관장 공모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기관장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양쪽 모두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실시하고 사장(기관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기관장) 후보의 탐색과 검증,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대체하였다. 이전에는 공공기관 임원의 추천·제정·임명권 대부분을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어 자율경영 측면에서의 개선을 크게 저해했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내부 지배구조의 운영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제도에 많은 변화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공모제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범위를 기존의 기관장에서 비상임이사²⁾, 감사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적용기관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임원임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임명 절차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임원임명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정부투자

임원임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임명 절차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임원임명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각각 적용되던 절차를 「공운법」하에 표준화하였다.

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각각 적용되던 절차를 「공운법」하에 표준화하고 통일한 것은 공운법 도입으로 인한 큰 변화이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2〉 임원추천 절차의 변화

법체계	적용시점	제 도	대상직위	적용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법)	1999.2	사장추천 위원회	기관장	정부법 대상 13개 ¹⁾ , 민영화법 대상 3개 ²⁾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산법)	2004.4	기관장추천 위원회	기관장	정산법 대상 88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2007.4	임원추천 위원회	기관장 비상임이사 ³⁾ 상임감사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주: 1) 정부투자기관(2004.12 기준)은 공기업 13개임: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 2005년에는 철도공사를 포함 14개 기관임
2) 공기업구조조정및민영화특별법(민영화법)에 포함되는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3) 소규모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함

2) 소규모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1천억원 미만,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규모 1조원 미만, 직원 500명 미만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해당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특수성에 따라 임원선임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공운법」의 개정을 통해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의 인사 자율권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의 탐색 및 검증·추천의 1차적인 책임을 해당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임원의 결원 발생 또는 예정 시에 임원 후보의 모집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후보자의 모집,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5배수로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주된 역할이다. 후보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 공모·추천 병행방식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개모집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한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원활한 공운위 운영을 위하여 인사 안건의 경우 인사보수 소위원회(위원장: 재정부 차관)를 설치하여 사전 인사안건을 심의하여 공운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운법」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각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선임 절차와 임명권에 대해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특수성에 따라 임원선임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공운법」의 개정을 통해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의 인사 자율권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선임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사원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공운

법」 제 27조).

〈표 3〉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절차 (2012.7 기준)

구분	임명 절차
기관장	공기업 (대규모)임추위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주무기관의 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소규모) ¹⁾ 임추위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주무기관의 장 임명
	준정부기관 (대규모, 업무특수) ²⁾ 임추위 추천 → 주무기관의 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소규모) 임추위 추천 → 주무기관의 장 임명
상임이사	공기업 기관장 임명 * 상임감사위원은 감사 임원선임 절차를 따름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 * 다른 법령에서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구성 * 상임감사위원은 감사 임원선임 절차를 따름
비상임이사	공기업 임추위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기재부장관 임명
	준정부기관 (소규모)주무기관의 장 임명 ³⁾ (대규모, 업무특수) ²⁾ 임추위 추천 → 주무기관의 장 임명 * 다른 법령에서 별도 추천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구성
감사	공기업 (대규모)임추위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기재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소규모) ¹⁾ 임추위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기재부장관 임명
	준정부기관 (대규모, 업무특수)임추위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기재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소규모)임추위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기재부장관 임명

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에 해당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규모 조원 이상 직원 500명 이상인 자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은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이 해당됨
 3) 당연직 비상임이사 선임 제외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 검증하여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사회가 작성한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두는 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당해 기관의 임원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과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5~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주무부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에 주무부처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어 사실상 주무부처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과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서 특징적인 것은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한다.

〈표 4〉 공공기관 임원 추천 방식의 변화

구분	공운법 이전	공운법 이후
추천 범위	기관장추천위원회 통해 기관장 후보자만 추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 후보자를 추천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 + 이사회 선임 외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과반수 이상의 비상임이사+ 이사회 선임 외부위원(공무원 참여 없음) 준정부기관: 과반수 이상의 비상임이사+ 이사회 선임 외부위원(공무원 참여 가능) * 기관 구성원 의견 대변인 1인 포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비상임이사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의 외부위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사회회의 과반수 이상이 비상임이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위원의 선정에서도 비상임이사의 의사결정권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
검증하여 추천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가 작성한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도
담당하고 있다.**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 검증하여 추천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가 작성한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도 담당하고 있다.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과 모집³⁾

임원추천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사항은 임원후보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할 것인가이다. 기관의 성격과 직무수행요건·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기관장 후보의 모집은 공개모집과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에 대한 공개모집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임원후보자 심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와 추천된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한다. 비상임 임원에 대한 심사는 기관의 특성

과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 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한다.

3) 임원후보자 추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 후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종적으로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한다. 그러나 직위의 특성, 대상 직위의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IV.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1.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현황

본 연구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이슈, 효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0개 기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규 지정기관 2개 기관을 제외한 108개 기관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공공기관과 관련부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15건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도입된 후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관 내부의 의견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어느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와 향후 개선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3) 산설 2008.6.20

를」과 지침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임원의 모집과 심사,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매우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제 운영은 원칙적으로 법과 지침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의 후보 모집, 심사와 추천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상임이사를 외부에서 모집할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응답기관 전체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감사에 대해서는 3개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⁴⁾를 제외한 응답기관 전체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비상임이사는 63%의 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비상임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규모와 특수업무 준정부기관⁵⁾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기관의 장이 비상임이사를 직접 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임이사는 법률상 임원추천위원회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24%의 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답변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임기만료자의 비연임 결정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으로 구성을 시작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

임원추천위원회는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임기만료자의 비연임 결정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으로 구성을 시작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하는 민간위원은 회사 측과 노조 측의 협의에 의해 추천하는데 상당수의 기관에서 퇴직한 임원 (44%)이나 퇴직한 노조의 간부(18%), 상급 노조의 대표(12%)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외의 민간위원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데, 이사회의 추천, 내부 인재 풀, 직능단체 추천,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의 추천, 여성부 인재 DB 추천⁶⁾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위원을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1차 회의에서는 임원후보의 모집방법과 절차에 대해 결정한 후 후보자에 대한 모집과 추천을 실시하며, 2차 회의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3차 회의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3~5배수의 대상 후보자를 확정하고 후 정부에 제출하고 있었다. 아래 그림은 한 국수자원공사의 임원선임 절차 및 추진 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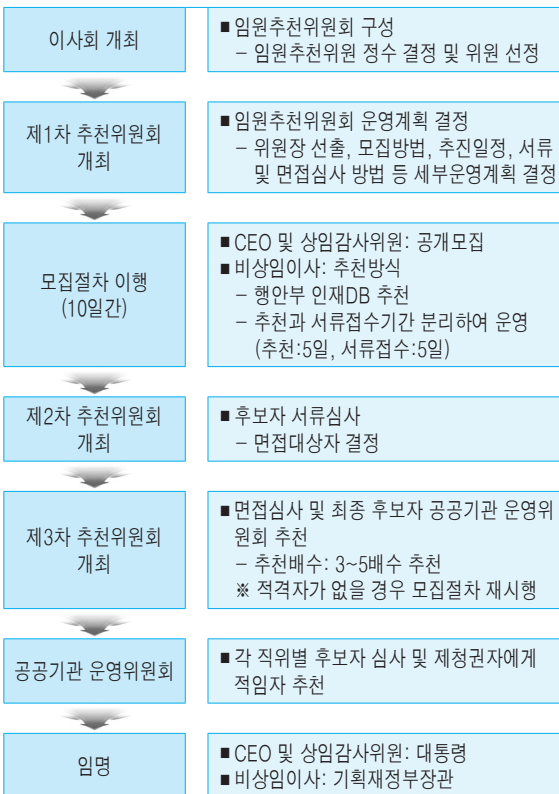
4) 항만공사는 별도의 상임감사 없이 감사위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5) 대규모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 직원 정원인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직원 500명 이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해당된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은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이 해당된다.

6) 여성부가 행정안전부의 인재 DB 중에서 여성인재에 대한 정보를 접근(access)하여 제공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공정한 절차의 수립과 전문성 검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편이었으나 독립적 객관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1] 임원선임 절차 및 추진 일정(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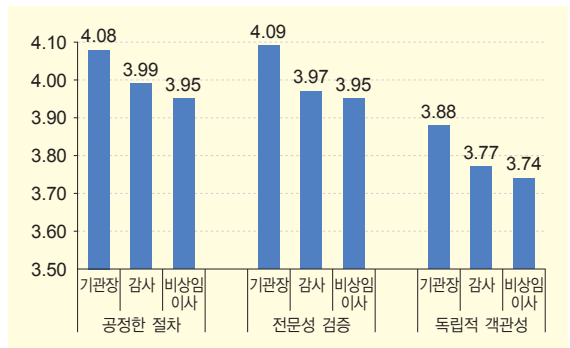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효과

임원추천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공정한 절차의 수립, 후보의 전문성 검증, 독립적 객관성의 확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점 만점의 만족도 조사⁷⁾에 대해 세 가지 항목 모두 4점 정도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임추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항목별로 살펴 보았을 때 공정한 절차의 수립과 전문성 검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편이었으나 독립적 객관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직위별 응답을 살펴보면, 기관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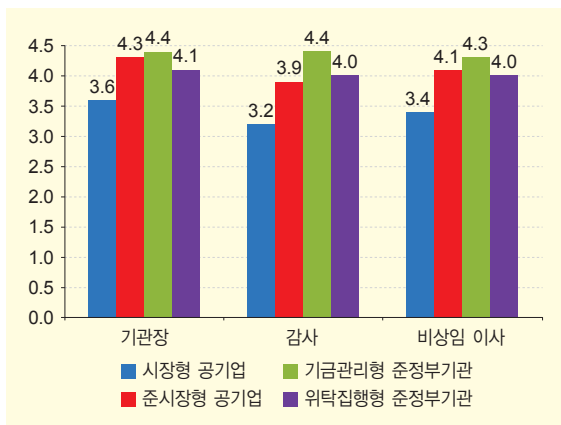
주: 1(전혀 아니다)~5(매우 그렇다)의 5단계 만족도 조사 결과임
 자료: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설문조사, 2013

공공기관 유형별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을 살펴보면, 기관 유형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기관은 전체 응답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만

7) 1(전혀 아니다)~5(매우 그렇다)의 5단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결과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응답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공기업에 속하는 기관은 기관장 >비상임이사>감사의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반면,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기관은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의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는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의 만족도가 가장 높지만, 공기업의 경우 감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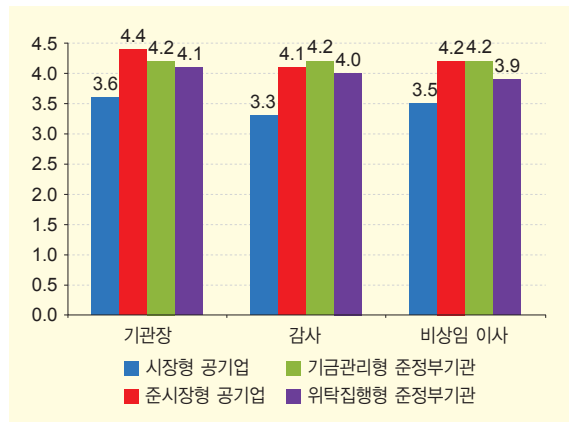
[그림 3] 공공기관 유형별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평가 - 공정한 절차



주: 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의 5단계 만족도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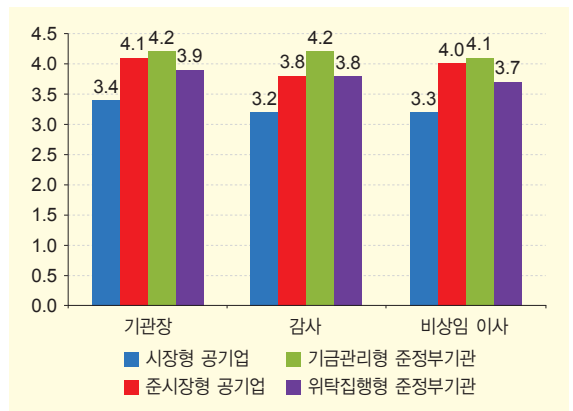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의 만족도가 가장 높지만, 공기업은 감사에 대한 불만이, 준정부기관은 비상임이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다.

[그림 4] 공공기관 유형별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평가 - 전문성 검증



주: 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의 5단계 만족도 조사 결과임

[그림 5] 공공기관 유형별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평가 - 객관적 독립성



주: 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의 5단계 만족도 조사 결과임

설문조사의 결과는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지만, 심층 인터뷰 결과는 실제 임원추천위원회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응답결과는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결과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구체적으로 임원 인사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임용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외부위원을 임원 인사에 참가시켜 객관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것을 긍정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특히 임원 후보의 자질과 경력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 기관의 구성원 의견 대표 1인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의견표시가 가능해졌다는 점, 임원 후보의 추천에 대해 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일방적인 임원임명보다는 기관의 권한과 의사표현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기능으로 꼽았다. 더불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이후 기관 내부의 임원 인사와 관련된 불만이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상 논의된 임원추천위원회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지만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대한 기관의 의견제시와 권한 제고에 있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원 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기관 인사의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표 5〉 임원추천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화

구분	임원추천위원회 이전	임원추천위원회 도입 이후
정치적 임용의 범위	부처의 산하기관, 자회사, 협회 임원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선임이 이루어짐	• 임추위 도입으로 인한 변화 없음
공공기관 임원 선임 방법	감사와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부의 임명 ¹⁾	• 임원후보의 탐색과 검증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기관에 부여 • 기관의견의 공식적 표시 가능 • 임추위를 전후하여 정부와의 협의 가능 •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관의 권한에 대한 상징적 의미
임원 후보의 전문성/적격성 검증	전문성과 적격성에 대한 공식적인 후보검증 절차 없음 ¹⁾	• 공식적인 후보 검증절차 마련 • 후보검증의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주: 1) 임원추천위원회 도입 이전에도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모제와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음

3.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이슈

설문조사의 결과는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지만, 심층 인터뷰 결과는 실제 임원추천위원회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임원 후보에 대한 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특정 후보가 다시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임원추천위원회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데 대해 불만이 발생하고 있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정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로 다시 추천하기 위해 이러한 검증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도적으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결정권이 여전히 강력하고, 민간위원의 선정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임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심층인터뷰 결과는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있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임원추천위원회라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함을 확인시켜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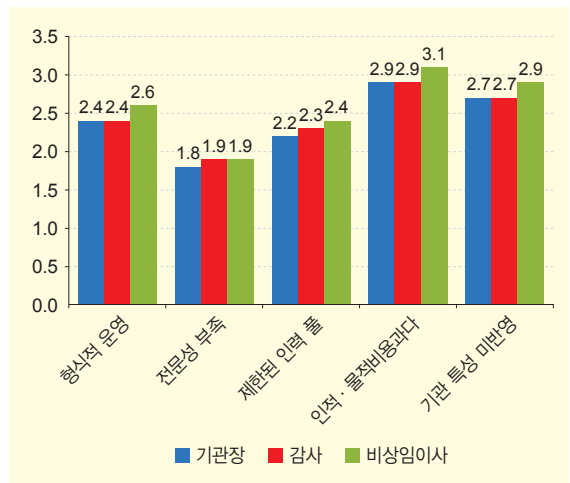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은 결과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기관이 지拂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비중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관 내 중요도는 낮지만 인원 수가 매우 많은 비상임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인적·물적 비용의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높게 나타났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인적·물적 비용의 과다를 가장 큰 이슈로 선택하였으며, 기관 특성의 미반영, 형식적 운영, 임원 후보 인력풀의 제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대상 직위별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상임이사에 대한 이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사, 기관장 순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슈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임원추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기관이 지拂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다.

천위원회의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보통(3) 이하라고 응답하고 있어, 이러한 이슈가 설문조사상에서는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심층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매우 크게 지적되고 있다.

[그림 6]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슈



* 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의 5단계 만족도 조사 결과임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하게 구성되지만 일부 의사결정은 여전히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둘째, 임원 후보에 대한 전문성과 적격성에 대한 검증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전문성 검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후보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잡한 절차와 잦은 개최로 인해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 법과 지침에서 임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그때마다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탐색과 회의 일정의 결정, 회의의 진행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임기가 달라 임원추천위원회 업무가 연중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적·물적 비용의 부담이 크다. 넷째,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비상임이사와 기관 구성원 대표,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인사전문가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원의 결원 시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으며, 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V.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발전 방안

1. 임원선임 개선 방안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공공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이다. 앞서 논의되었던 공공기관 임원선임과 관련된 정치적 임용과 임원 선임자의 자질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장기적 개선방안이 모두 필요하다. 단기적인 개선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능력 있는 후보를 추천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지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직위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터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뷰 결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임원을 탐색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운영될 것이다. 심지어 신입사원 선발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여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기관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임원의 검증과 선발에는 더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할 것이다. 선임된 임원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기관의 성과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관은 인사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더더욱 임원 후보 탐색과 검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능력 있는 후보를 추천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임용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으나, 임원후보에 대한 전문성과 적격성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부적격한 후보를 걸러내고 최적의 자격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안으로는 임원선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재설계를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전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동일하게 공모제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 선임방식을 이원화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공공기관은 선별하여 필요 시 임명제를 실시하거나 정부가 직접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업무 연관성이 낮고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 중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공모제를 통해 후보를 널리 탐색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공모제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후보 추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임원 후보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원 직위가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라거나 공직자의 은퇴 이후 재취업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개선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하여 논하고자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

공공기관 임원 직위가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라거나 공직자의 은퇴 이후 재취업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방향은 크게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임원추천방법의 효율화로 정리될 수 있다. 이상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2. 임원추천위원회 개선방안

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앞 장의 분석결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에 기관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에 독립적인 위치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분석결과와 정부의 영향력이 비상임이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도 비상임이사의 참여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선안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비상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임이사 제도의 취지가 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와 감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임이사의 참여비율을 낮추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상임이사가 견제와 감독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의 포함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 주무부처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정부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무부처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주무부처 공무원이나 관련 공직자를 제한하는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도 임원추천위원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는 임원추천위원의 후보 추천 배수의 축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재공모 제한, 임원추천위원회 의사결정 기준과 근거자료 제출 등이 포함

된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3~5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너무 많은 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임원후보의 추천 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추천하도록 한다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기능과 책임성은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된 이후에는 임원후보의 재공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3항과 4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응모자와 추천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공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유효성을 의심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간략한 추천 사유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하고, 추천사유서와 동시에 제외사유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준의 명확한 적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의 임원을 모집, 검증, 추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결과에 대

한 수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임원 후보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인사지침에서는 임원 후보의 자격과 기준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와 감사의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 후보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감사의 경우 재무/회계에 대한 전문자격과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자격요건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과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기준 요건을 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 후보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이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인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한 후 해체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임원 인사에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임원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에 필요한 임원 추천에 대한 의사결정과 후보 추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상설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사회에 전문위원회로 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사추천위원회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이사추천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기관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1인이 참가하도록 한다.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1

임원 후보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이다. 이사회에 전문위원회로 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차적인 책임을 지고, 필요 시 외부 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보다 공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관장과 감사 후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별도로 구성되는 기관장추천위원회와 감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결정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기관 내에 임원 인사에 대한 상설조직을 마련하여 임원추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은 필요시 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보다 운영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이사추천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기관의 임원추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임원이 임기 도중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임원 추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 임원추천 방법의 효율화

설문조사와 인터뷰 분석 결과는 임원추천위원회로 인한 행정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많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규모와 대상 직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형식적 요구사항을 완화하고 기관 특성과 직위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적용하여 임원 추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방향은 크게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임원추천방법의 효율화로 정리될 수 있다.**

으로 대상 직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상근이 필요하고 업무 중요도가 높으며, 임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대상 직위의 수가 적은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 상근이 필요 없고,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대상 직위의 수가 많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절차와 방법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현재 관련법은 임원 직위에 공석이 생길 경우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를 그때마다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당 직위에 따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장과 감사의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빈도가 높은 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규모 역시도 대상 직위의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대상 직위와 상관없이 5~15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관장과 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5~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의 경우 이사회에 전문위원회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이사추천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며,

비상임 이사추천위원회의 규모도 5~7인으로 한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은 대부분 '모집방법 결정-서류심사-면접심사'의 3회 회의를 거치고 있으나, 임원 후보의 모집과 심사기준이 기관 내에서 명문화되고 상설조직인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의 모집을 관할한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추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3회 회의를 2회(서류심사-면접심사, 추천 결정)로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이민호, 2010)와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이 기관별로 다르며, 동일한 기관 내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운영에 있어서 임원 모집방법을 결정하고 심사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용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안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장추천위원회, 감사추천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한 구성 인원과 구성 방법을 명문화하고,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후보 모집방식과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6〉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방안

		직 위	기존 방법	개선안
임추위 독립성 제고	임추위 구성	전 직위	준정부기관의 임추위에 주무부처 공무원 참석	• 추천위원회에 주무부처 공무원 배제
	임추위 운영 공개	전 직위	임추위 회의록 필요 시 공개	• 임추위 회의의 기록과 녹취 의무화
임추위 권한과 책임성 강화	후보 추천 배수	전 직위	3~5배 무순위로 추천	• 3배 이내 무순위 추천
	임추위 추천 후 재공모 제한	전 직위	응모자·추천자 중에 적격자 없을 시 후보 재공모 실시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공모 금지
	임추위 회의결과 보고		임추위 회의록의 기재부 제출시 간략한 추천사유서만 포함	• 임추위 회의록의 기재부 제출 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 회의록 제출 • 추천사유서(상세)와 동시에 제외사유서 포함
임원과 임추위의 전문성 강화	후보자격요건 강화	감사		• 회계, 재무에 대한 전문자격/지식 보유 의무화 • 자격요건 미달 시 비추천
		기관장		• 기관장추천위원회 새로 구성
	임추위의 전문성 축적	감사		• 감사추천위원회 새로 구성
		비상임이사	임원 공석 시 임추위 새로 구성	• 이사회의 상설 전문위원회로 이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임원 공석 발생 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보 탐색, 추천 담당 •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함 • 비상임이사 추천위원회 담당
임원추천의 간소화와 효율화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인원	기관장	5~15인(비상임이사, 기관대표, 외부위원)	• 5~7인(비상임이사, 기관대표, 외부위원)
		감사		• 5~7인(비상임이사, 기관대표, 외부위원)
		비상임이사		• 5~7인(이사추천위원회의 비상임이사과 기관대표)
	회의 운영안 명시	기관장	1차 모집방법 결정, 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 (비상임이사는 면접 생략가능)	• 후보 모집 및 추천 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기존의 1차 심사 생략)
		감사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후보 모집 및 추천 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기존의 1차 심사 생략)
		비상임이사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서류, 면접심사를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진행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비상임 감사의 면접 의무화)

3.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 개선 방향

가. 공공기관 임원의 교육과 평가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임 이후에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임원 후보의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한 분야

의 전문가를 뽑는다 하여도 공공기관 임원에게 필요한 모든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후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와 비상임이사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선임 이후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단시간 내에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임원 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현재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상임이사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완료될 즈음에 그간의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임원의 성과급과 연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나. 공공기관 인재 DB 구축


공공기관 임원인사가 임원후보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원에 적합한 인재의 탐색이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임원 후보의 정치적 임용 없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임원 후보를 탐색하도록 한다면, 적합한 후보를 찾기 위한 탐색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탐색된 후보에 대한 검증된 능력평가 자료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를 활용하거나 민간 리쿠르팅 전문가, 인사 자문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국가인재 DB는 21만명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 임원 후보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가인재 DB에서는 추천 요청건과 선임률, 추천후보의 직무수행 평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임원후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재 DB 담당부서는 공공부문 인재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활용도와 선임률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국가인재 DB의 활용도 제고와 더불어 국가인재 DB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인재 DB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와 인재 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공기관 인재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인사 전문가와 관련 전문가단체, 직능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 풀을 형성하고, 특히 공공기관 관련 업무경험이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등의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공공기관 임원 후보 탐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시사점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공공기관, 관계부처, 전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효과와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시기에 맞도록 추진하였고,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로 인해 투

명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임원 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 검증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단시간 내에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임원 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가장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현재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련부처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은 제도를 더욱 복잡하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데 오히려 일조할 뿐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채기,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공기업 논총』 제14권 제1호, 한국공기업학회, 2001, pp.29~63

_____,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면제도 개선 방안」,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5, pp.115~144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련부처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된다.

문집 별쇄본』, 한국행정학회, 2005, pp.1~42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임원인사 평가」, 2007.12

김병섭 · 박상희,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연구: 법제도 및 대통령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2), 2010, pp.85~109

김판석 · 홍길표 · 김완희,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논집』 20(2), 2008, pp.406~435

김현,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사장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차이 분석:낙하산 임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7, pp.759~783

박천오 · 주재현, 「정부산하기관 임원 공모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II)』, 2005, pp.115~144

박홍업, 「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2009, pp.55~92

양동석,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사장임면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지식』, 2004.4

유승원,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임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pp.1~20

- 발연구원 제31권 제1호, 2009, pp.71~103
- 이명석,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경영실적」,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1, pp.139~156
- 이민호, 「공공기관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방안: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2010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pp.1~33
- 이민호·강정석,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0.11
- 이상철,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정부투자기관 이사회 구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지식』, 2004.5
- _____, 「정부산하단체 인사제도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18(1), 2005, pp.81~98
- 이재은·최무현·최호택, 「외국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 연구」,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p.343~367
- _____, 「외국의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 연구」, 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2006
- 조기선, 「지방공기업 사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2004년 1월 학술대회,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pp.2~90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08 공공기관장 교체분석 보고서」,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08

사회복지지출(SOCX) 추계에 관한 소고

I. 서론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hyuna@kipf.re.kr)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한 재정위험의 내적요인은 ‘복지지출’ 증가이다. 해당 국가의 복지지출 규모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변수가 되면서 관련 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DB분석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준은 UN의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른 것과 9개의 복지지출 분야로 구성된 OECD의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이다.

COFOG는 국가예산상에 나타난 복지지출규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부담분만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SOCX는 ‘급여비 전체’에서 국고 및 지방비부담,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두 DB는 지출 항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성원의 최종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SOCX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지출분야(국고부담분)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OFOG 기준이 적합하고, 부분별 복지 내용 및 실질적인 급여혜택을 기준으로 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SOCX가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DB를 구축목표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최저생계비 등 일반사회복지비 지출에 근거하여 국가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공공지출에 초점을 맞춘 것은 UN의 COFOG라고 볼 수 있다. 반면, SOCX는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연금, 의료)’ 지출 팽창에 따른 재정수요 파악 및 전망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OECD 공공사회지출비와 국가예산상의 복지지출비 항목비교

부 문	OECD 공공사회지출비(SOCX)	국가예산상의 복지지출비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	국고부담분만 포함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전체	국고부담분만 포함
주택	공공임대주택건설비	주택부문 전액
노동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급여+ 노동부 소관 세출예산과 각종 기금지출액
지방재정복지 지출	포함	제외

자료: 원종욱(2011) 인용

**국가별 복지지출가 높고 낮은 것은
각국의 조세제도와 관련이 깊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지출의
국가간 비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사회복지지출' 개념이 도입되었다.**

SOCX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 추계의 경우, 1990년 추계치부터 매년 정부와 민간의 복지지출 전반에 대한 추계를 수행하고 있는 고경환(보사연, 1998년~)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보완한 김현아(KIPF, 2009)의 연구가 있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기재정 추계로는 박형수·전병목(KIPF, 2009), 원종욱(보사연, 2011)이 있다. 본고에서는 순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 추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SOCX 추계를 위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SOCX의 구성 및 포괄개념: '순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OECD SOCX는 국가별 사회복지지출 DB로서 '재분배를 목적으로 구성된 복지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 유럽 복지국가(Welfare States)의 복지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DB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들 국가의 특성상 '연금'과 '의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복지지출의 규

모와 내용면에서 '공공부문의 중앙정부(사회보험 포함)'부분이 주요 분석대상이었다.²⁾ 그러나, OECD 회원국 중에서 비유럽국가들의 복지재정 지원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공공 대비 민간의 복지지출규모를 살펴보니 '민간부분의 공공지출' 규모가 매우 높았다.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 연금 이외에도 보육 및 여성(가족)중심의 복지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방정부 부문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dema, 2005, p.33~34). 따라서, 사회복지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식과 발전양상 등도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국가별 복지지출가 높고 낮은 것은 각국의 조세제도와 관련이 깊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지출의 국가간 비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개념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직접과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가(비유럽권 OECD 국가)에서는 간접세율이 높은 국가의 수급권자가 받는 순소득 수준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사회복지지출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가령, 급여수급자에게 100단위의 순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평균 간접세가 5%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106단위의 총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평균직접세율이 25%인 덴마크에서는 133단위의 총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SOCX Manual(Social expenditure: Interpretation Guide of SOCX, 2007, pp.8~10)

2) 유럽국가(EU-21,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는 각국의 ESSPROS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EUROSTAT에서 발췌하였다(EUROSTAT 2010).

〈표 2〉 OECD의 공공사회지출 통계(SOCX)분류

분 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부문	
1. 노령(old age)	- 4대 공적연금, 기타 현금	- 시설보호, 재가서비스
2. 유족(survivors)	- 4대 공적연금, 기타 현금	- 기타 현물
3. 근로 무능력(incapacity)	- 산재보험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 보훈(보상) - 장애급여, 기타 현물
4. 보건(health)	- 건강보험 - 보건의료(의료급여) - 식품의약품안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요양급여)
5. 가족(family)	- 보육, 유아교육 - 보훈(학자금자금 등 복지)	- 가족 및 여성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 고용보험(기타)	- 기타 노동
7. 실업(unemployment)	- 고용보험(실업급여)	
8. 주거(housing)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 - 공공임대주택 등	
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 기초생활보장(소득보조, 공공부조) - 취약계층 지원	- 기타 노인/청소년 - 기타 사회복지 일반(공적연금 중 재해보조금)

자료: OECD,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SOCX 1980-2003,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 및 통계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2.2.16

〈표 3〉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1990-2009)

	1990	2000	2009	구성비
1. 노령	1,525	11,048	30,965	27.7
2. 유족	298	1,040	2,927	2.6
3.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705	2,893	7,487	6.7
4. 보건	3,015	14,052	44,078	39.3
5. 가족	60	877	9,110	8.2
6.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51	2,313	4,281	3.8
7. 실업	-	471	4,116	3.8
8. 주거	-	-	-	-
9. 기타	335	1,619	8,776	7.9
사회복지지출(십억원)	5,989	34,312	111,741	100.0
경상GDP(조원)	191.4	603.2	1,065.0	
경상GDP 대비 %	3.13	5.69	10.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 및 통계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2.2.16

전체 복지재정은 현금 및 서비스 급여를 통한 복지지출과 함께 '조세제도(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를 통한 혜택, 즉 복지관련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지출 분야가 포함된다. Adema et al.(2011:24)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는 해당 나라의 복지정책 경향이나 조세제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순사회복지지출'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稅前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과 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 급여 수령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총사회복지지출에서 급여범위와 사회복지와 관련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추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OECD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전소득자의 직접과세 중 공적급여에 대한 과세방식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세제도의 영향에 따라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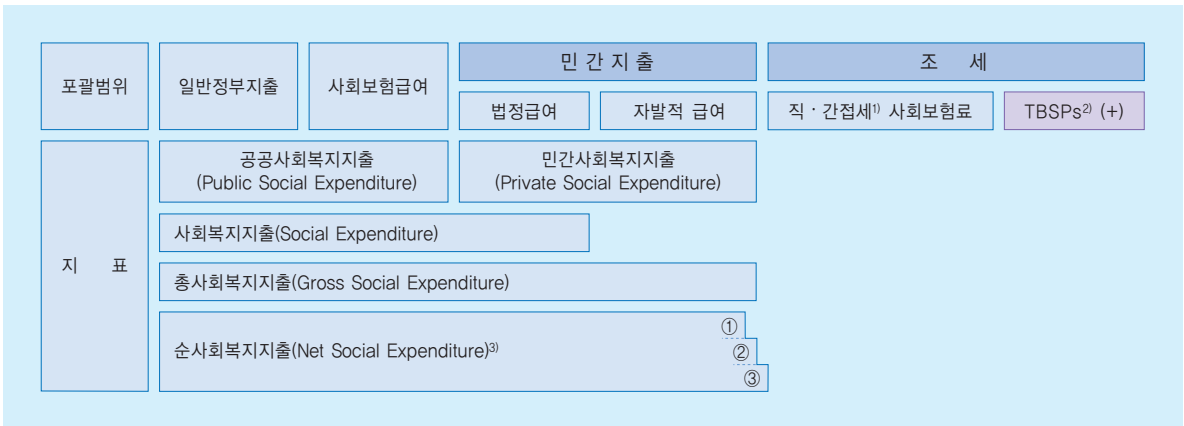
* 순사회복지지출 = 총사회복지지출(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험+민간부문) - ① (이전소득자 조세부담 = 간접세 + 직접세 + 사회보험) + ② (세제혜택)

OECD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전소득자의 직접과세 중 공적급여에 대한 과세방식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세제도의 영향에 따라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조세제도는 사회복지지출에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Adema et al.,

2011:38).

- ① (-) 급여소득의 직접과세: 정부는 수급자의 현금이전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징수. 따라서, 총사회복지지출 지표가 보여주는 만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 ② (-)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대한 간접과세: 급여소득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위해 지급되며, 간접세는 일정한 수준의 급여소득을 이용한 소비를 축소시킴.
- ③ (+)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정부는 조세제도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정책목표를 수행하기도 함. '사회적인 목적의 세제혜택(Tax Breaks for Special Purposes: TBSPs)'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혜택과 함께 가계에 도움을 주는 고용주나 민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포함됨.

[그림 1] 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와 포괄범위



주: 1)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 등
 2) 세제혜택: 비영리법인재산, 근로자소득공제, 지방세감면대상자 등의 조세혜택
 3) ①은 Tax<TBSPs, ②는 Tax=TBSPs, ③은 Tax>TBSPs

자료: 고경환 외(2011), p.22, [그림2-1] 인용

Ⅲ.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1. 급여소득자의 직접세와 간접세 규모

본 분석은 급여소득자의 직접세와 간접세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본 분석의 이전소득자는 공적연금수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 전소득 중 ‘급여소득’에 한하므로 현금수령까지만 인정한다.

추계 방법 및 결과³⁾

추계방법은 급여소득자가 포함된 가구의 항목별 지출액 자료를 근거로 간접세액과 직접세액의 세부담률을 계산하였다. 직접세 항목으로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동산취득관련세, 기타 경상/비경상세금이 포함되었으며, 간접세 항목은 주세, 교통세,

KIPF 잠정치 기준으로 한 2010년 급여소득자의 세부담 규모는 GDP 대비 0.1%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SOCX에 보고된 규모는 0.3% 수준이며, 거시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부가가치 195항목, 담배세가 포함되었다. KIPF 잠정치를 기준으로 한 2010년 급여소득자의 세부담 규모는 GDP 대비 0.1%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SOCX에 보고된 규모는 0.3% 수준이며, 거시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Adema et al., 2011). 급여소득자를 포함한 가구의 총소득 대비 간접세율과 직접세율은 각각 5.1%와 2.2%로서 총계 7.3%로 나타났다. 고경환(2011a)에서는 간접세율의 경우, 2009년 11.03%~15.07%이며, 직접세율의 경우, 2009년

〈표 4〉 이전소득자의 구분

B7	이전소득	근로의 제공이나 자산의 임대 등에 따른 반대급부가 아닌 것으로서 공적연금, 정부, 비영리단체 및 타 가구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이 포함됨
B710	공적연금	국민연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정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이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B720	기초노령연금	기여금 적립 없이 연령, 소득, 부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받는 수혜금
B730	사회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현금수혜
B740	사회적 현물이전	정부 및 비영리단체 등이 특정지출 목적을 지정하거나, 직접 현물을 구입하는 등 현물형태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B750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자의 세액환급액
B760	가구간이전	타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이전
B770	할인혜택	카드 및 무료쿠폰 이용 등은 이용 시에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가로 처리
B790	기타이전소득	위에 분류되지 않는 이전소득

주: 이전소득자=B710+B720+B730 합계가 0 이상인 사람

3) 김현아, 「2011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지방자치단체 부분과 조세지출 보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Working paper), 2012 참고

급여소득자의 부담세율 수준은 2008년 이후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급여소득 대비 간접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위축에 따른 이전소득 감소에 따른 것이다.

4.07%, 2008년 4.65%로 추정한다. ⁴⁾

급여소득자의 부담세율 수준은 2008년 이후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급여소득 대비 간접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위축에 따른 이전소득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전소득자들의 경우 급여소득 의존도가 높으므로 소득 변화에 따른 세율 변화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Adema et al., 2011, p.5). ⁵⁾

〈표 5〉 2008~2010 직접세 및 간접세부담과 세율 수준

(단위: %)

	2008	2009	2010
총소득 대비 간접세 부담	5.2	5.2	5.1
급여소득 대비 간접세 부담	45.2	33.6	30.3
소비지출 대비 간접세 부담	7.9	8.1	7.8
총소득 대비 직접세 부담	2.1	2.1	2.2
급여소득 대비 직접세 부담	18.1	13.7	13.3
소비지출 대비 직접세 부담	3.2	3.3	3.4
총소득에 대한 평균세율	7.4	7.4	7.3
급여소득에 대한 평균세율	63.2	47.3	43.6

4) 거시자료를 활용한 직접세율 추정근거는 '근로소득결정세액/과세대상근로소득(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 과세미달자 제외)×100'이며, 간접세율은 'Min=(5110 일 반소비세+5121 국내소비세)/(민간소비+정부소비-공무원임금)×100, Max=(5000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국민계정의 민간최종소비지출×100'로 나타남(고경환 2011a, 103)

5) 급여소득자의 사회보험 지급의 경우, 미시데이터 체계에서는 제외하였음. 연금수령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은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소득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소득자가 피보험자로서 건강보험을 납입하는 경우, 이는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을 바탕으로 급여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전체 가구 중의 75%로 나타났음.

〈표 6〉 급여소득자의 세부담 관련 KIPF 추정치와 기존 자료 비교

	KIPF	OECD(2011)
추계자료	미시자료(가계동향조사)	거시자료(총세입 등)
추정치 규모	GDP 대비 0.1% 미만	GDP 대비 0.3% 수준
총소득 대비 평균세율	총소득 대비 7.3% 내외 수준	성명재(2012), 1,2분위의 평균세율 7~8% 내외 수준

자료: Adema et al.(2011), p.109 참고, 성명재,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 및 조세 재정 정책효과분석」, 특강자료(미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2 참고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혜택(TBSPs) 규모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혜택(복지관련 비과세 감면)은 이전수급과 동일한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분석에서는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혜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연감』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관련 세제혜택 규모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약 16조원(GDP 대비 1.35% 수준)에 달한다.

〈표 7〉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국세+지방세) 규모

(단위: 억원)

분 류	감 면 규 모						
	2010 실적			2011잠정		2012전망	
	국세	지방세	합계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1. 노령(old Age)	3,830	63	3,893	4,130	66	4,362	68
2. 유족(survivors)	0	514	514	0	536	0	558
3. 근로무능력(incapacity)	3,729	1,737	5,466	3,791	1,810	4,024	1,884
4. 보건(health)	36,055	31	36,086	39,528	32	41,138	34
5. 가족(family)	21,003	623	21,626	22,095	649	24,381	676
6.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9,779	0	9,779	10,446	0	17,071	0
7. 실업(unemployment)	0	0	0	0	0	0	0
8. 주거(housing)	2,961	0	2,961	2,442	0	2,204	0
9. 기타(other areas)	34,458	45,060	79,518	38,133	46,953	40,061	48,878
소 계	111,816	48,028	159,844	120,565	50,045	133,241	52,097
GDP 대비 비중(%)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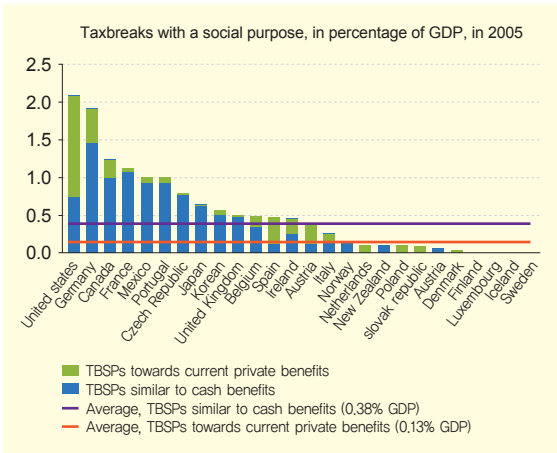
결론부터 제시하면, 2010년 우리나라의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규모(+)가 공공이전소득의 직/간접세의 규모(-)보다 크게 나타났고, 따라서 순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총공공지출규모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즉, 복지관련 각종 비과세 감면 규모가 급여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 규모보다 월등히 큰 것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추세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규모는 공공이전소득의 직/간접세의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순공공사회복지지출은 총지출보다 작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Adema et al., 2011, pp.30~31). 직접세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복지지출 규모는 해당 국가의 세제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 1993년 세계개혁으로 노령연금과 사회보장급여가 과세대상이 되었지만, 수급자 보호를

직접세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복지지출 규모는 해당 국가의 세제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하여 그만큼의 총급여지급금액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수혜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조세부담률이 높은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등의 조세혜택 수준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예: 북유럽 국가). 반대로, 복지관련 자원마련에 대한 증세방안, 즉 세율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국민들의 복지욕구 실현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통한 사회적 혜택 의존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직접세 부담의 경우, 급여소득자에 대한 과세규모가 국가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약 3분의 1의 국가들에서 공공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가 미미하거나 GDP의 1% 미만 수준이었다.

[그림 2] A high value of TBSPs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y are virtually non-existent in Scandinavian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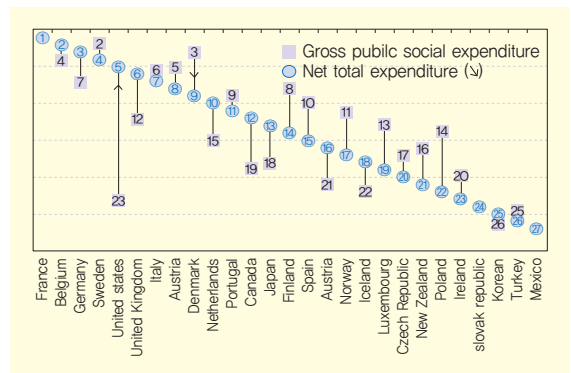
자료: Adema et al.,(2011), p.30 그림 Chart 1.10 인용

3. 조세제도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 평균을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의 세제 혜택보다는 공공이전소득의 직/간접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순사회복지지출규모가 총사회복지지출 지표보다 낮게 나타났다. 2007년 기준, 데이터가 확보된 국가의 평균 총공공지출 규모는 GDP의 22.4%이고 순공공사회지출 평균은 19.9%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접세 부담의 경우, 급여소득자에 대한 과세 규모가 국가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약 3분의 1의 국가들에서 공공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가 미미하거

나 GDP의 1% 미만 수준이었다. 간접세의 경우, 급여 소득 중 소비세가 과세되는 규모는 호주, 캐나다보다 덴마크 등 유럽국가에서 훨씬 높았다.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은 낮게 나타났다. 세제혜택 규모의 경우, 국제비교 시에는 GDP 대비 1%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제혜택 규모 GDP 대비 1% 미만인 국가는 상대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에 해당한다. GDP 대비 1% 수준인 국가들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다. 민간 복지지출 부문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health)으로 요소소득 대비 1.5% 수준(1.5% of GDP at factor cos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사회복지지출 개념으로 확대했을 경우의 복지지출 순위에서는 미국은 23위에서 5위로 상승하여 매우 높은 복지지출 국가로 나타나며, 덴마크는 3위에서 9위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GDP 대비 총공공사회지출과 순사회지출 비율로 본 국가간 순위(2007)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제혜택규모가 커서 순공공사회지출규모를 반영할 경우 복지지출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볼 때,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연

금급여 수혜자 비중이 높지 않고, 조세부담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방법론적으로는 미시데이터를 근거로 한 추정값의 경우, ‘과소추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방법 혹은 다른 DB(재정패널 등)으로의 추계방법을 통한 검증작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거시자료를 근거로 한 선행연구(고경환, 2011a)에서는 과소추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있으나 역시 세제혜택 규모보다는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보고서가 시사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민간급여와 조세제도를 반영할 경우 분석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 미국을 제외하고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총지출데이터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들 국가가 사회복지급여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부담률과 민간사회급여를 모두 고려하면 총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격차가 완화되어 사회복지지출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IV.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중앙정부+사회보험+지방정부)

SOCX DB는 복지지출을 공급주체, 재원부담 주체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9개의 분야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ECD가 개념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목적에 부합한 지출이어야 하며, 둘째, 재분배 목적과 의무적 지출(Inter-personal Redistributive or Compulsory)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관련 법의 의해 집행되는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지방정부 부문의

OECD가 개념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목적에 부합한 지출이어야 하며, 둘째, 재분배 목적과 의무적 지출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 예산분류 중 ‘세항’ 기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주요 분석대상임을 의미한다. 경상적경비, 인건비, 예비비, 지방채상환 등은 재분배 목적으로 볼 수 없다.

2009년에는 기존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에서 중앙정부와 사회보험을 총괄하는 수치는 보여주고 있으나 ‘지방정부’와 ‘주거복지’ 등은 포괄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KIPF(2009)는 당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28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근거로 1차 코드작업화하였고, 2차 사업내용을 개별 확인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추계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분야의 국비 대응비뿐만 아니라 「자체사업」 분야를 9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추정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중앙정부(디지털예산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한 전 부처의 코드작업이 가능하지만, ①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단체별 예산서(「e 호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화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②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근거로 자치단체별 ‘지방비매칭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차선택으로 가능한 방식이다. 2012년 현재 KIPF는 ① 「e-호조」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부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검증작업으로서 ② 「국고보조사업 편람」의 세부사업별 국비규모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근거로 지방비를 계산하였다. 본 분석에서 계산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4.4조원(64.6%)으로, 이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은 약 7.9조원(35.4%)으로 추계되었

**공공지출 부문의 경우에는
각종 사회보험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와 유관기관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다(2012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약 15.5조원이며,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규모는 7.4조원이다).

**〈표 8〉 정책부문별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지출
국비/지방비 추계**

(단위: 백만원, %)

	2010년	
	국비	지방비
1. 노령(old Age)	3,097,727	1,794,145
2. 유족(survivors)	1,216	0
3. 근로 무능력(incapacity)	551,443	321,276
4. 보건(health)	4,091,799	1,535,761
5. 가족(family)	2,624,827	2,861,028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73,171	34,177
7. 실업(unemployment)	0	0
8. 주거(housing)	0	0
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7,186,612	1,450,061
소 계	17,626,795	7,996,448
비 중	68.8	31.2

주: 1. 국가보조사업 편람에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기획재정부(취약 계층부분),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비 추계함
2. 보건복지부 사업은 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3. 국가보훈처 사업은 제주보상금 지급, 제주취업지원, 제주보훈청 기본경비/인력지원 등
4. 노동부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민간취업지원센터 등
5. 기획재정부 사업은 복권기금운영 프로그램 중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
6. 여성가족부 사업은 여성일자리 창출지원 및 경력개발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7.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은 영어교육격차 해소, 장애아교육지원,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등
8. 기타부분에 교육분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공공지출 부문의 경우에는 각종 사회보험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산재급여, 건강보험, 주택공사 기금 등의 재원은 예산 이외의 재원규모 파악이 되어야 하고, 이들 재원관리 주체인 관련 공사 및 공단, 이와 관련한 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공단 등) 등도 포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와 유관기관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4대 공적연금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보험제도 및 재원배분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2년 KIPF가 진행 중인 SOCX 추계치에서는 후속작업을 염두에 두고, 각 부분별 추계시 최대한의 추정근거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DB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V. 정책적 합의와 향후 연구과제

1. 순사회복지지출 추계의 중요성

순사회복지지출규모 분석은 복지관련 지출에 있어서 직접적인 급여수준을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 개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규모 파악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와 정부 간 재정구조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세와 재정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지방정부 복지지출 규모 파악

선진국들의 복지지출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전히 '연금'과 '의료' 부문 지출이 대부분이지만, 향후에는 가족·여성 중심의 복지지출 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여성 분야의 지출이 이미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연금지출 확

대시기와 맞물려 복지지출규모가 급팽창할 우려가 높다. 지방정부 복지지출 규모 파악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 부분은 코드 작업이나 사업의 추정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의 경우, 세부사업단위까지 전산화 작업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이하에서 사업명과 코드 명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서와 통계를 담당하는 담당자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예산과 기금 사업이 중복 혹은 missing인 경우 등 사례별로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부문 추계의 초점은 추계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정근거를 사례별로 분류하여 최대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작업에 맞춰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3. 사회보험 부분 분야별 전문성 확보

4대 공적연금을 포함한 기타 사회보험 분야의 경우, 관련분야의 재정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전문성과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 연금, 수당 등은 현금으로 이전되지만, 그 밖의 서비스 급여의 경우 관련 공사 및 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 및 공단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복지 분야는 2004년 OECD의 제도가 변경되어 SOCX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주거복지 관련 분야는 주택관련 '공사가 대부분 관리하고 있어서 추계작업 시에도 이 부분은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추계작업은 일차적으로는 관련분야 지출규모를 확인하는 데 있으나, 2차적으로는 공공자금의 흐름을

**지방정부 부문 추계에 있어서
추계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정근거를 사례별로 분류하여
최대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확인하고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참고적으로 2012년 기준 주택과 관련한 재정투입 규모를 약 19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⁶⁾ 본 분석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분야를 제외한 기타 기금 및 사회보험 분야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추계방법의 전문성 확보

OECD SOCX를 포함한 국제 DB는 성격상 국가별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매년 꾸준히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기준에 의한 추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고하고 있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나라마다의 제도적 상이함 때문이기도 하고, 통계수치를 다루는 전문성도 국가별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OECD가 제안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직접세와 간접세 추계방법은 조금 다르다. 급여소득자의 직접세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Average Itemized Tax Rate: AITR) 및 미시 데이터 이용한 실질 추계치 전망을 제안하고 있고, 간접세의 경우 거시자료를 이용한 추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국가마다 재정 및 복지제도가 상이하므로, 가

6)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본 자료에서는 SOCX 추계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정부 부문 추계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 추계방법의 전문성 확보, 조세 및 재정전문가와와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능하다면 미시 및 거시자료를 활용한 추계를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추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자료의 경우, 총량적인 규모에서는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으나, 가구별 행태나 세율 부담면에서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시자료의 경우, 전망에 근거한 장기추계 시 또한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장점이 있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한 TBSPs 추계의 경우, 각각의 조세지출제도가 중복됨으로써 나타나는 ‘과다추정’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모에 대한 세금공제’와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 두 개의 재정적 조치는 따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세제혜택 제도는 각각이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므로 실제로는 TBSPs의 규모가 보고된 수치보다 작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 OMB의 경우, 특정 조치에 의해 손실된 세입금액을 사후에 측정하는 방식을 보고하고 있다(OECD, 1996).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관련 세제혜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작업으로 참고할 만한 방법론일 수 있다. 전문성과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경우 공공지출과 조세지출 분야의 경우, Ministry of Finance(혹은 일부 통계청)가 복지지출 DB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지출 관련 추계는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함께 재정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부록 참고).

Ⅵ. 결론

이상에서는 부분별 SOCX 추계의 현 주소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부분별 추계의 한계와 개선방향 등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복지지출 추계의 목적은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며 정책방향 설정 시 반드시 필요한 선행작업을 주지하고자 한다. 재정전망 관점에서는 ‘인구’와 ‘경제성장률’ 가정을 이용한 장기재정 밑그림 작업이 중요하듯이, 예산배분 관점에서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국민들의 복지재정수요에 대응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을 소개하고 조세제도와 복지수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국가가 복지지원을 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비과세 감면을 통한 지원도 가능한데, 세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비과세 감면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복지지원규모가 작게 나타나는 경우, 그 밖의 민간지원 및 비과세 감면규모가 클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내용이 보다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추계치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자료에서는 SOCX 추계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정부 부문 추계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 추계방법의 전문성 확보, 조세 및 재정전문가와와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정책과 관련 분석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의 추계작업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는 없다. 복지지출 ‘추계’는 전체적인 재정흐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따라서, 각

항목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추계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SOCX 추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계치의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각 분야별 추가 고려사항을 요약해 보면, 복지지출 추계에 있어 조세 및 재정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재정관련 담당이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추계수치만을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복지 재정 규모가 갖는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얻기 위해서도 SOCX 추계의 객관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김현아, 「2011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지방자치단체 부분과 조세지출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2 (Working paper)

김현아, 「OECD 기준 공공사회지출 통계정비」, 한국조세연구원, 2009

박명호,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09

고경환 · 장영식 · 강지원 · 김진욱 · 최성용 · 정영애,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비교』,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a

고경환 · 강지원 · 정영애 · 임완섭,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b

원중욱,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대한민국 정부,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Adema, W.P. Fron and M. Ladaique,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24, 201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g2d2d4pbf0-en>

Adema, W. and M. Ladaique,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009, No. 92, OECD Publishing, ©OECD. doi:10.1787/22061551505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Tax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May 2011

<부록>

<부표 1> 국가별 SOCX 추계 담당부서

	공공지출 분야	조세지출 분야
Australia	STINMOD distributional model. Revenue Group of The Treasury,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2005, 2003), Tax Expenditure Statement, The Treasury, Canberra.
Austria	Ministry of Finance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Wage Tax Statistics (2001, 2003, 2005).	Budget Accounts, Forderungsbericht (2001, 2003, 2005), Ministry of Finance, Austria.
Belgium	STINMOD distributional model. Revenue Group of The Treasury, Austral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 Belgium, from IPP (Impôt des Personnes Physiques).
Canada		Data supplied by Finance Canada, from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04, 2002),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Ottawa.
Czech Republic	Ministry of Finance, Tax Policy Unit; 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ax Statistics, Czech Ministry of Finance; and the Association of Pension Funds of the Czech Republic.
Denmark		Ministry of Finance, Denmark.
Finland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Finland.
France	Amounts supplied by DREES/INSEE, based on estimates from 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nd Dre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Amounts supplied by DREES/INSEE, based on estimates from 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nd Dre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Income tax and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INES model (Insee-Drees).
Germany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Calculated while using the nettoloohnquote as in the national account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Germany.
Iceland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of Iceland, Economic Department.
Ireland	Ireland Revenue, Income Tax Returns for 2003, 2004 (SAS).	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 Statistical Reports.
Italy	Offici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from 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INPS).	Offici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from 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INPS).
Japan	Ministry of Finance of Japan and estimates from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Information suppli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of Japan.
Korea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Gho, K.H, Chang Y.S (2007), Estimation of Net Social Expenditure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1990-2005 (in Korean onl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orea.
Luxembourg	Microsimul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sociale (IGSS) du Luxembourg (www.mss.public.lu).	
Mexico		Fiscal Expenditure Budget 2002-2005 (Presupuesto de Gastos Fiscales 2002-2005)
Netherlands	Ministry of Finance,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ew Zealand Treasury.	New Zealand Treasury.

	공공지출 분야	조세지출 분야
Norway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Norway.
Poland	Ministry of Finance, Poland.	Ministry of Finance, Poland.
Portugal	estimate by the Ministry of Finance based on Personal Income Tax Returns data.	Portuguese Ministry of Finance, 2006 and 2008 State Budget Report ; and Portuguese Ministry of Finance, Personal Income Tax Returns data.
Spain	Tax Expenditures Budget, Ministry of Finance, Spain.	Tax Expenditures Budget, Ministry of Finance, Spain.
Slovak Republic		Data provided by 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Family of the Slovak Republic – aggregate data from filed tax returns (personal income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in 2001, 2003 and by Ministry of Finance of the Slovak Republic in 2005.
Sweden	Statistics Sweden.	
United Kingdom	IGOTM Tax Benefit Model (2001–02 and 2003–04) based on the Family Resource Surveys.	Estimates based on administrative data and information compiled from a variety of sources by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or HM Revenue and Customs.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Treasury.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US Department of Treasury.



공공정책포럼

■ 제30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

제30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
- 일 시 2013년 1월 28일(월)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1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08:45~09:25 자유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3년 1월 28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1F)에서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30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오늘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모시고 한국의 경제성과와 여건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어떤 부탁할 말이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갖겠다. 잘 알려져 있고 국민에게 친숙한 박 장관은 2012년 3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에서도 극찬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Can Washington and Brussels borrow this guy when his term of office in Seoul is over?)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

주제발표 요약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오늘은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해주신 것들을 결산하고 혹시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발표 내용은 최근의 경제여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지난 1년,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지난 5

년간의 성과를 결산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큰 방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I. 2012년 정책대응과 평가

작년 한 해는 연초에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5월 그리스 총선, 6월 프랑스 대선 등을 거치면서 외부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하반기마저도 기대에도 못 미친 채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로 마감했다. 성장률이 낮아져 물가도 낮아졌으나, 고용은 오히려 필립스 곡선¹⁾이 시사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 목표치인 28만명을 넘어 44만명까지 늘어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항간에서는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고용은 증가한다’는 역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나아진 것 같으나, 고용은 기저효과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 같다.

지난해 가장 자부할 만한 성과라면 역시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이고, 이로 인해서 상당수 공공기관들의 신용등급도 상향되었다. 물론 Moody’s 등은 국가 신용등급과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여 국가 신용등급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극소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이한 사항은 소득분배 부분으로 ‘소득분배가 나아졌다, 또는 나아지는 기미가 있다, 또는 더 나빠지지 않는 쪽으로 추세적인 전환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해볼 수 있다. 아직 2012년 지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훨씬 더 나빠졌어야 할 지표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만 확인되고 있다. 추세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세

1) 필립스 곡선: 원래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계획의 진전에 따라 모든 국가가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것이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발견되는 핵가족화로 인해서 '가구 수는 늘어나고 가구당 가구원 수는 줄어들어 가구의 소득편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구조적인 것'들이 있다. 즉, 1인 가구, 2인 가구, 노인 가구가 늘면서 각 가구의 소득 편차가 확대되고 빈곤가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이 추세적으로 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현재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비율 등은 모두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갖는 한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본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부터 거의 4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흉년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전의 10년간의 대안정기, 대호황기(Great Moderation)는 이제 대체로 끝이 났으며, 그 반대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그 큰 흐름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대흉년기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상화라고 해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기온이 급강하한 상황은 앞으로도 4~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 원인도 상당히 복합적이고 그 폭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가 있다.

그밖에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도 결코 만만치 않다. 중동의 화약고처럼 일촉즉발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리더십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두 가지의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저성장·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대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균형 조정자 혹은 유지자(keeper)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II. 대내외 경제여건과 경제전망

G2를 중심으로 일부 경기 부진은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급하게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착륙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도 있다. 물론 올해는 상방 리스크(upside risk)와 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어 양쪽이 다소 균형 잡힌 상태에 있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에 더욱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성장률은 지난해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흐름은 상승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상승세가 아주 완만하고 미약해서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는 약보합세(弱保合勢)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보합이라 하더라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약간 상승하겠지만 고용이 작년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용'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국정지표의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부의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의 고용 성과에 대한 질타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가는 작년보다는 높아지겠으나, 1/4분기까지는 큰 변수 없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는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정(+)의 상태를 유지하며 약간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히 우려되는 부문은 건설부분 투자이다. 2010년,

2011년과 비교하여 조금 회복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가 하향국면이고 나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핵심요인이란 생각이다. 왜 설비투자가 진작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설비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찾을 수 있고 관련 공공기관들과도 합의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의 설비투자가 미약할 때일수록 정부나 공공부문 쪽에서 설비투자를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수지는 사실 2010년과 2011년의 수출이 연간 20%씩 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저효과가 현재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작년 4/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는 내수부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한 평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로 인해 시스템 위기가 경착륙이 예상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의 평가이고, 향후 연착륙이 가능해 보인다.

통계 전망과 작년 실적치를 보면 지난해 성장률은 낮았지만 일자리, 물가, 경상수지 등이 목표보다도 상당히 선전했다. 2013년의 경제성장률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지표들은 2012년보다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된다.

Ⅲ.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방향

이런 맥락에서 공공기관은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겠다. 지난해에 투자를 3% 정도 상향 집행하여 국내의 설비투자가 미진한 것을 일부 보완했다. 그리고 상저하고(上低下高)라는 전망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가름이 났지만,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상해 조기 집행을 했던 정부 방침에 공공기관들이 적극 따라주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많이 늘린 점이 매우 고무적인데 특히 고졸자 채용이 크게 늘어나고 지역인재 채용이 꾸준히 개선되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자원 공사, 철도공사 등 에너지 및 농수산물 관련 기관 등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었다.

정원 감축 수치는 지난 5년간의 실적인데 계획대로 잘 달성했다. 민영화는 가장 목표대로 안 된 분야이지만 그래도 10개 과제를 완료했고, 기관 통폐합,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및 경쟁 도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노사관계는 성과가 돋보인 분야였다고 생각한다. 전(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근로손실 일수가 줄어들었으며, 보수체계를 개편해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앞서 올해의 고용이 좋지 못할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인력운용은 해묵은 숙제이다. 책임 경영도 있지만 자율경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몇몇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채용여력을 확대하고 그에 맞춰 올해 채용 관련 경영평가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해외취업과 보안, 안전, 복지부문의 신규 채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열린 고용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준 것으로 생각된

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을 보면 20대 전반은 상당히 높아졌고, 20대 후반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20대 전체의 고용률은 부진한 상황이나, 이는 2011년의 20대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아직 명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20대 전반의 고용률이 상승한 것에는 열린 고용과 고졸 채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 이를 선도한 것이 공공기관의 열린 고용 문화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틀릴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전세계 경제학자들이 올해의 경제가 정말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로존의 경우 하반기에는 '+0.1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 올해 역시 공공기관의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전략이 불가피하게 반복될 것 같다. 올해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조금 많으며 조기집행 목표도 작년보다 조금 많다. 공공기관에서도 조기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부채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 작년에는 자산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조금 높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자산과 부채가 모두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어될 필요가 있다. 물론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이 존재하고 기관에서 자체적인 부채상환이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가파른 속도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작년에 대규모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는 이를 좀 더 내실화하고 사후심층 평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있으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참여한 이슈를 다룰 때, 그리고 국정기획수석을 하며 공공기관의 정원 조

정이나 기능조정, 능력평가 등을 담당하였을 때를 모두 통틀어 저를 도와주신 공공기관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 여러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평가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새로 알게 되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사람도 알게 되는 자리인 것 같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인재 풀(pool)을 넓히는 측면에서도 공공정책포럼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자유 토론

송대희/좌장

세계 경제부터 국내 경제, 공공기관들의 성과와 방향 등에 관해 하나도 빠뜨림 없이 알차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국내적으로 보면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모범 국가이자, 모델 국가이고, 벤치마크하고 싶은 국가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코리안 드림의 대상이 되는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결국 공공부문, 특히 정부 관료들의 역할이 컸고, 공공기관의 뒷받침과 추진력이 컸다고 생각한다. 장관님은 이제 떠나지만 너무나 좋은 발자국을 남기셨기 때문에 계속 좋은 걸음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김학규/한국감정원 상무이사

첫째는, 신용평가에 관한 질문으로, 속된 말이지만 경제 13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미국의 민간 기업이 평가한다. 물론 IMF의 자동지원과 관련하여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UN과 같은 범정부기관에서 평가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한 나라의 민간기업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둘째는, 환율에 관한 질문으로, 강만수 전(前) 장관이 정부가 환율에 적극 개입해야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Moody's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에 계신 분들은 환율이나 정책 등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갖고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저는 이것이 일본이나 유럽식 모델이고 반대로 변동환율에 맡겨두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게 미국식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환율에 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면 풀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박재완/발표자

신용평가사로 여러 곳이 있지만 3대 대형 회사는 Moody's, Fitch, S&P 세 곳이다. Fitch는 영국 회사이고 Moody's와 S&P는 미국 회사인데 이들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네트워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Moody's를 대신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회사들까지 감안하면 전 세계에 수십 개 내지 백여 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망을 가지고 수천 혹은 수만 명 이상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다국적망을 갖추고서 활동하고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신용평가 수수료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을 매긴다. 만약 잘못된 등급을 매겼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이 청구되니 책임감 있게 평가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무책임하게 할 경우, 자신들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되고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뢰와 명성 등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골디락스 전까지는 신용평가 등급에 관한 변화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줄강등을 계속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중립적이어야 하는 곳이 오히려 악순환을 촉발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등의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2011년 8월 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킴으로써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더 악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기준 통화인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과연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의 의제로 “국제신용평

가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모든 나라가 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여신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좀 완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서 지난달에는 그 일부 결과가 채택이 되기도 했다.

UN에서 신용평가를 하면 어떠한 질문을 하셨는데, UN에서 말아서 할 수도 있겠으나 신용평가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상업적인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평가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UN의 산하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국제신용평가 시스템이라는 대의제 아래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논의 대상에 있었으나, UN이나 IMF 쪽에서 수행하자는 논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아마 95% 이상의 확률로 제 말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외환 보유 7위국인데,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국가의 재무장관이 환율에 대해서 공공연히 언급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으며, 환율과 관련한 정책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는 오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만 하겠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고, G20 경주재무장관회의에서 발의가 된 이른바 ‘Seoul Action Plan’의 환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각국 경제의 펀드멘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변동성은 예외적으로, 예컨대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말하는 한 시적이거나 아주 제한적인 미세조정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Seoul Action Plan의 취지이다.

‘미국은 환율의 자유변동을 용인하는 나라이고, 일본이나 EU는 개입을 주장하는 나라’라는 일종의 고정관념(stereotype)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아주 적극적인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환율을 염두에 두고 양적완화를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재정정책 여력의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경기부진 등을

완충하기 위해 통화확대정책을 쓰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한다. ‘아베노믹스(abenomics)’에서도 환율에 관해서는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디플레이션(deflation)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채 매입과 통화 추가 발행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환율에 대하여 이례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모두 G20의 Seoul Action Plan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나라들이라면 BRICs를 필두로 하는 신흥국 그룹이지, 선진국 사이에서 그룹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BRICs와 G7의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G20국가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조율자로서 또는 key player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며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호석/한국서부발전 관리본부장

성장과 분배에 대한 부분으로, 보통 남미에서는 GNP 2만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유럽 쪽에서는 복지나 분배 때문에 발목이 잡혀 3만달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2만달러, 3만달러, 4만달러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뒤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정책을 써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다.

조성일 / 중앙대 교수

장관님은 국정기획수석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하셨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들의 가장 핵심적인 개선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경영체제 개선에 관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영근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 직원이 천여 명 밖에 안 되며,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협력사이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관님께서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바람직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

최봉환 /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오늘 포럼은 이번 정부의 마지막 공공정책포럼이기 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란 생각이 든다. 장관님께서 는 이 정부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에 관여하였고, 경영 평가도 하셨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과한 것 같아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매우 아쉽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만큼 집행이 잘 되는 곳이 없고, 세계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한국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자체가 비효율성의 표본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꼭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등으로 뺄셈을 하려고 든다. 그렇게 계속 뺄셈을 할 만큼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인 것인지 한 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 차기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충호 / 한국가스공사 기획본부장

장관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린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로 인한 미수금이다. 5조 4천억원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 이를 유동화채권으로 발행해서 부채비율을 낮춰보고자 했다. 지금까지 회계제도상에는 매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물시장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회계기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실물시장과 요금 정책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장관님께서 혹시 남은 임기 동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가스공사의 연료비 연동제 미수금에 대해 답하자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유동화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미수금을 유동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본질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보증 같은 것이 없어 여전히 부채로 볼 수밖에 없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바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성장률, 또는 소득수준별 적정 분배에 관해서 질문

을 주셨는데, ‘분배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이론은 있겠으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분배에 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너무 분배에만 치중을 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니계수에서 우리나라는 0.311 정도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서유럽에서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분배 상태가 소득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결국 분배에 대한 생각은 각국 국민들의 의식, 전통 등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가 우리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관해서는 사실상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직원들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통제 밖에 있다며 비정규직에 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등을 한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런 경영 노하우를 잘 살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추진해주시면 될 것 같다. 직종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정부의 취지 등은 연속성을 지닌다고 이해 해주면 좋겠다. 뺄셈을 좀 많이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다소 과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뺄셈을 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이다. 애국심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자발적으로 “오래 살려면 우리가 군살을 좀 빼야하지 않겠어? 그래, 군살 좀 빼고 근육을 키우자”하는 쪽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마지못해 따라 하는 직장

다니면 재미도 없을 것 같다. 자율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자긍심을 갖는 직장이 되도록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KIP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과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3-01

요약

- 미국은 2013년 1월 2일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을 통과시킴으로써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 중산층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방지를 도모함
 - 개인소득세율 39.6%,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세율 20%, 상속·증여세율 40% 등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였으며, 최저한세 계산 시 기본공제액의 물가연동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지불급여세(payroll tax) 감면정책을 폐지함
 - 특별감가상각제도, 연구세액공제제도(research tax credit), 에너지 인센티브 세제 등의 감면법안을 2013년까지 연장 시행함
- 캐나다는 2013년도에 적용할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관련 규정을 확정 발표함
 -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하의 근로자 및 고용주 연금보험료율은 동결되었으며, 연금수급이 가능한 소득기준액은 소폭 인상되었음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관련 근로자 및 고용주의 보험료율은 모두 소폭 인상되었음
- 벨기에는 요건을 갖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12월 27일 의회

를 통과하였고, 12월 31일 공표함

-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12월 13일 금융거래세 도입안(2차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100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함. 또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를 2017년 12월 까지 30%로 인상하기로 함
- 중국의 증권규제위원회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적격외국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함
- 싱가포르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구매자추가인지세(additional buyer's stamp duty) 세율을 인상하고,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판매자인지세(seller's stamp duty)를 신설함

1.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통과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월 2일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서명함으로써 동일자로 법안의 효력이 발생함
 - 의회는 ‘2001년 및 2003년의 부시시대(Bush era) 감세정책’ 관련 법안의 2012년 12월 31일자 시효 만료에 따른 중산층의 급격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한 것임
 -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전면적인 예산지출 삭감(spending cuts)을 2013년 3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2개월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



■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수준을 기존 35%에서 39.6%로 인상시킴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독신납세자 기준 40만달러, 부부합산신고 기준 45만달러 초과분임
- 기존의 구간별 소득세율 10%, 15%, 25%, 28%, 33%, 35%는 동일하게 유지함

■ 통상소득(ordinary income)¹⁾ 기준으로 39.6%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통상소득 기준으로 10% 및 15%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0%의 경감세율, 25~35%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15%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기존의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됨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금액(exemption amounts)을 물가수준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기로 함

- 기본공제금액은 2012년은 독신납세자 기준 50만 600달러, 부부합산신고 기준 7만 8,750달러였으며 2013년은 독신납세자 기준 5만 1,900달러, 부부합산신고 기준 8만 800달러임

■ 고소득층 개인을 대상으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의 적용을 제한하고,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소득단계별로 축소하여 적용하는 등 조세 혜택을 줄임

-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독신납세자 기준 25만달러, 부부합산신고 기준 3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함
- 2013년 현재 인적공제액은 3,900달러인데, 독신납세자(부부합산신고)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조정된 총소득이 25만달러(30만달러)를 초과하면서부터 인적공제 적용금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37만 2,500달러(42만 2,5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는 완전히 배제됨

■ 개인소득세 산정 시 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state and local income taxes) 대신 주정부에 납부한 판매세(state and local sales taxes)를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 실시함

■ 「오바마 의료법(Affordable Health Care Act of 2010)」의 개정으로 기존 의료세 외에 다음 두 종류의 새로운 추가 의료세(new additional medicare taxes)가 부과됨

- 임금소득이 독신납세자 기준 20만달러(부부합산신고 기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0.9%의 추가 의료세를 부과함
-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이 독신납세자 기준 20만달러(부부합산신고 기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3.8%의 추가 의료세를 부과함
- 순투자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로열티소득, 임대소득, 자본이득 등이 포함됨

1) 종합소득과세를 위하여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1년 미만 보유 자산으로부터의 자본이득 등을 합산한 가액

- 지난 2년간 시행되었던 근로자부담분 지불급여세 (payroll tax)²⁾ 2% 감면제도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
- 따라서 근로자부담 지불급여세는 4.2%에서 6.2%로 회복됨

나.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40%)이 적용되는 구간을 신설함
 - 기존에는 과세표준 50만달러 초과 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기존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세표준 1백만달러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함
- 2011년부터 적용되어 왔던 ‘물가수준 연동 면세점 (exclusion) 5백만달러’ 기준 및 배우자간 미사용 면세점 금액 승계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됨
 - 면세점은 2011년 500만달러, 2012년 512만달러, 2013년 525만달러임
 -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면세점 금액을 승계받아 자신의 상속 또는 증여 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기업관련 세제 분야

-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 시행함
 - 내국세법 제41조(IRC Sec. 41)상의 연구세액공제 (research tax credit)제도

- 일정한 신규취득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첫해에 50%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감가상각제도 (IRC Sec. 168(k))

- 5년 이상 보유한 적격 중소기업주식의 양도 시 얻는 이득을 100%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13년까지 연장 실시함

- 다음과 같은 각종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세제는 2013년까지 연장 실시함

- 풍력발전시설 및 재생에너지 기기에 대한 제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IRC Sec. 45)
- 특정 비상업용 에너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certain nonbusiness energy property) (IRC Sec. 25C)
- 대체연료 보급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alternative fuel refueling property) (IRC Sec. 30C)
- 바이오경유 및 재생경유 세액공제(credit for biodiesel and renewable diesel) (IRC Sec. 40A)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2. 캐나다의 2013년도 적용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관련 규정 확정

- 2013년 1월 4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회보장기여금 관련 규정을 확정함

2)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외에 중업원 부담 그리고 고용주 부담의 지불급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정부는 지불급여세를 노인 생존 배우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용도로 사용하게 됨. 지불급여세 세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부담이 각각 6.2%로 총 12.4%임



가. 연금보험 관련 규정

-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하에 ‘연금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기준액(pensionable earnings)’은 전년도 5만 100캐나다달러에서 2013년 5만 1,100캐나다달러로 소폭 상향됨
 - 즉, 2013년의 경우 소득이 5만 1,1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연금보험료 납부면제소득기준, 연금보험료율, 연간 최대 연금보험료 납부액 수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함
 -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소득기준은 3,500캐나다달러 이하임
 - 연금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4.95%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9.9%임
 - 연금보험료 납부총액 한도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2,356캐나다달러,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4,712캐나다달러임
 - 즉, 소득 수준이 4만 7,596캐나다달러를 넘어서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최대한도액(근로자: 2,356캐나다달러, 자영업자: 4,712캐나다달러)으로서 일정하게 됨

나. 고용보험 관련 규정

- 근로자 및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요율 및 고용보험료 연간 최대 납부 한도액이 소폭 인상됨
 - 2013년도 고용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근로자의 경우 1.83%에서 1.88%, 고용주의 경우 2.56%에서 2.63%로 인상됨

- 2013년도 고용보험료 최대납부 한도액은 전년 대비 근로자의 경우 840캐나다달러에서 891캐나다달러, 고용주의 경우 1,175캐나다달러에서 1,248캐나다달러로 인상됨
 - 고용보험료 납부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소득 임계점은 4만 5,900캐나다달러에서 4만 7,400캐나다달러로 늘어남

(자료 수집 및 정라: 이형민 회계사)

3. 벨기에³⁾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률 개정

- 벨기에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12월 27일 의회를 통과하였고 12월 31일에 공포함
 - 요건을 갖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91년 이후로는 0%로 과세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0.4%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

〈표 1〉 요건을 갖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적용요건

구 분	개정사항 내용
과세적용시기	2013년 12월 31일 이후
적용대상	벨기에 국적의 기업과 벨기에에 지점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기업
적용방법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됨
적용제외기업	회사법 15조에서 언급하는 3가지 조건인 50인 이하 사업장, 연 매출 730만유로 이하, 총자산 365만유로 이하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

- 벨기에에는 이자,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1%와 25% 두 단계에서 25%의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특정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에 대한 세율은

3) <http://www.taxanalysts.com>

15%로 규정하였음

- 벨기에는 2011년 12월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5%와 25% 두 단계에서 15%를 21%로 상향시키는 개정을 함(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세율은 15%를 지속 적용함)
- 금번 개정은 2011년의 개정안을 좀 더 간단하게 하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표 2〉 25% 이외의 세율을 적용받는 예외적인 경우¹⁾

25% 이외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적용세율
청산으로 인한 분배금	10%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15%
국채로부터의 이자	15%
세금면제한도 이상의 저축 중 요건에 맞는 저축에 대한 이자	15%
법에서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²⁾	15%

주: 1) http://www.deloitte.com/view/en_BE/be/services/tax/tax-news-and-publications/tax-reforms-hub/belgium-budget-2013/

2) 저작권 및 저작권 인접 권리, 법에서 정한 사용료 대상 또는 의무적인 면허에 대한 사용료

- 역외 생명보험계좌에 대하여 세무신고의무를 추가시켰으며 개정의 목적은 역외 생명보험계좌를 통한 수입이 있을 경우 적정하게 신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벨기에 국적이 아닌 해외금융기관의 경우 해외생명보험계좌를 통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벨기에 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원천징수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한 것임
- 개인의 생명보험에 대한 간접세율을 기존 1.1%에서 2.2%로 상향시켰으며 상향된 세율은 2013년 1월 1일

이후로 납부되는 모든 생명보험료에 과세됨

- 생명보험에 대한 간접세는 납부하는 생명보험료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 대상자는 보험계약자임⁴⁾
- 단, 생명보험 중 모기지론(Mortgage loan) 사용자가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잔액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생명보험료는 1.1%의 간접세율을 계속 적용함

〈표 3〉 벨기에의 보험에 대한 간접세율 간략 정리¹⁾

보험 종류	적용 세율
개인에 대한 생명보험	2.2%(변경 전 1.1%)
개인이 아닌 경우 생명보험	4.4%
사고와 건강보험	9.25%
자동차보험	9.25%
화재보험	9.25%
수송품 보험	1.4%
운송용 항공기 기체보험	9.25%

주: 1) Summary of Indirect Taxation on Insurance Contracts in Europe 2008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4.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에 금융거래세 도입안(2차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적용대상거래와 세율
 - 상장주식거래: 2013년 말까지 거래가액의 0.12%, 이후 0.1%
 - 장외주식거래: 2013년 말까지 거래가액의 0.22%, 이후 0.2%
 - 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거래금

4) Summary of Indirect Taxation on Insurance Contracts in Europe 2008



액의 0.02%

- 파생상품거래: 파생상품의 종류와 계약의 명목가치(notional value)에 따라 0.025~100유로까지 과세

- 도입안(2차 개정안)에서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함
 - 적용대상 파생상품: 이탈리아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에 기초한 파생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 도입안에 따르면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태훈 회계사)

5. 브라질의 관세 인상 및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 인상

가. 수입 관세⁵⁾ 인상

-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100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함⁶⁾
- 주요 인상 품목은 철강, 석유화학, 원료 의약품, 기계 장비, 타이어, 전기부품 등이며 적용 시기는 2013년 3월 이후 1년간으로 예정
 - 현재 적용되는 관세는 12~18%이며, 인상기간은 12개월이고 추가로 12개월간 연장이 가능함
 - 다만, 브라질 정부는 관세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관세인상을 철회할 방침임

■ 이번 관세 인상에는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타이어, 기계 장비, 방사선 장비, 전기부품 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의 관세인상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유럽 연합(EU)을 비롯한 다수 국가로부터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 브라질은 WTO 규정 내에서 관세를 35%까지 인상할 수 있음을 강조

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⁷⁾ 인상

■ 브라질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를 2017년 12월 까지 30%로 인상하기로 함

- 당초 인상안은 2012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2017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함

■ 공업세 인상 대상은 수입 자동차는 '브라질산 부품 의무사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동차에 한정됨

- 브라질산 부품 의무사용 조건은 수입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 중 65% 이상이 브라질산(産)이어야 한다는 규정임

■ 공업세 인상으로 향후 브라질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브라질 내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Anfavea)는 2017년까지 500억~600억헤알(한화 약 27조 5천억~33조원)의

5) Imposto de Importacao. 수입품에 부과되는 연방세

6) Câmara de Comércio Exterior, 2012년 10월 26일

7) Imposto sobre Produto Industrializado. 대부분의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연방세로서,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됨(과세표준은 물건가격이며, 평균세율은 4%이지만, 세율은 0~330%)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지우 연구원)

6. 중국의 적격외국기관투자가 자본이득 과세안

- 증권규제위원회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적격외국기관투자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음
- 현재는 증권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 특별배당금(紅利, bonus-dividend)과 이자에 대해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며, 증권의 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마정화 전문연구원)

7. 싱가포르의 인지세 개정

- 싱가포르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구매자추가인지세(additional buyer's stamp duty) 세율을 인상하고,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판매자인지세(seller's stamp duty)를 신설함
- 2011년 12월 8일 거주용 부동산 취득분부터 기존의 구매자인지세(buyer's stamp duty)에 추가적으로 구매자추가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현재 구매자인지세는 1~3%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구매자추가인지세에 대한 개정 내용은 납세자 유형과 기존에 보유한 거주용 부동산 개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으로서 2013년 1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됨
-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 적용하는 세율을 15%로 인상함

- 영주권자(Singapore Permanent Residents)가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함
- 기존에 1개 이상의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시민권자(Singapore Citizens)가 거주용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7%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함

〈표 4〉 싱가포르의 구매자추가인지세 세율

구매자의 특성		세율	
납세자 유형	거주용 부동산 기존 보유수	종전	개정
외국인	무관	10%	15%
영주권자	0	0	5%
	1 이상	3%	10%
시민권자	0	0	0
	1	0	7%
	2 이상	3%	10%

- 2013년 1월 12일 이후 산업용 부동산(industrial properties)을 취득하여 3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판매자인지세가 적용됨
-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판매자인지세는 〈표 5〉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납부세액이 차등화됨

〈표 5〉 싱가포르의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판매자인지세 개정

보유기간	납부세액
1년 이하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 중 높은 금액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 중 높은 금액의 10%
2년 초과 3년 이하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 중 높은 금액의 5%
3년 초과	0

(자료 수집 및 정리: 마정화 전문연구원)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금융거래세(FTT) 도입 승인 및 소말리아에서의 EU 훈련임무 연장 결정 등 주요 내용 논의(2013.1.22.)¹⁾
 - 이번 회의를 통해 독일 등 11개국의 금융거래세(FTT) 도입을 승인
 -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의 11개국이 금융거래세(FTT) 도입에 합의
 -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FTT) 세부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
 - 이외에도 European Semester²⁾,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등 각종 현안을 논의
- EU 통계청(Eurostat), 2012년 3분기 정부부채 발표(2013.1.23.)³⁾
 - 유로존(EA17)의 2012년 3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는 이전 분기 대비 0.1%p증가한 90.0%, EU 27개국은 이전 분기 대비 0.1%p증가한 85.1%로 전년 3분기 대비 각각 3.2%p, 3.6%p 증가함
 - 유로존(EA17)과 EU 27개국 모두 3분기 정부부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식 외 유가증권으로 각각 78.9%, 80.4%를 차지

- 2012년 3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가 높은 비율을 나타낸 나라는 그리스(152.6%), 이탈리아(127.3%), 포르투갈(120.3%) 순이며 낮은 비율을 나타낸 나라는 에스토니아(9.6%), 불가리아(18.7%), 룩셈부르크(20.9%)
- 2012년 2분기 대비 GDP 대비 정부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아일랜드(5.9%p), 그리스(3.4%p), 포르투갈(2.9%p)이며, 전년 3분기 대비 GDP 대비 정부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키프로스(17.5%p), 아일랜드(13.4%p), 스페인(10.7%p)

〈표 1〉 유로존(EA17) 및 EU 27개국의 2012년 3분기 정부부채

		Q3 2011	Q2 2012	Q3 2012
EA17				
Government debt	(million euro)	8,145,018	8,508,932	8,524,231
	(% of GDP)	86.8	89.9	90.0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million euro)	226,716	234,060	240,821
	(% of total debt)	2.8	2.8	2.8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million euro)	6,495,914	6,695,945	6,721,644
	(% of total debt)	79.8	78.7	78.9
loans	(million euro)	1,422,388	1,578,926	1,567,766
	(% of total debt)	17.5	18.6	18.3
	(million euro)	58,609	155,868	158,462
	(% of GDP)	0.6	1.7	1.7
EU27				
Government debt	(million euro)	10,255,033	10,834,138	10,922,795
	(% of GDP)	81.5	85.0	85.1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million euro)	396,490	407,237	417,099
	(% of total debt)	3.9	3.8	3.8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million euro)	8,278,159	8,685,556	8,778,646
	(% of total debt)	80.7	80.2	80.4
loans	(million euro)	1,580,383	1,741,345	1,727,050
	(% of total debt)	15.4	16.1	15.8
	(million euro)	58,609	157,518	160,831
	(% of GDP)	0.5	1.2	1.3

1) EU이사회,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 European Semester: EU 차원에서 회원국의 건전 예산편성과 성장·고용 촉진적 경제정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3) EU통계청, "Third quarter of 2012 compared with second quarter of 2012 Euro area and EU27 government debt nearly stable at 90.0% and 85.1% of GDP respectively"

4) EU정상회의

- EU 정상회의 개최, 2014~2020년 장기예산안 합의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2013.2.7.~2013.2.8.)⁴⁾
 - EU정상회의는 9,599억 8,800만유로 규모의 2014~2020년 장기예산안에 합의
 - 이는 2007~2013년 예산 대비 3% 삭감된 규모이며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1조 330억유로보다 730억유로 감소
 - 교통/에너지/리서치 부문 예산과 농업 및 낙후지역개발 예산을 당초보다 삭감했으며, EU집행위원회 공무원의 임금동결 및 인력 5% 감축에도 합의
- 2013년 두 번째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2014년 EU 예산편성지침 채택 및 2013 European Semester⁵⁾의 진행에 관해 논의(2013.2.12.)⁶⁾
 - (2014 EU예산) EU이사회는 2014년 EU예산편성지침을 채택
 - 2014년 EU의 예산초안 작성 시 기본이념 및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을 채택
 - 많은 회원국들이 적자 및 채무수준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수준에서 재정규제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
 - (2013 European Semester)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두 개의 보고서⁷⁾를 바탕으로 2013 European Semester 시행을 위한 거시경제 · 재정 정책 가이드라인 채택
 - 이외에도 G20 재무장관회의, 2012 재정건전성 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
- EU통계청(Eurostat), 2012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13.2.14.)⁸⁾

- 유로존(EA17)의 4분기 GDP는 3분기 대비 -0.6%, EU 27개국은 -0.5% 수치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유로존(EA17)은 -0.9%, EU 27개국은 -0.6%를 기록

〈표 2〉 유로존(EA17) 및 EU 27개국의 2012년 4분기 GDP 성장률

국 가	이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2				2012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0.2	-0.5	0.0	-0.1	0.4	-0.3	-0.4	-0.4
독일	0.5	0.3	0.2	-0.6	1.2	1.0	0.9	0.4
에스토니아**	0.2	0.5	1.8	0.9	3.6	2.5	3.2	3.4
아일랜드	-0.5	0.4	0.2	-	1.7	0.1	0.8	-
그리스**	-	-	-	-	-6.7	-6.4	-6.7	-6.0
스페인	-0.4	-0.4	-0.3	-0.7	-0.7	-1.4	-1.6	-1.8
프랑스	-0.1	-0.1	0.1	-0.3	0.2	0.1	0.0	-0.3
이탈리아	-0.8	-0.7	-0.2	-0.9	-1.3	-2.3	-2.4	-2.7
키프로스	-0.6	-0.8	-0.7	-1.0	-1.7	-2.4	-2.2	-3.0
룩셈부르크	0.1	0.5	-0.3	-	-0.3	0.9	-0.1	-
말타	0.0	1.4	0.9	-	-0.7	1.2	2.0	-
네덜란드***	0.1	0.2	-1.0	-0.2	-1.0	-0.4	-1.2	-0.9
오스트리아****	0.4	0.1	0.1	-0.2	0.8	0.6	0.8	0.4
포르투갈	-0.1	-1.0	-0.9	-1.8	-2.3	-3.1	-3.5	-3.8
슬로베니아	0.0	-1.1	-0.6	-	-0.8	-2.3	-2.9	-
슬로바키아	0.3	0.4	0.3	0.2	2.7	2.3	2.0	1.2
핀란드	0.4	-1.2	-0.3	-0.5	1.5	-0.2	-1.2	-1.6
EA17	0.0	-0.2	-0.1	-0.6	-0.1	-0.5	-0.6	-0.9
불가리아	0.0	0.3	0.1	0.1	0.5	0.5	0.5	0.5
체코	-0.6	-0.4	-0.3	-0.2	-0.5	-1.0	-1.3	-1.7
덴마크	0.1	-0.7	0.3	-	0.1	-1.2	-0.4	-
라트비아	1.2	1.3	1.7	1.3	5.6	4.8	5.3	5.7
리투아니아	0.3	0.6	1.2	1.0	4.2	3.2	3.2	3.1
헝가리	-1.0	-0.5	-0.4	-0.9	-1.2	-1.3	-1.7	-2.8
폴란드	0.5	0.2	0.4	-	3.5	2.3	1.9	-
루마니아	-0.2	0.3	-0.2	0.2	0.8	1.3	-0.3	0.1
스웨덴	0.5	0.7	0.5	-	1.3	1.3	0.7	-
영국	-0.2	-0.4	0.9	-0.3	0.2	-0.3	0.0	0.0
EU27	0.2	-0.3	0.0	-0.1	1.4	0.7	0.1	-0.3

*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working-day correction for the following Member States: Ireland, Portugal, Romania and Slovakia
 **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non-seasonally adjusted data.
 ***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working-day adjusted data.
 **** Growth rates are calculated using the trend component.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5) European Semester: EU 차원에서 회원국의 건전 예산편성과 성장 · 고용 촉진적 경제정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6) EU이사회,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7) EU집행위원회, "Annual Growth Survey 2013", "Alert Mechanism Report", 2012.11.28
 8) EU통계청, "Euro area GDP down by 0.6% and EU27 down by 0.5%"



IMF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2013. 1. 23.)⁹⁾

- WEO Update 보고서의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2012년 10월 WEO 보고서의 전망치에 비해 다소 낮아짐
 - 2012년 10월 WEO보고서의 세계 경제성장률(3.6%)에 비해 0.1%p 낮아진 3.5%로 전망, 2014년 성장률도 지난 보고서의 전망치(4.2%)보다 0.1%p 하락한 4.1%로 조정
 - 유로존 위기의 더딘 회복과 미국의 재정 감축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임
- 2013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1.4%로 2012년 10월 WEO 보고서 전망에 비해 0.2%p 하락하였으며,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
 - (미국) 금년 경제성장률을 2.0%(2012년 10월 보고서 대비 $\Delta 0.1\text{p}$)로 전망하였으며, 단기적으로 과도한 재정 감축은 피하고 재정 지원혜택과 조세 개혁에 중점을 둔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계획 필요
 - (유로) 당해 연도 경제성장률은 -0.2% (2012년 10월 보고서 대비 $\Delta 0.3\text{p}$)로 전망되며, 민간부문 부채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 대응지연과 위험 해결 불확실성 존재 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함
 - (일본) 2013년 경제성장률은 2012년 10월 WEO보고서의 예측과 동일한 1.2%로 전망되는데, 이는 경기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신흥경제국들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5.5%로 전망되며,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중국) 2013년 경제성장률은 8.2%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구조개혁과 개인소비 부문 진작을 통한 경제재조정이 필요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OECD

■ OECD, 분기별 고용률 발표(2013.1.22.)¹⁰⁾

- 2012년 3분기 OECD 회원국들의 고용률은 65.0%로 2012년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함
 - 유로지역 국가들의 고용률은 63.8%로 직전 분기와 동일함
 - 미국의 고용률은 연이은 증가로 67.1%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고용률은 0.2%p 하락하여 72.1%를 기록함

■ OECD,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보고서 발표(2013.2.5.)¹¹⁾

-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로 소득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 노동시장의 이원성,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지적함
 - (소득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 2011년 지니계수가

9) 참고: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3/update/01/index.htm>

10) 참고: <http://www.oecd.org/std/labourstatistics/employmentssituationthirdquarter2012oecd.htm>

11) 참고: <http://www.oecd.org/els/soc/korea-must-strengthen-social-cohesion-to-boost-growth.htm>

0.32로 OECD 평균에 근접,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 불평등 및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 역할은 최저 수준

- (노동시장의 이원성) 2011년 임시직 비중은 24%로 OECD 평균의 2배이고, 비정규직이 많은 서비스업종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가 열악함
- (영유아보육 및 교육) 만 3~4세 유아교육 · 보육 시설 취원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80.2%, 사립 시설 의존율 79.1%, 유아교육 · 보육지출에 대한 정부부담은 낮고 가계부담은 높음
- (의료서비스 개선)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증가, 병원중심 시스템으로 1차 의료기능 취약
- 특히 소득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증가 등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조세수단을 통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증대하도록 권고함
-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6%로 OECD 평균 22.1%보다 낮음
- 2009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25.5%(OECD 평균 33.7%), 부가가치세 10%(OECD 평균 19%)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세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비용의 재원을 마련해야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 2011~2012년 총조세지출은 1,113억호주달러로 (GDP대비 7.6%), 2010~2011년 1,150억호주달러 (GDP대비 8.2%)에 비해 약 36억호주달러 감소
- 2011~2012년 조세지출의 감소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주택시장 침체가 주된 요인
- 2011~2012년 주택과 연금에 관한 조세지출이 총조세지출의 55%를 차지

〈표 3〉 조세지출 현황 및 예측

(단위: 백만호주달러)

연도	주택 (Housing)	연금 (Superannuation)	기타 조세지출	총계	GDP 대비 비율
2007~2008	40,500	38,940	47,306	126,476	10.7
2008~2009	28,500	28,787	50,943	108,230	8.6
2009~2010	40,000	24,089	49,842	113,931	8.8
2010~2011	35,500	27,450	52,032	114,982	8.2
2011~2012	31,000	30,262	50,072	111,334	7.6
2012~2013	30,000	31,846	53,174	115,020	7.5
2013~2014	29,500	34,645	55,436	119,581	7.4
2014~2015	30,000	39,615	58,881	128,496	7.6
2015~2016	30,500	44,815	61,961	137,276	7.7

자료: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2013.1.31

- 2011~2012년 총조세지출액은 총직접지출액의 29%에 해당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경제 분야는 조세지출이 직접지출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집행됨

 호주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2012년 조세지출 보고서(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발표¹²⁾ (2013.1.31)

12) 호주재무부, <http://www.treasury.gov.au/>



〈표 4〉 2011~2012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 분	조세지출	직접지출 ¹⁾
일반공공서비스	4,206	23,153
국방	887	21,692
공공질서 및 안전	0	3,999
교육	3,379	29,050
보건	8,595	62,012
사회보장 및 복지	38,150	126,747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33,144	6,180
문화	276	3,809
에너지·연료	1,535	6,464
농림수산	395	2,953
광업, 건설·제조	-2,128	2,245
교통·통신	1,104	9,129
경제(other economic affairs)	21,088	10,054
기타 지출	703	70,253
총지출	111,334	377,739

주: 1) Final Budget Outcome 2011~2012의 수치
자료: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2013.1.31

-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불안, 하반기 광물자원 수출 가격의 폭락, 호주달러의 고환율로 인한 수출둔화를 세수부진의 배경으로 설명

- 연방보건부, 민간건강보험료 5.6% 인상 승인¹⁴⁾ (2013.2.8)
 -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민간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보조비용이 9.3%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 건강보험료가 인상은 4월부터 적용되며 개인가입자의 경우 주당 1.7호주달러, 가족의 경우 주당 3.7호주달러의 보험료가 증가될 전망
- 30세 이상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30% 세금 환급¹⁵⁾도 2013년 7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가입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캐나다

2. 기타

- 스완(Swan) 재무장관, 2012년 하반기 광산세 세수 발표¹³⁾(2013.2.8)
 - 2012년 7월 도입된 광물자원 임대세(MRRT: Minerals Resource Rent Tax)의 하반기 세금수입이 1억 2,600만호주달러로 집계
 - 이는 첫 6개월의 세수예상 목표인 10억호주달러의 12.6%에 그치는 수준

13)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treasurer.gov.au/>

14) 보건부 보도자료, <http://www.health.gov.au/>

15) 호주 정부는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의료세(Medicare Levy), 보험료 30% 환급, 평생건강보험(Lifetime Health Cover) 제도를 시행

16) 캐나다 연방국세청(CRA) 보도자료, <http://www.cra-arc.gc.ca/nwsrm/rfss/2013/m01/nr130102-eng.html>

17) 최대 2천캐나다달러까지 적용됨

1. 기타

- 캐나다 연방국세청(CRA), 새로 도입되는 '가족간병인 세금공제(The Family Caregiver Tax Credit)' 혜택 제시(2013.1.2)¹⁶⁾
 - 가족간병인 세금공제(The Family Caregiver Tax Credit): 가족간병인에 15%의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 혜택이 도입¹⁷⁾되며, 2012년 세금보고(2012 taxes)부터 신청가능

- 캐나다 재무부, 세계은행 기후변화펀드(Catalyst Fund)¹⁸⁾에 7천 5백만캐나다달러 투자발표(2013.1.25)¹⁹⁾
 - 캐나다는 코펜하겐협정(Copenhagen Accord)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억달러의 추가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 기금 역시 이에 포함
 - 이번 캐나다 투자기금이 2012년 12월부터 출범된 기후변화펀드(Catalyst Fund)에 투자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캐나다 재무부, 유동성플랜(Prudential Liquidity Plan) 시행 발표(2013.2.14)²⁰⁾
 - FY2012~2013 연방채무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²¹⁾의 일환이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 예정
 - 유동성플랜(Prudential Liquidity Plan)은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국내 예금 및 외화 준비금의 형태로 확보하여, 자금시장에서의 지불능력 및 캐나다 연방 채무의 신뢰성 제고 목표
 - 유동성플랜(Prudential Liquidity Plan)으로 캐나다 정부의 유동성수준이 약 350억캐나다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
 - ☞ 외환준비금 약 100억캐나다달러, 캐나다 정부예금 약 150억캐나다달러를 증액하고, 상반기까지 100억캐나다달러를 정부예금으로 추가확보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FY2012 예산집행의 잠정 결과 발표(2013.1.15)²²⁾
 - 2012년 재정적자는 872억유로(GDP대비 4.5%)로 3차 수정예산안의 재정적자 전망치(862억유로) 대비 1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
 - 재정수입은 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로 3차 수정예산안 대비 12억유로 감소한 2,835억유로(세입 2,684억유로, 세외 수입 141억유로 및 특별계정은 10억유로로 집계)로 전망
 - 재정지출은 2011년 대비 3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런 재정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 대비 4.5%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기타

- 국무총리와 예산부장관이 주관한 조세포탈(fraud)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²³⁾ 개최(2013.2.11)
 - 회의의 의제는 탈세, 불법영업, 세금서류 위조 등과 같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세포탈에 대한 대책 발표

18) Catalyst Fund는 2012년 12월 세계은행에서 협력적인 기후변화투자자 및 향후 사적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기후변화펀드

19) 캐나다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fin.gc.ca/n13/13-013-eng.asp>

20) 캐나다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fin.gc.ca/n13/13-023-eng.asp>

21) 「주요국 예산안 2013」 참조

22) 최종 결과는 2013년 3월 하순 발표 예정

23) 참고: 프랑스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lutte-contre-fraude-aux-finances-publiques-2013>



- 양자조세조약(bilateral tax treaties)에 따른 과세 정보 교환 및 조세문제 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 정비
- 생명보험사의 자금세탁 방지대책으로, 보험계약자 명부를 만들기 위한 고객조사 실시
- 현금사용 제한을 위해 거주자는 거래 당 3,000유로 → 1,000유로로, 비거주자는 거래당 15,000유로 → 10,000유로로 하향조정하는 입법조치를 2013년 말까지 시행
- 과세당국과 기업 간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조세정보 교환으로 과세당국의 기업통제 비용절감 및 미래 조세징수를 위한 예측가능성 강화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²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감사관(General Inspectorate of Finance)으로부터 이전가격 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
- 세금서류 위조방지를 위한 QR코드(QR code)가 새겨진 서류 사용

- 기업을 위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for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시행(2013.2.13)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 혁신, 교육, 그리고 신 시장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고용유지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150만개의 기업들이 2013년은 130억유로, 2014

년에는 200억유로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히에스더 연구원)

독일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FY2012 잠정결산 발표(2013.1.15)²⁵⁾
 - 재정지출은 3,068억 유로, 재정수입은 2,843억 유로로 잠정 집계됨
 - 신규차입은 225억 유로, GDP 대비 구조적 적자는 0.32% 기록
 - 부채제한법²⁶⁾(Schuldenbremse; Debt Brake)에 규정한 GDP 대비 0.35%보다 0.03%p 낮은 수치
 - 2011년의 GDP 대비 구조적 적자는 0.85%, 2013년 목표치는 0.34%

〈표 5〉 FY2012 결산(잠정)

(단위: 10억유로, %)

	2012(추정) ¹⁾	2012(잠정)	추정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11.6	306.8	△4.8
재정수입	283.5	284.3	0.8
조세수입	256.2	256.1	△0.1
세외수입	27.3	28.2	
신규차입	28.1	22.5	△5.6

주: 1) 2012 추경예산 포함
자료: 독일연방 재무부, föderliche Finanzen 2013.1.15

24)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며,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법인세를 차이를 이용한 세후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 문제가 됨 (위키백과)

25) 원문: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3/01/2013-01-15-PM04.html>
발표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Abt_2/2013-01-15-PM4.pdf?__blob=publicationFile&v=1

26) 연방의 신규 순채무 증가를 2016년부터 GDP의 0.35%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 증가는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참고: 『정책분석 11-06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p. 103~106)

2. 기타

- 경제기술부, 2013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3) 발표(2013.1.16)²⁷⁾
 - 2013년 경제성장률은 0.4%, 2014년은 1.6%로 전망
 - 중앙은행은 12월 월간 보고서(Monatsberichtsauflatz Dezember 2012)를 통해 2013년 0.4%, 2014년 1.9%로 전망한 바 있음
 - 2013년 실업률은 7.0%로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뢰슬러(Rösler) 장관은 유로 안정화를 위해, 유럽의 재정건전화 노력 및 경제성장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표 6〉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치
실질 GDP	3.0	0.7	0.4
실업률	7.1	6.8	7.0

* 2012 추경예산 포함

자료: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Press Releases 2013, 1, 16

- 재무부, 지방재정조정제도(Länderfinanzausgleich)²⁸⁾ 2012년 결산 보고서 발표(2013.1.17)²⁹⁾

27) 원문: <http://www.bmwi.de/English/Navigation/Press/press-releases,did=546136.html>

보고서: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Publikationen/jahreswirtschaftsbericht-2013,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28) 재정이 풍족한 주에서 재정이 어려운 주로 적절한 이전을 통해, 세입의 배분을 추가로 조정하는 제도(참고: 『정책분석 11-06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p.69~73)

29) 원문: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Laenderfinanzausgleich/laenderfinanzausgleich.html

보고서: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Laenderfinanzausgleich/Vorlaeufige-Abrechnung-des%20Laenderfinanzausgleichs-fuer-das-Jahr-2012.pdf?__blob=publicationFile&v=1

30) 독산자기준 연소득이 기본소득면세액 이하의 소득자는 급여세가 면제됨

31) 원문: http://www.bundesrat.de/cln_227/nn_8538/DE/presse/pm/2013/013-2013.html?__nnn=true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3/02/2013-02-01-PM11.html

- 16개 주(Länder)정부의 재정조정 결과, 3개 주(바이에른주 등)가 부담주가 되고, 13개 주(니더작센주 등)가 수혜주가 되어 주정부 간 재정격차 심화 시사
 - 가장 부유한 주는 바이에른주로 조정기여금 총액의 49.3%(39억 유로)를 부담
 - 최대 수혜주는 베를린시(도시주)로 조정교부금 총액의 41.9%(33억 유로)를 지원 받음

〈표 7〉 부담주의 부담액

(단위: 천유로, %)

부담주	2011년		2012년	
	조정기여금	비율	조정기여금	비율
바이에른	3,663,349	46.2	3,904,338	49.3
바덴-뷔르템베르크	1,778,596	22.4	2,694,281	34.0
헤센	1,804,075	22.8	1,326,829	16.7
함부르크	62,165	0.8	-	-
합계	7,308,184		7,925,448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föentliche Finanzen 2013, 1, 17

- 연방의회, 기본소득면세액(Grundfreibetrag)³⁰⁾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승인함 (2013.2.1)³¹⁾
 - 2013년 기본소득면세액은 8,130유로로 기존금액보다 126유로 높게 조정되며, 2014년부터는 추가적으로 224유로가 인상되어 8,354유로 적용



- 초기급여세율(Eingangssteuersatz) 14%는 종전대로 유지될 것이며, 금번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

〈표 8〉 기본소득면세액 추이

(단위: 유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본소득면세액	7,834	8,004	8,004	8,004	8,130	8,354

독일연방 재무부, Steuern 2009,8,4, Presse 2013,2,1 재구성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EU의 자금유입에 의해 2012년 12개월 동안의 PIP 지출은 61억유로로 경제유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세입(Net revenues)은 2011년도 대비 줄었으나 목표치 수준 유지에 그쳤고, 세액환급 전 소득(the marginal excess in income before tax refunds)의 증가는 119만유로임
- 세출(Primary expenditures)은 2012년에 471억유로이며 2011년 동 기간인 516억유로 대비 8.6% 감소한 수치임

그리스

1. 예산·결산 등

- 그리스 재무차관 크리스 스타이코라스(Chris Staikouras)는 2012년도 결산보고서의 세부사항을 발표함³²⁾ (2013.1.22)
 - 2012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primary deficit)는 35억유로(GDP의 1.8%)이며 동 기간 2011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64억유로(GDP의 3.1%)로 46% 개선됨
 - 2012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는 46억유로(GDP의 2.4%)임
 - 2012년도 예산적자(budget deficit)는 157억유로(GDP의 8.1%)이며 2011년 동 기간 예산적자인 228억유로(GDP의 10.9%)보다 31% 감소됨
 - 2012년 예산적자 목표치는 163억유로(GDP의 8.4%)임
 - 공공투자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 :PIP) 지출은 2012년 11개월간은 36억유로였으나,

- 그리스 재무부는 2013년 1월 예산 실적을 발표³³⁾ (2013.02.11)
 - 2013년 1월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398백만유로로 2012년 1월 기초재정수지 적자 33백만유로에 비해 개선된 수치
 - 기초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는 413백만유로
 - 정부 예산수지(State budget balance)도 159백만유로로 작년 1월의 490백만유로 예산수지 적자에 비해 긍정적인 수치임
 - 예산적자(budget deficit) 2013년 1월 목표치는 873백만유로
 - 정부예산의 총지출(expenditure) 규모는 43억유로로 작년 동 기간 목표치인 53억유로에 비해 11억유로 감소
 - 세출(primary expenditure)규모는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2013년도 1월 실적은 39억유로이며 전년도 1월의 48억유로에 비해 19% 감소한 수치
 - 세출(primary expenditure) 2013년 1월 목표치

32) 그리스 재무부, <http://www.minfin.gr/portal/el/resource/contentObject/id/ec2626ff-aae0-4ebc-b0d0-3858b682bc7e>

33) 그리스 재무부 홈페이지, <http://www.minfin.gr/portal/>

는 46억유로

- 공공투자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 PIP) 지출은 67억만유로로 전년도 1월의 49억만유로에 비해 증가함

〈표 9〉 State Budget Execution - 2013년 1월

	2012년 1월	2013년 1월			2012	2013	
	실적 (1)	실적 (2)	목표치 (3)	차이 (4=2-3)	실적 (5)	예측 (6)	목표치 (7)
I. 중앙정부수입 State Budget Net Revenue(1+2)	4,872	4,418	4,437	-19	51,925	51,458	51,458
1. 일반예산 순수입 Ordinary Budget Net Revenue(A+B-C)	4,827	4,374	4,357	17	48,325	46,322	46,322
A. Revenue before Tax Refunds	4,990	4,418	4,659	-241	51,482	49,137	49,137
B. Special revenue from licensing and public rights	0	0	9	-9	15	86	86
C. Tax refunds	163	45	311	-267	3,172	2,901	2,901
2. 공공투자예산 순수입 Public Investment Budget Net Revenues	45	45	80	-35	3,601	5,136	5,136
II. 중앙정부지출 State Budget Expenditure(1+2)	5,362	4,259	5,310	-1,051	67,614	62,652	62,652
1. 일반예산 지출 Ordinary Budget Expenditure (A+B+C+D+E)	5,313	4,192	5,110	-918	61,499	55,802	55,802
A. 세출(Primary expenditure)	4,844	3,932	4,611	-679	47,529	45,050	45,050
B. 병원의료지출 Grants to hospitals for past debt settlement	0	0	10	-10	410	750	750
C. 국방지출 Military procurement (on a cash basis)	13	11	29	-18	796	1,027	1,027
D. 보장지출 Guarantees called	13	11	15	-4	680	558	558

	2012년 1월	2013년 1월			2012	2013	
	실적 (1)	실적 (2)	목표치 (3)	차이 (4=2-3)	실적 (5)	예측 (6)	목표치 (7)
to bodies classified inside General Government	0	0	14	-14	117	469	469
to bodies classified outside General Government	457	239	460	-221	12,224	8,900	8,900
E. 순이자지출 Net interest payments	0	10	0	10	541	75	75
2. 공공투자프로그램 지출 Public Investment Budget Expenditure	49	67	200	-133	6,114	6,850	6,850
기초재정수지 (I- II+E) State Budget Primary Balance	-33	398	-413	811	-3,465	-2,294	-2,294
예산수지(I- II) State Budget Balance	-490	159	-873	1,032	-15,688	-11,194	-11,194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이탈리아

1. 기타

- 이탈리아 중앙은행, 2013년 실질GDP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2012.1.18.)
- 중앙은행은 Economic Bulletin³⁴⁾을 통해 악화된 세계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실질GDP성장률을 2012년 7월에 전망한 수치 대비 0.8%p 하향 조정함을 밝힘

34) Economic Bulletin은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간행물로 경제 상황, 정책, 전망 등에 대한 분석내용을 수록



〈표 10〉 2013년 이탈리아 실질GDP성장률 전망

		2013년 실질GDP성장률 전망
이탈리아 중앙은행 (BANCA D' ITALIA)	2012년 7월	-0.2%
	2013년 1월	-1.0%
IMF	2012년 10월	-0.7%
OECD	2012년 11월	-1.0%
EU집행위(EC)	2012년 11월	-0.5%

자료: 이탈리아 중앙은행, Economic Bulletin No. 65(2012, 7)
이탈리아 중앙은행, Economic Bulletin No. 67(2012, 1)
거시경제 전망표 재구성

- 이탈리아 통계청, 2012년 4/4분기 실질GDP³⁵⁾ 잠정치 발표(2013.2.14.)
 - 통계청 2012년 4분기 실질GDP 추정 결과, 실질GDP가 직전 분기(t-1) 대비 0.9% 감소했음을 밝힘
 -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3분기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이 중에서도 2012년 4분기 성장률은 최저치를 기록

〈표 11〉 이탈리아 분기별 실질GDP성장률

분기(t)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질GDP(백만유로)	356,734	357,642	357,214	354,882	
성장률 (%)	직전 분기(t-1)대비	0.1	0.3	-0.1	-0.7
	전년동기(t-4)대비	1.3	1.0	0.4	-0.5

분기(t)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잠정)	
실질GDP(백만유로)					
성장률 (%)	전년동기(t-4)대비	-1.3	-2.3	-2.4	-2.7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보도자료

35) Seasonally and calendar adjusted, chain-linked volumes with reference year 2005

36) 이에 대해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총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이탈리아 정치 불안 요인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탓"이라고 보도

37) 재무성, 「平成24年度補正予算フレーム」

38) 「2013년 1월 제호 재정동향」 참조

- 이탈리아 재무부, 3년 만기 국채 34억 5천만유로 규모 발행 (2013.2.13.)
 - 재무부에 따르면 3년 만기 국채 낙찰금리(Rendimento Lordo)는 2.3%로, 2013년 1월 1.85%보다 약 0.5%p 상승하여, 201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가 상승³⁶⁾
 - 발행액 대비 응찰비율(Importo Richiesto)은 1.37배로 2013년 1월 1.45배 대비 감소

(자료 수집 및 정리: 채민희 연구원)

● 일본

1. 예산·결산 등

-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FY2012 1차 추경예산안 각의 결정³⁷⁾ (2013.1.15.)
 - 임시각료회의에서 총 13조 1,054억엔의 추경예산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지원과 대지진 피해복구 및 향후 재해예방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예정³⁸⁾ - 10.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 지출을 포함. 이에 따라 국채발행 계획을 수정
 - ▣ 추경예산안 각의 결정에 따른 자원 부족분 7.8조엔을 국채 발행으로 보충함에 따라 2012년도 국채발행 규모는 기존 44조엔에서 52조엔으로 증가

〈표 12〉 FY2012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세 출		세 입	
1. 사전방재·감재 등	22,005	1. 세수	2,610
2.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26,924	2. 세외수입	1,495
3. 생활의 안정 및 지역 활성화	31,017	3. 공채금	52,210
(지역 건강임시교부금) (13,980)		4. 전년도 잉여금	8,706
4. 기타 경비	2,397		
5. 기본경비 감액	△17,322		
6. 부흥 특별회계에 전입	14,493	5. 전년도 잉여금(부흥재원)	11,165
7. 국가공무원 등의 인건비 삭감	△3,328		
8. 기초연금 국고부담 등	25,842	연금 특례 공채금	25,842
합계	102,027	합계	102,027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채금 52,210억엔: 건설공채 55,200억엔 증액, 특례공채 2,990억엔 감액
 3. 경제대책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의 추가지출 합계(중복분 제외)): 102,815억엔(일반회계세출 1~3, 부흥관련비용 3,177억엔, 내년도 부흥재원 추가(부흥채권 상환 및 감액) 12,685억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산업투자 증액 439억엔, 자동차안전 특별회계 증액 10억엔, 재정융자 증액 4,028억엔, 공공사업 등 국고 채무부담 2,530억엔의 총합)
 4. 경제대책 재정지출에 일반회계세출 4, 8을 포함한 추경예산 전체 재정지출은 131,054억엔

자료: 재무성, 『平成24年度補正予算フレーム』, 2013.1.23.

〈표 13〉 FY2012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세 출		세 입	
1. 부흥 관련 경비	3,177	1. 부흥특별세수	252
2. 기본 경비 감액	△1,120	2. 세외수입	△2
		3. 일반회계로부터 수입금	14,493
3. 내년도 부흥재원 추가 (부흥채권의 상환)	9,895	4. 내년도 부흥재원 추가 (부흥채권의 감액)	△2,790
합계	11,953	합계	11,953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24年度補正予算フレーム』, 2013.1.23.

■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한 92.6조엔 규모의 FY2013 예산 정부안을 발표³⁹⁾ (2013.1.29.)

• (기본방침) 기본적으로 경제재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을 예상한 중점적 예산 배분, 이를 통한 예산낭비 절감이 주요 내용임⁴⁰⁾

- (효율적 예산편성) 긴급경제대책과의 일체적인 예산편성(15개월 예산)으로 디스플레이션 조기탈피 및 성장력 강화를 도모

- (신임 확보) 재정건전화 목표를 감안, 국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목표로 함

- (예산 증점화) 부흥·방재대책,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생활의 안심·지역 활성화 3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여 경제재생의 실현을 추구

- (세출) 고품화의 진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공무원 임금삭감 등 공무 부분의 낭비를 억제하는 내용 포함

• (세입) FY2013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2조 2,776억엔(2.5%) 증가한 92조 6,115억엔

- (조세 및 인지도수입)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43조 960억엔으로 이는 신규 국채발행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기타수입) 전년 대비 8.3% 증가하여 4조 535억엔으로 예상

- (국채발행액) 전년 대비 3.1% 감소하여 42조 8510억엔으로 예상

• (세출) FY2013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92조 6,115억엔으로 편성

- (분야별) 사회보장 관계비(10.4%)와 공공사업 관계비(15.6%)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연금 관계

39) 재무성, 『平成25年度予算政府案』

40) 내각부에서는 지난 1월 24일 『平成25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에 대해 각의 결정함



비(△11.7%)는 지난해(△11.2%)에 이어 대폭 축소하여 편성

☞ 공공사업 관계비의 경우 인프라 노후화 대책 및 사전 방재대책 등으로 긴급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

- (국채비) 전년 대비 1.4% 증가하여 22조 2,415억 엔으로 예상
- (기초재정수지) 전년 대비 2.9% 증가하여 70조 3,700억엔으로 예상

〈표 14〉 FY2013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분	FY2012 (당초)	FY2013 예산	증감액	증감율(%)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423,460	430,960	7,500	1.8
기타 수입	37,439	40,535	3,096	8.3
국채발행	442,440	428,510	△13,930	△3.1
연금특례공채금	-	26,110	26,110	-
합 계	903,339	926,115	22,776	2.5
(세출)				
국채비	219,442	222,415	2,973	1.4
기초재정수지 경비	683,897	703,700	19,803	2.9
합 계	903,339	926,115	22,776	2.5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予算政府案」, 2013.1.29.

■ FY2011 「국가재무서류」 발표 (2013.1.29)

• FY2011 국가자산은 628.9조엔으로 FY2010에 비해 약 3.8조엔 증가하였고, 국가부채는 1,088.2조엔으로 전년 대비 약 45.3조엔 증가

- 자산 및 부채 차액은 △459.3조엔으로 FY2010에 비해(△417.8조엔) 차액이 증가

☞ 국가자산은 FY2007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FY2011에 소폭 증가한 반면,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자산·부채 차액도 증가함

〈표 15〉 국가재무서류 대차대조표

(단위: 조엔)

	FY2010 (2011.3.31)	FY2011 (2012.3.31)		FY2010 (2011.3.31)	FY2011 (2012.3.31)
〈자산〉			〈부채〉		
현금 및 예금	15.7	17.7	미지급금 등 ³⁾	11.3	11.2
유가증권	89.3	97.6	정부단기증권	90.7	107.2
미수금 등 ¹⁾	13.7	13.0	공채	758.7	791.0
선불비용	0.0	4.3	차입금	23.1	24.5
대부금	148.0	142.9	예탁금	6.1	7.5
운용기탁금	115.6	110.5	책임준비금	9.7	9.2
대손충당금	△2.7	△2.7	공적연금예탁금	123.9	118.5
유형자산	182.7	180.9	퇴직급여충당금 등 ⁴⁾	11.6	11.0
무형자산	0.2	0.2	기타채무 ⁵⁾	7.9	8.1
출자금	57.4	59.3	부채 합계	1,042.9	1,088.2
기타 자산 ²⁾	5.1	5.2	〈자산·부채 차액〉		
			자산·부채 차액	△417.8	△459.3
자산 합계	625.1	628.9	부채 및 자산·부채 차액 합계	625.1	628.9

주: 1) 의미수금, 미수수익, 미수(재)보험료의 총합계
 2) 재고자산, 기타 채권 등의 총합계
 3) 미지급금, 지급준비금, 미지급비용의 총합계
 4) 퇴직급부준비금, 상여준비금의 총합계
 5) 보관금, 전수금, 전수수익, 미경과(재)보험료, 기타채무의 총합계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 國の財務書類の貸借対照表の概要」, 2013.1.29

〈표 16〉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조엔)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자산	694.9	664.8	647.0	625.1	628.9
부채	977.8	982.2	1,019.0	1,042.9	1,088.2
자산·부채 차액	△282.9	△317.4	△372.0	△417.8	△459.3

주: 회계연도 말 기준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 國の財務書類の貸借対照表の概要」, 2013.1.29

2. 기타

- 내각부, 2011년 국민경제계산(확정치) 발표⁴¹⁾ (2013. 1.18.)
 - 2011년 순자산(국부)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약 2,995조엔으로 4년 연속 감소한 수치를 기록
 - 2011년 말 총자산은 8,451조엔, 총부채는 약 5,455조엔으로 이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자산 9조엔 감소와 토지가격 및 추가하락 등에 기인
- 정부 · 일본은행,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발표⁴²⁾ (2013.1.22.)
 - 디플레이션 조기 탈피와 물가 안정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일본은행) 물가 안정 도모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념으로 금융정책을 운영, 금융시스템의 안정확보를 도모해야 함
 - (정부) 경제재생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운영에 노력함과 동시에 일본경제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 (경제재정자문회의) 금융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영, 물가 현황 및 향후 전망, 고용,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 「2013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각의 승인⁴³⁾ (2013.1.28.)
 - (경제동향)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도 국내 총생산 실질 성장률은 1.0%, 명목 성장률은 0.3%로 추정
 - (경제전망) 2013년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는바, 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은 2.5%, 명목 성장률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정책 추진에 따라 꾸준한 수요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 경제재생을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함

〈표 17〉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2011년 실적 (명목)	2012년 추정 (명목)	2013년 전망 (명목)	전년 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 총생산	473.3	474.9	487.7	△1.4	0.3	0.3	1.0	2.7	2.5
완전 실업률	4.5	4.2	3.9	/					
소비자 물가	△0.1	△0.1	0.5						
GDP 디플레이터	△1.7	△0.6	0.2						
GDP 대비 경상수지 (명목, %)	1.6	0.9	1.0						

자료: 내각부, 「平成25年度の 経済見通しと 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3.1.28.

41) 내각부, 「平成23年度國民 經濟計算確報(ストック編ポイント)」

42) 내각부, 「デフレ脱却と持続的な 經濟成長の實現のための 政府 · 日本銀行の政策連携について」

43) 내각부, 「平成25年度の 經濟見通しと 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 경제재정자문회의, 고용 및 소득증대 방안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발표⁴⁴⁾ (2013.2.5)
 - (고용·소득 증대) 고용 및 소득증가의 선순환을 위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청년층 및 여성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함
 - 향후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임금인상, 근로자 기술향상, 기술전환 지원 등이 필요
 - 성장전략을 통한 일자리창출, 고용형태와 관계없는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구축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인적자본형성에 의한 노동생산성 상승이 필요
 - 정규·비정규직인 이원적인 형태가 아닌 다원적인 고용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
 - (디플레이션 탈피) 물가, 임금 등 디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투자, 산업 등 경제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급속한 장기금리 상승, 실물경제의 회복이 없는 가운데 물가상승, 지나친 엔화 약세, 자산버블의 발생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
 - 또한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2012년 분기별 GDP 속보(1차 속보치) 발표 (2013.2.14)
 - 2012년 4분기 실질 성장률은 전기 대비 $\Delta 0.1\%$ (연율 $\Delta 0.4\%$)로 지난 7~9월기에 비해 마이너스 폭은 축소하였으나,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증가요인) 가계소비 및 공공투자 증가로 국내수요가 전기 대비 0.1%를 기록하여 플러스로 전환, 이에 따라 성장률 마이너스폭이 소폭 감소

- (감소요인) 지속적인 세계경제 침체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수출 감소, 기업설비투자 감소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전망) 정부의 긴급경제대책과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시행으로 향후 일본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단, 내년 2분기에는 소비세율 인상 영향으로 일시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표 18〉 분기별 실질 성장률(계절조정계열)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2 (연율환산)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0~12월
국내총생산	0.2	1.5	-0.2	-1.0	-0.1	-0.4
국내수요	0.9	1.3	0.0	-0.3	0.1	0.2
민간수요	1.3	0.9	-0.4	-0.6	-0.2	-0.7
공적수요	-0.3	2.6	1.5	0.8	0.7	2.9
재화·서비스 순수출 ¹⁾	-0.7	0.2	-0.3	-0.7	-0.2	

주: 1) 실질 성장률 대비 기여도
자료: 내각부, 「四半期別GDP速報(2012年10-12月期・1次速報)」, 2013.2.14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포르투갈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12년도 결산 보고서 발표⁴⁵⁾ (2013.1.23)
 - 재정지출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총수입의 감소로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정부 이자지출 수준도 증가

44) 내각부, 「平成25年第4回經濟財政諮問會議事要旨」, 2013.2.5

45) 포르투갈 재무부(Ministro das Finanças), Execução orçamental janeiro

- 자본수입은 증가하였지만 부정적 경기상황의 저속과 소비의 감소로 세수가 감소하여 총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4.4% 감소
-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목표인 5% 이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경기지표들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13년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하고 2014년 이후로 부채수준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
-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완료에 따라 8억 3,880만유로 지원을 승인하여 현재까지 총 221억유로 지급⁴⁷⁾

〈표 19〉 FY2012 재정 집행결과

(단위: 백만유로, %)

	2011	2012	전년 대비 증감률
총수입	41,682	39,851	-4.4%
세입	34,359	32,025	-6.8%
세외수입	3,701	3,723	0.6%
자본수입	3,621	4,102	13.3%
총지출	(48,726)	(48,750)	0.0%
이자지출	(6,039)	(6,874)	13.8%
재정수지	(7,044)	(8,898)	26.3%
기초재정수지	(1,004)	(2,024)	101.5%

2. 기타

- IMF, 포르투갈 6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와 경제 연례평가 발표 (2013.1.16)⁴⁶⁾
 - 6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요구한 모든 이행기준 충족
 -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유로 국가들의 경제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2011년 이후로 국제 수익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EU 2014~2020년 장기예산안에 따라 2007~2013년 예산보다 9.7%가 감소한 278억유로를 배정받음⁴⁸⁾
 - EU 통합기금(Cohesion Funds)으로 196억유로, 공동농업정책기금(Common Agricultural Policy Funds)으로 81억유로를 배정
 - 2007~2013년 예산 대비 각각 10.6%, 7.6% 감소
 - 코엘료(Pedro Passos Coelho) 총리는 EU의 긴축 예산을 감인할 때 상기 배정액에 만족한다고 발표
- 통계청, 4/4분기 실질GDP성장률⁴⁹⁾ 및 실업률⁵⁰⁾ 발표
 - 실질GDP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 직전 분기 대비 1.8% 감소
 - 실업률은 강력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p 상승
 - 청년(15~24세)실업률은 40%를 기록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민 연구원〉

46) IMF, 'Portugal: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and Sixth Review Under the Extended Arrangement and Request for Waivers of Applicability of End-December Performance Criteria—Staff Reports, IMF, Press Release 2013.1.18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0254.0>)


47) IMF, 'IMF Completes Sixth Review Under an EFF Arrangement with Portugal, Approves 1 838.8 Million Disbursement, Press Release 2013.1.16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3/pr1314.htm>)

48) 포르투갈 총리실(Primeiro-Ministro), Portugal Sai Claramente Beneficiado No Nove Quadro Orçamental Da Ue, 2013.2.8

49) 포르투갈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tistica), Gross Domestic Product decreased 3,8% in real terms—4th Quarter 2012, Press Releases, 2013.2.14

50) 포르투갈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tistica), Unemployment rate at 16,9% - 4th Quarter 2012, Press Releases, 2013.2.13



 **스페인**

1. 예산·결산 등


- 돈토로 재정부 장관, 2012년 세입목표치 달성 발표⁵¹⁾ (2013.1.30)
 - 2012년 잠정(datos provisionales) 세입 규모는 1,687억유로이며, 2011년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2011년) 대비 29%이상 증가한 법인세 입에 기인

2. 기타

- 재정부, 2013~2015 전자정부행정 계획(estrategias del plan de Administracion Electronica del gobierno 2013~2015) 승인⁵²⁾ 발표 (2013.1.15)
 - 2012년 발생한 중앙정부의 5억건의 행정절차의 비용을 인력배치와 비교했을 경우,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한 절감액은 285억유로로 추산
 - ※ 총 5억건 중 전자처리가 가능한 수는 3억 6,500만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함
- 고용 및 사회보장부(la ministra de empleo y seguridad social), 의회에서 실업급여(PREPARA) 혜택 연장 비준⁵³⁾ 발표 (2013.2.14)
 - 실업 혜택이 만료된 자(장기 실업자) 및 과세소득이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400유로 지급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대 450유로까지 지급)

※ 당해 실업수당은 LFS(Labor Force Survey, 노동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실업률이 20%를 초과할 시, 6개월간 자동 연장되며 현재 스페인 실업률은 26%로 집계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영국**

1. 예산·결산 등

- 영국 통계청, 2012년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 (2013.1.22.)⁵⁴⁾
 - 2012년 12월 공공부문 경상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5억파운드 증가한 130억파운드이며, 4~12월 공공부문 경상재정적자는 FY2011~2012 대비 98억파운드 증가한 950억파운드로 나타남
 - 2012년 12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억파운드 증가한 154억파운드 규모이며, 4~12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8억파운드 감소한 785억파운드로 나타남
 - 공공부문 순부채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18억파운드 증가한 1만 1,114억파운드로 GDP의 70.7%를 차지함

51) <http://www.lamondc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isterioHaciendayAdministracionesPublicas/>

52) Council for Electronic Administration(전자행정위원회)에서 승인

53) <http://www.lamondc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isterioEmpleoySeguridadSocial/2013/140213EmpleoCongresoPREPARA.htm>

54) <http://www.ons.gov.uk/ons/rel/psa/public-sector-finances/december-2012/stb---december-2012.html>

〈표 20〉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

(단위: 십억파운드)

	12월			4~12월		
	2012 (A)	2011 (B)	(A-B)	2012/2013 (C)	2011/2012 (D)	(C-D)
경상재정수지	△13.0	△12.5	△0.5	△95.0	△85.2	△9.8
순투자	2.4	2.3	0.1	△16.4	14.1	△30.5
순차입	15.4	14.8	0.6	78.5	99.3	△20.8
순부채	1,111.4	1,009.6	101.8	1,111.4	1,009.6	101.8
GDP 대비 순부채(%)	70.7	66.0	4.7	70.7	66.0	4.7

자료: 영국 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December

2. 기타

-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 은행 개혁법안(Banking Reform Bill) 의회 제출 (2013.2.4.)^{55) 56)}
 - (목적) 영국 금융부문의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은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자를 보호
 - 핵심 개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형은행의 투자금융과 소매금융을 분리: 고객 예금을 위험한 투자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링펜스(ring-fence)⁵⁷⁾ 추진
 - 은행이 파산할 경우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의해 보호받는 예금자들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공
 - 이를 어기는 은행에 대해서는 영국은행(BOE)이

해당 은행을 강제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그레그 클락(Greg Clark) 금융차관은 “이 법안으로 앞으로는 은행이 파산해도 납세자가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영국은행(BOE)에게 은행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언급

- OECD, 영국 경제검토보고서(Economic Survey) 발표(2013.2.6.)⁵⁸⁾
 - (요약) 영국경제의 장기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지지하는 한편 성장과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조정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권고
 - (단기경제전망)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2년 △0.1%를 기록한 후 2013년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재정긴축 및 민간부문의 부채조정과 함께 글로벌 경제 둔화, 유로지역 전망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
 - (정책) 양적완화 조치, 대출 및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금융부문의 실패로부터 납세자 및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 은행위원회⁵⁹⁾의 주요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지속할 필요
 - (노동 및 복지정책) 노동자 기술 제고, 일할 유인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의 노력 필요
 - (경제성장) 기업환경 개선, R&D 촉진을 위한 세계 개혁, 녹색성장 촉진 등 경제성장 제고 및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55) http://www.hm-treasury.gov.uk/press_06_13.htm

56) 재무부는 은행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012.6.14.)

57) ring-fence는 은행의 소매금융 사업 부문을 위험한 투자 금융 사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2008년 미국에서 발표된 '볼커룰(Volcker Rule)'과 유사

58) <http://oecd.mofat.go.kr/korean/eu/oecd/news/news/index.jsp>

59) 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ICB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발생주의 기준의 FY2012 결산 결과, 순 연방부채(net federal liabilities)는 16.1조달러로 집계 (2013.1.17)⁶⁰⁾
 - 2012.9.30 기준 연방정부 소유 자산은 2.7조달러, 총부채는 18.8조달러 규모
 - 부채의 대부분은 비정부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public) 및 미지급이자(11.3조달러),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등(6.3조달러)으로 구성
 - 법정 부채한도(debt limit)의 적용을 받는 비정부부문 소유채무와 정부소유채무(intragovernmental debt) 합계는 16조 270억달러를 기록
 - FY2012 순운영비용(net operating cost)은 약 1.3조달러 규모로 FY2011에 비해 약 37억달러 증가
 - 반면 FY2012 현금주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는 전년 대비 약 2,092억달러 감소
 - FY2012 순운영비용과 현금주의 재정적자는 약 2,269억달러의 차이를 나타내며, 주 요인은 아래와 같음
 - ☞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관련 비현금 비용
 - ☞ 정부소유기업(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의 부채 하향 전망과 관련된 비용

<표 21> 순운영비용과 현금주의 재정적자 비교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1	2012	증감
순운영비용(net operating cost) ①	1,312.6	1,316.3	3.7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②	71.9	481.8	409.9
Liabilities to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③	△43.7	△307.2	△263.5
Other, Net ④	△14.2	52.3	66.5
Net Difference ⑤ = ②+③+④	14.0	226.9	212.9
현금주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 ① - ⑤	1,298.6	1,089.4	△209.2

- FY2014 대통령 예산안 발표 및 의회 제출 지연
 - 대통령 예산안의 의회 제출 마감일은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로 정해져 있으나 최근 몇년간* 시한을 지키지 못함
 - * FY2010(2009.2.26), FY2012(2011.2.14), FY2013(2012.2.13)
 - 예산안 제출일에 대한 예고는 없는 상황
 - 2.4일(월) 백악관 대변인(Jay Carney)은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제출 예정일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음⁶¹⁾

2. 기타

- 「부채한도 한시적(2013.5.18까지) 효력 정지 법안」, 하원 통과 (2013.1.23)⁶²⁾
 - 공화당에서 발의한 법안(H.R. 325)이 하원을 통과

60)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13.1.

61)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s, 2013.2.4.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04/press-gaggle-press-secretary-jay-carney-242013

62) 백악관(www.whitehouse.gov) Press Briefings 2013.1.22

미국 재무부, 'Daily Treasury Statement' (http://fms.treas.gov/dts/overview.html)

미국 하원, H.R. 325 To ensure the complete and timely payment of the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 Government until May 19, 2013, and for other purposes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3/hr325)

하여 상원으로 이송됨

- 2012.12.31 이후 현재까지 한도 적용 부채규모는 16조 3,939억 7,500만달러이며, 재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도 적용 부채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2012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 동 법안은 효력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효력부활일(5.19)에 소급 증액하도록 규정
 - 다만, 정부의 지급의무에 따라 5.19 이전에 발생된 채무에 한해 적용
 - 또한 4.15까지 FY2014 예산결의안 채택에 실패할 경우 결의안 채택일 또는 113회기 종료일까지 상·하원의 의원 급여를 지급 유예하는 규정 포함
- 오바마 대통령은 1.22 성명을 통해 동 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

■ 「부채한도 효력정지법(No Budget, No Pay Act of 2013)」 제정 (2013.2.4)

- 2013.1.31 상원 통과, 2013.2.4 대통령 서명으로 법률 효력 발생

■ 오바마 대통령, 자동지출삭감(Sequester) 추가 연기 제안 (2012.2.5)⁶³⁾

- 오바마 대통령은 2.5 기자회견에서 의회에 지출삭감 및 세제개혁을 통한 자동지출삭감 연기 제안
- 구체적인 기간과 긴축 규모는 언급하지 않음

■ CBO, FY2014 예산 기준선(baseline) 전망 발표 (2013.2.5)⁶⁴⁾

- (경제전망) 2013년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며, 2014년 이후 실업률 하락과 물가 및 이자율 상승으로 경제회복이 가속될 전망
 - 사회보장급여세율 환원, 부자 증세 등의 재정긴축과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동지출삭감*이 2013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줌
- * 2013년에 적용되는 자동지출삭감 규모를 850억달러로 예측
- 2015~2018년 평균 성장률이 3.7%로 예측되나, 2017년까지는 실질GDP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전망

〈표 22〉 CBO, 경제 전망 2012~2023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 2018	2019 ~ 2023
	Estimates	Forecast		Projected Annual Average	
실질GDP성장률 ¹⁾	2.3	1.4	2.6	3.7	2.3
CPI ¹⁾	2.1	1.6	1.9	2.2	2.3
실업률 ²⁾	8.1	7.9	7.8	6.1	5.4
금리 ²⁾					
90일(Treasury bills)	0.1	0.1	0.2	2.2	4.0
10년(Treasury notes)	1.8	2.1	2.7	4.5	5.2

주: 1) 전년비
2) 연평균

- (재정전망)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득증가와 부자 증세, 지출삭감 등에 따라 개선되어 FY2015에 GDP의 2.4%까지 감소 예측
 - FY2013 재정적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 이하로 감소

63) The White House Blog, <http://www.whitehouse.gov/blog/2013/02/05/president-obama-makes-statement-sequester>

64)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3 to 2023, <http://www.cbo.gov/publication/43907>



- 반면 FY2017 이후 인구고령화, 의료비용 증가, 건강보험 연방보조금 확대, 채무이자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될 전망
-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FY2014에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GDP의 7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23〉 CBO, 재정 전망 2012~2023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수입	2,449	2,708	3,003	3,373	3,591	3,765
(GDP %)	(15.8)	(16.9)	(18.0)	(19.1)	(19.1)	(18.9)
지출	3,538	3,553	3,618	3,803	4,067	4,300
(GDP %)	(22.8)	(22.2)	(21.7)	(21.6)	(21.6)	(21.5)
재정수지	△1,089	△845	△616	△430	△476	△535
(GDP %)	(△7.0)	(△5.3)	(△3.7)	(△2.4)	(△2.5)	(△2.7)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1,280	12,229	12,937	13,462	14,025	14,642
(GDP %)	(72.5)	(76.3)	(77.7)	(76.3)	(74.6)	(73.4)
구분	FY2018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수입	3,937	4,101	4,279	4,496	4,734	4,961
(GDP %)	(18.8)	(18.7)	(18.7)	(18.9)	(19.0)	(19.1)
지출	4,542	4,811	5,078	5,350	5,691	5,939
(GDP %)	(21.7)	(22.0)	(22.2)	(22.4)	(22.9)	(22.9)
재정수지	△605	△710	△798	△854	△957	△978
(GDP %)	(△2.9)	(△3.2)	(△3.5)	(△3.6)	(△3.8)	(△3.8)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5,316	16,092	16,957	17,876	18,902	19,944
(GDP %)	(73.1)	(73.5)	(74.2)	(75.0)	(76.0)	(77.0)

〈자료 수집 및 정리: 권나현 전문연구원〉

정책 흐름



- 2012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부 마감
-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2012년 세법 · 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2012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부 마감

* 본 자료는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과에서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부 마감」 중 세제분야의 주요 제도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 8(금) 11:30 감사원의 성용락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 · 세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 총세입 · 총세출부 마감의 의의 :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 · 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

- 마감 결과, 총세입은 282.4조원, 총세출은 274.8조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6조원 발생했으며, 이월액과 불용액, 세계잉여금은 각각 7.7조원, 5.7조원, △0.1조원이 발생하였음

- 총세입 282.4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23.7조원(당초 예산액 223.1조원 대비 0.6조원이 초과 징수), 특별회계에서 58.7조원(당초 예산액 59.5조원 대비 0.9조원 적게 징수) 발생

- 총세출 274.8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20.7조원(예산현액 225.4조원* 대비 97.9%)이 집행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4.1조원(예산현액 62.8조원** 대비 86.1%)이 집행되었음

* 예산현액(225.4조원)=예산액(223.1조원)+전년도 이월액(2.3조원) 등

** 예산현액(62.8조원)=예산액(59.5조원)+전년도 이월액(2.8조원) 등

- 결산상 잉여금 7.6조원은 일반회계에서 3.0조원, 특별회계에서 4.6조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불용액 5.7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6조원, 특별회계에서 3.1조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0.9조원, 특별회계에서 △1.0조원으로 총 △0.1조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별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정부는 총세입 · 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5.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1 '12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부 마감 결과

◇ 2012회계연도 세입 · 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 282.4조원(예산 대비 0.1% 감소), 총세출 274.8조원(예산현액 대비 95.4% 집행)

○ 다음연도 이월액(7.7조원) 고려시 세계잉여금은 △0.1조원
(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I.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총세입·총세출

- 총세입 282.4조원, 총세출 274.8조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0.1조원(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단위: 억원)

구분	예산액	세입액(A)	세출액(B)	결산상 잉여금(C=A-B)	이월액	
					(D)	(C-D)
일반회계	2,231,384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2011)	2,099,303	2,148,604	2,074,469	74,135	22,850	51,285
특별회계	595,490	586,670	540,733	45,937	55,954	△10,017
(2011)	541,626	556,408	514,988	41,420	27,980	13,440
합계	2,826,873	2,823,704	2,747,611	76,093	77,577	△1,484
(2011)	2,640,929	2,705,012	2,589,457	115,555	50,830	64,725

■ (세입) 282.4조원으로 예산(282.7조원) 대비 0.3조원 미징수

- (일반회계) 예산 대비 0.6조원(0.3%) 초과한 223.7조원 징수
 - 국세수입: 법인세 +1.4, 기타내국세 +1.3, 부가가치세 △1.1, 관세 △1.8, 개별소비세 △0.7 증권거래세 △0.5 등
 - 세외수입: 전년도이월금 +3.8, 기타재산수입 +0.5,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1.9, 관유물매각대 △0.3 등

■ (특별회계) 예산 대비 0.9조원(△1.5%) 감소한 58.7조원 징수

- 농어촌구조개선 △2.8, 우체국예금 +1.3, 국방·군사시설이전 △0.3 등

■ (세출) 274.8조원으로 예산현액(288.2조원) 대비 95.4% 집행

- (일반회계) 예산현액(225.4조원*) 대비 97.9%인 220.7조원 지출

* 예산액(223.1조원, 전년도이월액(2.3조원) 등

- (특별회계) 예산현액(62.8조원*) 대비 86.1%인 54.1조원 지출

* 예산액(59.5조원, 전년도이월액(2.8조원) 등

- (이월·비용) 이월액 7.7조원, 비용액 5.7조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액은 2.7조원 증가, 비용은 0.1조원 감소

(단위: 억원)

구분	이월액			비용액		
	2012년(A)	2011년(B)	증감(A-B)	2012년(C)	2011년(D)	증감(C-D)
일반회계	21,623	22,850	△1,227	25,847	23,591	2,256
특별회계	55,954	27,980	27,974	31,374	34,433	△3,059
합계	77,577	50,830	26,747	57,221	58,024	△803

* 이월: (일반회계) 방위사업청(0.7), 국방부(0.7), 국토해양부(0.3)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3.1), 혁신도시건설(0.9), 광역지역발전(0.8) 등

* 비용: (일반회계) 기획재정부(0.6), 국토해양부(0.3), 지식경제부(0.3) 등(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0.9), 에너지및자원사업(0.7), 혁신도시건설(0.3) 등

■ (세계잉여금) △0.1조원(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7.6조원)에서 이월액(7.7조원)을 제외한 금액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0.9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 정산,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특별회계는 자체세입 조치)

II. 향후 추진계획

- 각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국무회의심의·대통령 승인, 감사원 검사를 거쳐 5.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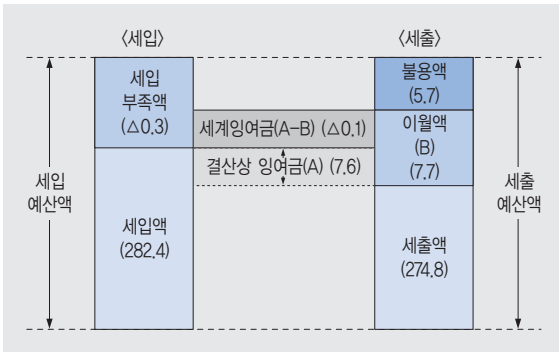
참고 2

'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관련 참고자료

1. '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그림으로 보는 결과

(단위: 조원)



주: 위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도로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결산상 잉여금(7.6조원) = 세입액(282.4) - 세출액(274.8)
- 세계잉여금(Δ0.1조원) = 결산상 잉여금(7.6) - 이월액(7.7)

도표로 보는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예산액	세입액 (A)	세출액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일반회계	2,231,384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2011)	2,099,303	2,148,604	2,074,469	74,135	22,850	51,285
특별회계	595,490	586,670	540,733	45,937	55,954	Δ10,017
(2011)	541,626	556,408	514,988	41,420	27,980	13,440
합계	2,826,873	2,823,704	2,747,611	76,093	77,577	Δ1,484
(2011)	2,640,929	2,705,012	2,589,457	115,555	50,830	64,725

2.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

- 금번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은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강화 등 충실한 재정집행,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약 Δ1조원 추정), 수입액 감소에 따른 관세 감소(Δ1.0조원), 농특세 징수액 감소 및 이에 따른 이월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세계잉여금 절대규모(0.1조원)가 '0'에 가까운 균형 수준으로 접근

* 주요사업기준 재정집행률(%) : '10(95.6) → '11(95.4) → '12(96.2)

* 농특세 징수액 감소(예산 5.5조원 → 실적 3.9조원) ⇒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농특세 전입금 감소(Δ1.4조원) ⇒ 세출 이월 확대(3.1조원) 등의 이유로 2.6조원의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 농특세 실적 : ('11실적) 48,948억원 → ('12예산) 55,339 → ('12실적) 38,513(Δ16,826)

※ [참고]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사례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적자발생 연도(2회) : '63, '64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적자발생 연도(4회) : '88, '92, '98, '12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금년 4월경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확정될 예정

(단위: 억원)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기금출연	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2007	153,428	54,133	29,788	20,852	45,685	2,970
2008	45,763	2,947	12,845	8,991	20,979	
2009	36,087	7,864	8,467	5,927	-	13,829
2010	59,514	15,817	13,109	9,176	-	21,412
2011	51,285	19,587	9,509	6,657	-	15,532
2012	8,533					

-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그 회계내에서 자체 처리됨
 -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 항목으로 계상
 - * 이월액 → 다음연도 세출에 '전년도 이월액' 항목으로 계상

3. 적정 세입·세출 편성노력 강화 및 특별회계 이월제도 개선 검토

- 적정 세입·세출 편성노력 강화
 - (예시) 악화된 경기여건 등을 반영하여 농특세 세입예산 편성('12년 5.5 → '13년 4.5조원, △1.0)
-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개선 검토
 - 일부 특별회계법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의 예외 규정이 있어 일반회계에 비해 이월이 용이 → 상대적으로 이월 과다 및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
 - ☞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중앙관서 차원의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이월제도 개선방안 마련 검토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 본 자료는 2013년 2월 15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OECD는 2. 15(금) 프랑스시간 11:30(한국시간 19:30)에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3)」를 발표
 - ※ OECD는 매년 1회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간

참고 보고서 주요 내용

1. OECD 구조개혁평가의 배경

- 1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
- 2 이번 보고서는 '11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
 - OECD국가의 구조개혁은 최근 진전을 보였으며, 특히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구조개혁의 강한 촉매제(potent catalyst)로 작용
 - 유로지역 위기국가들은 복지제도 개혁, 재정 건전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 앞으로도 성장 회복 등을 위해 각국은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 노력을 추진할 필요
 - 유로지역 국가들은 실업 해소가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며, 조세·지원(tax/benefit)제도,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여타 선진 OECD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노동생산성 제고, 네트워크 분야 규제 개혁 등을 추진
- 저소득 OECD국가들과 BRIICS* 국가들은 교육제도의 질을 향상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

* 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South Africa

2. 우리나라에 대한 구조개혁 과제 이행실적과 권고내용

평가

- 우리나라 1인당 GDP는 빠른 증가를 지속하여 OECD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 등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조
 - 최근의 구조개혁 노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측면
 - 한-EU, 한-미 FTA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서비스·농업 생산품 수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
 - 보육시설·유치원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
 - 다만, 생산성 격차 축소·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

1 국내·해외 기업의 네트워크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 높은 진입장벽은 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방해

- **(이행실적)** 전기통신분야의 경쟁 강화를 위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11년), 한-미 FTA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할 예정('15년부터)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program provider

- **(권고사항)** 서비스·네트워크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노력 지속,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노동활용도를 제고하고,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우선과제

- **(이행실적)**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2~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 제공('12년)
- **(권고사항)**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고, 출산·육아 휴직 이용 장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지원 노력 강화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 중 하나

- **(이행실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보조('11년 후반), 정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대('12년)
- **(권고사항)**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호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

4 간접세 확대 등을 통한 세계 효율성 제고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낮은 편이나, 현재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이 높은 편으로 간접세 확대를 통해 성장 친화적인 개편 가능

- **(이행실적)** 없음

- **(권고사항)** 부가세, 환경세, 재산보유세 등 간접세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게 유지하여 고용과 성장을 촉진

5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 OECD평균의 두배 수준으로 높은 생산자 지원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잠재 성장률을 저해

- **(이행실적)** '11년 중반 이후 3건의 FTA를 발효하여 농산물 분야에 대한 장벽을 큰 폭으로 완화한 반면 농민에 대한 이전지출 확대
- **(권고사항)**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본 자료는 2013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 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 17.)한 바 있으며
 - 이후 입법예고(1. 18~2. 4.) 및 부처협의(1. 17~1. 27.)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특례규정(농림·외국인·제주도)
-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 시행령 수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15일 공포 예정임

참고 2012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1.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 조정(소득령§25)

당초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10년 이내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보증기간내 사망시에는 보증기간 종료시) 2)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것 3)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p>(10년 이내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p>

수정이유 ▶ 종신형의 경우 기대여명 이내의 보증기간을 통한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음을 감안

2.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 보완(소득령§25)

당초안	수정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 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최초납입 기본보험료의 1배내 증액 또는 1/2이내 감액 허용) • <추 가> ②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최초보험료의 1배내 증액 허용) • 6개월 이내의 선납인정

수정이유 저축성보험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요건을 보완

3. 보험내용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적용 등(소득령§25)

당초안	수정안
■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① 시행일 이후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시: 변경일부터 계약기간 기산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②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변경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새로 기산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좌 등)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②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변경시: 전체계약분에 대해 새로 기산 (좌 등)

수정이유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변경시: 전체계약분에 대해 새로 기산

4.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소득령 §157④1)

당초안	수정안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u>국세기본법 시행령 (§1 조의2②)상 특수관계인 중 법인의 사용인을 제외</u>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u>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임직원 등 제외</u>

수정이유 대주주에 해당되는 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 대상을 명확화

5.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시기 보완(소득령§190)

당초안	수정안
■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시기를 일원화 • 할인매출일 또는 만기일 → <u>할인매출일</u>	→ <u>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기업어음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는 만기일 선택 허용</u>

수정이유 기업어음이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없음을 고려

6. 연금계좌 연금수령 기간 조정(소득령§40의2)

당초안	수정안
■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요건 1)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2)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3) 1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연금수령기간 변경 (좌 등) 3) 15년 이상 → 10년 이상

수정이유 현행 연금저축 수령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연장

7.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법인령§97)

당초안	수정안
<p>■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신고하는 모든 법인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5년간 보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한해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p>※ 현행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대표자 서명날인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신고: 서명날인 필요 전자신고: 서명날인 규정 없음 	<p>* 총신고법인 460,614개 중 20,261개(4.4%)</p>

수정이유 ▶ 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완화

8.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세무조정방법 보완(조특령§69)

당초안	수정안
<p>■ 기부금·접대비 외 세무조정사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p>- 대손충당금·대손금</p>	<p>■ 세무조정방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p>* 단, 旣 적용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정(시행규칙으로 규정)</p> <p>-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대손금에 한해 세무조정</p>
<p>※ 현행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적용대상 조합법인은 기부금, 접대비에 한하여 세무조정 중</p>	

수정이유 ▶ 제도개선에 따른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9.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세제지원 대상 추가(조특령 별표 8)

당초안	수정안
<p>■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p> <p>*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 임상평가기술 - <추가> 	<p>■ 대상 기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혁신형 개량신약

수정이유 ▶ 제약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

10.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제도 도입(상증령§13)

당초안	수정안
<p>■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제도 도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5년마다 재지정 요청받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p>■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확인 의무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관청을 통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통보 5년마다 요건충족여부를 재확인 받도록 함

수정이유 ▶ 지정절차 대신 요건충족여부 확인절차를 마련

11. 연부연납시 물납제한(상증령§70, §75)

당초안	수정안
<p>■ 연부연납 시 물납금지를 위해 물납신청절차 및 물납가액산정 방법을 삭제</p>	<p>■ 연부연납 시에는 첫 회분(중소기업의 경우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하여 물납 허용</p>

수정이유 ▶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 수준 보호

12.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세후영업이익의 개념 보완(상
증령34의2㉔)

당초안	수정안
<p>▣ 회계상 영업이익에 다음의 세무 조정사항만 반영</p> <p>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③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④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자산의 취득가액 <추 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현행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적용대상 조합법인은 기부금, 접대비에 한하여 세무조정 중</p> </div>	<p>(좌 동)</p> <p>⑥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p>

수정이유 ▶ 과세대상인 세후영업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

2012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 본 자료는 2013년 2월 7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2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개정대상 시행규칙) 총 19개 세법 시행규칙*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과세자료제출법, 부가가치세 특례규정(농림·외국인)

• (주요 개정내용)

- ①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 인하
 - ② 법인세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
 - ③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
 - ④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 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 (추진 일정) 입법예고(2. 8~2. 18), 부처협의(2. 8~2. 18)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①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 인하(소득규칙 §23, §57)

• (현행) 4.0% → (개정) 3.4%*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

• (적용시기) '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② 전자계산서의 표준 및 시스템 사업자 근거 신설(소득규칙 §96의4)

• (신설)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 및 시스템 사업자 근거 준용

• (적용시기) '13. 4.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①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산식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 §60의4)

• (현행)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시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연결법인간의 거래를 차감하여 계산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times \frac{\text{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text{자산총액} - \text{연결법인간 거래}}$$

×익금불산입률

- **(개정)** 자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와 사업부제를 이용하는 경우간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결집단의 자산총액 계산시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를 상계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연결법인간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됨을 명확화
- **(적용시기)** '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2012 세법개정안」에서 발표(12. 8. 8.)

- **(현행)** 기준내용연수 5개(5년, 8년, 10년, 12년, 20년)*
 - * 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개정)** 세법상 상각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에 부합하도록 기준내용연수 4개(4년, 6년, 14년, 16년)를 추가하여 기준내용연수 개수를 증가(5개 → 9개)시키고 11개 업종을 조정

업종(11개)	현행(년)	개정(년)
교육서비스업	5	4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6
통신업	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8
부동산업	5	
종합건설업	5	12
수리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16

- **(적용시기)** '14. 1. 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 '13. 12. 31 이전 취득하는 자산은 현행 기준내용연수 적용

③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법인세법 시행규칙 §26)

- **(현행)**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개정)**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착공연장을 승인(재승인 포함)받는 분부터 적용

④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6의4)

- **(신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6개 단체 및 유엔난민기구 등 4개 국제기구에 대해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특별법상 단체)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국제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

성장기구(GGGI)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 8의3)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12 세법개정안」에서 발표(12. 8. 8.)

- **(현행)**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 **(개정)**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 추가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조특규칙 별표 10)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 **(개정)**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간 통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면세사업으로서 지방공사에 이전된 사업 추가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조특규칙 별표 8의5)*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12 세법개정안」에서 발표(12. 8. 8.)

- **(신설)** 아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정함
 - 이산화탄소(CO₂)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메탄(CH₄)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아산화질소(N₂O) 재사용 및 분해기술
- 불소화합물(HFCs, PFCs, SF₆)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 신설(상증규칙 §4)

※ 「2012 세법개정안」에서 발표(12. 8. 8.)

시행령 개정내용(영§13)

◇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확인제도 도입

*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운용소득의 80%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 이하

- 요건추가: 계열기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금지
-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도입: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인(매 5년마다 재확인)

- **(신설)**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매 반기마다 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확인 요청

* 제출서류: 해당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전용계좌개설신고서, 결산서류공시내역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통보
-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의 이행내역을 제출

- **(적용시기)** '13.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②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개선(상증규칙 §24 11호 서식)
 - (현행) 상속인 전부신청
 - (개정)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허용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① 중간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 규정 보완(부가규칙 §9)
 - (현행) 중간조건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금과 잔금지급시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 (개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완료시점과 잔금지점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 * 계약금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추가(부가규칙 §9의2)
 - (현행)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세법 시행규칙

- ① 탁주(막걸리) 세원관리 강화(주세규칙 §9)
 - (현행) 탁주의 경우 납세증지 부착 의무가 없음
 - (개정) 세원관리 강화, 주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만kl 이상 출고되는 탁주에 대한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

- (적용시기) '14.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법 시행규칙

- ① 개항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추가(관세규칙 §62②)
 - ※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항공기는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허가수수료(1톤당 선박은 100원, 항공기는 1,200원, 50만원 한도)를 납부
 - (현행) 법령에 따른 강제입항, 조난자에 따른 일시입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 (개정) 수수료 면제사유에 개항외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추가
 - * 여수항처럼 지리적 특성상 대형 선박이 항계 밖에서 불가피하게 정박하는 경우 등
 - (적용시기)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
- ②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관세규칙 §37②)
 - ※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표본, 시약류, 원재료 등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
 - (현행) 연구소, 공단, 교육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30개 기관 지정
 - (개정)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법외에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 포함
 -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적용시기) 시행일부부터 적용
- ③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제(관세규칙 §43②)
 - ※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 (현행)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여수

- 세계박람회 등
- **(개정)**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추가
-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8. FTA관세이행특례법 시행규칙

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신설(규칙 §13조의2)

※ 「2012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발표(13. 1. 17.)

- **(현행)** 무료 발급
- **(개정)**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비변상 수준의 발급수수료(7,000원) 신설
 - 대한상의 발급분은 수수료 부과, 세관 발급분은 현행대로 무료로 발급(중소기업 부담 완화)
 - * 대한상의와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율: (대한상의80%, 세관) 20%
- **(적용시기)** '13. 7. 1부터 적용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규칙 §5·§6의2)

※ 「2012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발표(13. 1. 17.)

- **(신설)** 증명서의 신뢰성 강화 및 증명서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
 - ① 발급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 ② 소속직원 전문교육 실시의무, ③ 관세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권(원산지검증요청이 있는 경우 등)
-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③ 규제완화·제도개선(규칙 §6② 등)

- **(현행)**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신청시 선적 입증서류 등 제출 필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국문으로만 발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등
- **(개정)** 각종 신청 등의 경우 제출서류 폐지 등 제도 개선

- ①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신청시 사유서 및 선적 입증서류 제출 폐지, ② 국·영문 병기 인증서 도입을 통한 기업의 편의 제고, ③ 인증수출자 물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제출의무 생략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시행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불황 충격 청년층에 직격탄·구직실패는 ‘낙인효과’

조세研 “실업 경험 청년은 백수 지속하거나 임금 감소”

청년층이 구직에 실패하면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취업해도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홍승현·원종학 연구위원은 20일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보고서에서 “정부는 부정적인 경기 상황에 대응해 청년층에 특화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이 경기충격의 영향을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받았다.

경기침체에 기업들이 청년 신규채용을 먼저 줄이는 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은 1990년 5.5%에서 2011년 6.9%로 높아졌지만 고용률(43.6% → 40.5%)과 경제활동참가율(46.1% → 43.4%)은 함께 하락했다. 전 연령층의 실업률(2.4% → 3.0%), 고용률(58.6 → 59.1%), 경제활동참가율(60.0% → 60.9%)은 큰 변동이 없었다.

청년층에게 실업 경험 자체가 ‘그 사람의 생산성이 낮다’는 신호로 작용해 미래에도 실업이 계속되고, 취업 때 임금이 감소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생겼다. 경기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가 능력과 무관한 거시 충격 탓에 다른 세대보다 고용·임금에서 모두 불리해지는 이유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대학을 갓 졸업한 남성들의 실

업 확률은 경기 팽창기인 1995년과 2002년과 비교하면 첫째 해에 37.8%, 두 번째 해에 25.2% 높았다. 불황기 청년들은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하향 취업하거나 실업상태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직을 전전하다가 구직단념자로 비경제활동 인구화하는 현상도 있다. 청년 실업이 지속하거나 비경제활동 인구화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업급여·직업교육 등을 위해 실업자 개인에게 2년간 약 179만 7천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구매력이 줄어 부가가치세 수입은 4.7%가량 감소한다. 실업 후 건강 악화, 사회관계 악화, 사회범죄 증가 등으로 인한 폭넓은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 경험 자체가 갖는 중장기 부정 효과를 고려해 실업 경험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한국일보, 2013-02-20〉

나랏빚 GDP의 70%… 부채한도 정해야

조세研·재정법학회 세미나

옥동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위원(인천대 교수·한국재정법학회)이 선거 이후 불거진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해 국가부채 한도를 설정해 나라 공간을 지키자고 제안했다. 옥 위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옥 위원은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을 안다”라며 “공약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듣고 있다. 재정준칙(국가부채 한도 설정 등)이 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 목표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급증하는 나랏빚에 대해 염려했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34%인데, 공기업 빚까지 합하면 넓게 잡아 70%까지 육박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복지요구가 큰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므로 젊은 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신뢰문제로 결국 정치행위”라며 “제도보다 운용의 묘를 살리자”라고 주장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을 통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은 “우리는 나랏빚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지고 있어 위기가 닥치면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13-02-20)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건전성 확보”… 정부는 유보적

복지지출 증가나 경기충격에도 재정여력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정부는 법제화도 필요할 수 있지만, 현행 국가재정법 틀에서 기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조세연구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19일 조세연구원과 재정법학회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정책세미나에서 “명시적인 총량적 재정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위해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부채 통제를 위해 독일처럼 헌법에 국가채무 제한 조항을 넣고 제안했다.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감독권한을 가진 독립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찬성하고 국회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준칙의 형식에 대해선 “우리는 경성헌법이라 어려워 보인다. 다만 개헌이 이뤄진다면 선언적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한다면 재정건전화법(가칭) 같은 별도 입법이 낫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해룡 한국외대 부총장도 재정준칙 마련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방법에 대해선 선언적, 원칙적인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대통령령 이하가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위기 등 예외적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갈등사항이다. 핵심은 규범력 담보와 유연성 확보의 조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총량 규제보다 부문별 부채 성질, 발생요인을 고려해 규율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재정 건전성이 공약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국회의원 등 예산을 다루는 자에

대한 준칙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준칙이 필요하겠지만 선연적 의미를 지닌 헌법이나 법률로 정해봐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준칙의 예외 적용을 위한 경기 사이클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물론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며 “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의료와 연금인데 이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분야별로 룰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법제화도 좋지만 기존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견해였다.

국회 내부에서 증액을 통제하는 장치에 대한 고민이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출총량을 적어도 2년까지는 지키게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안 먹이면 법제화 등 다른 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3-02-19)

9억 넘는 순자산에 1% 과세팬 세수 7조

조세연구 ‘부유세 방법론’ 제안

매년 7조 3천억원. 한 국회연구기관이 9억원이 넘는 순자산(자산-부채)에 대해 평균 1%의 부유세를 매기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다.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세율은 연간 27조원이다.

노영훈 조세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부유세와 증부세: 보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부유세 도입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자산조사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노 위원은 “부유세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를 보완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2008년 기준 15.0%로 미국(41.9%), 일본(32.6%), 프랑스(17.4%)보다 크게 낮다.

부유세 세수 추계 규모

순자산(자산-부채)규모	세율	개정안의 과세구간	추계액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75%	53만 9156가구	3조 770억원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	29만 8416가구	2조 7410억원
30억원 초과	1.04%	8만 786가구	1조 5387억원
합계		91만 8328가구	7조 3567억원

그는 또 “부유세 도입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개선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세가 증부세와 가장 다른 점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다. 노 위원은 순자산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에 0.75%,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1%, 30억원 초과에 1.5%의 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9억원으로 잡았다. 이 경우 해당 가구는 91만 8,328가구이며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7조 3,567억원이다. 금융자산까지 더해져 증부세보다 과세대상이 많아지면서 세수도 늘었다. 2011년 기준 증부세 과세대상은 20여 만명, 세수는 2조 4,000여 억 원이다.

모든 자산의 합이다 보니 자산이 많은데도 주택보유세 부담은 되레 낮은 문제점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증부세 과세 대상 중 소득 5분위(상위 20%)의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은 0.32%로 다른 소득 분위(0.39~

0.40%)보다 낮았다. 반면 9억원 초과 순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면 5분위의 주택보유 실효세율은 0.34%로 1~2분위(각 0.24%)보다 높았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면서 자가거주주택인 경우 시가의 30%를 빼주는 방안, 이에 더해 소득 대비 세부담 상한을 50%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경우도 세수가 5조~6조원 가량 예상된다. 특히 소득을 고려했을 때의 소득분위별 주택보유 실효세율은 1분위(0.11%), 2분위(0.19%), 3~5분위(0.33%)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부유세는 단순히 부자를 못 살게 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과세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면서 “집은 있지만 빚도 많은 사람에게 큰 세부담을 안겨 주는 등 문제가 많은 종부세를 대신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3-02-05)

임기 초 줄푸세 2.0을 기대한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대선을 불과 10여 일 남기고 열린 대선후보 2차 토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줄푸세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누구도 당선을 확신할 수 없는 박빙의 순간에 자칫 표를 잃을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박 당선인은 그 이유까지 분명히 제시했다. 줄푸세 정책기조가 제2차 대권도전에서도 여전히 근혜노믹스의 핵심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물론 지금의 줄푸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같이 수용해야 하며, 더욱이 올해 어려운 경제를 위해 재

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6년 전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집권 5년간 복지공약에 이행되는 135조원의 60%를 이미 정한 예산에서 조달하려면 나라살림의 씬씀이를 줄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줄푸세의 ‘줄’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나머지 40%도 증세 없이 조달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줄푸세의 ‘푸’ 부분은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줄푸세는 원조 줄푸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굳이 표현하자면 줄푸세 2.0이라고나 할까.

이렇듯 근혜노믹스의 핵심이어야 할 줄푸세 후속 논의가 최근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연초 새벽에야 통과한 금년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오로지 복지공약 이행 예산에만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들리는 인수위 소식은 복지공약과 그 재원 마련에만 집중돼 있을 뿐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느냐에 대한 소식은 별로 없는 듯하다. 비록 당장은 얘기가 들리지 않더라도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천명한 새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정권 초기 발동을 걸지 않는 개혁은 물 건너가기 쉽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조치일수록 더욱 그렇다. 개혁은 보통 먹을 때는 쓰지만 복용하면 더욱 강한 체질을 만들어내는 쓴 보약에 비유되곤 한다.

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보통 임기 말 경제성적에 좌우되고, 이를 위해서는 임기 초에 보약을 처방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미국과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표 당해 경제성장의 1% 감소는 집권당의 득표율을 0.5~1% 깎아먹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개혁이 임기 초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위기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20개 OECD 국가들의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풀어 창업 등 새로운 경제활동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강력한 경제안정화 조치를 통해 인플

레이션 심리를 꺾는 등의 개혁조치들은 대부분 위기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들 조치는 주로 새 정부의 임기 초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개혁에 따르는 고통이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당연한 경제의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혁을 임기 초에 단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혁의 과실을 확신하는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 판단을 새 정부에서 기대하고 싶다.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금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지금은 과거 인플레이 시기처럼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의 조치는 곤란하다.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 함정의 상황에서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개혁의 고통을 부분적이거나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임기 초 줄푸세 공약 2.0의 전면적 태동을 기대해본다.

〈매일경제, 2013-02-01〉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 대수술 검토

지하경제 양성화 착수... 국세청, “변호사·성형외과 차명계좌·탈세 조사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 세정 당국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280만명·2010년 기준) 절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대수술을 검토하는 한편, 차명계좌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성형외과, 변호사 등 수십명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으로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간이과세 적용 부가가치율의 대폭 인상 ▲지방호족과 세정당국의 유착 가능성 차단 등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세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태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부가가치율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조세보조금을 주는 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 1,000원당 평균 467원을 챙기고 있지만, 당국이 실제 부가가치율(46.7%)보다 훨씬 낮은 30%를 적용하는 바람에 이들 자영업자가 부가세를 그만큼 덜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지적대로 부가가치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간 부가세를 내지 않던 140만 여명의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적은 액수나마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또 서울·수도권(33.3%) 대비 강원(51.7%), 제주(53.8%) 등 지방의 간이과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에 주목하고, 해당 지역 징세당국과 업자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도 올해부터 탈세 포상금(최고 10억원)이 대폭 인상되면서 잇따르고 있는 제보를 토대로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명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미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을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사용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매출액 50%),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등 탈루소득의 70%를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13-01-21〉

재정포럼

2013년 2월호 통권 제20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원 / 박주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장은정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3년 2월 15일 발행 / 제17권 제2호(통권 제20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유아및초중등교육
415,406 (13.9) +7.1 +8.3

고등교육
77,550 (2.6) +24.4 +24.3

평생·직업교육 7,333 (0.2) +23.3 -8.3
교육일반 1,209 (0.0) +0.2 -3.8

교육 501,498 (16.8) +9.6 +9.9

산업·중소기업일반 13,241 (0.4) +72.0 +26.3

산업기술지원 8,185 (0.3) +9.5 +13.4
무역및투자유치 5,984 (0.2) +67.5 -17.8

산업금융지원 4,349 (0.1) +90.3 -23.8

산업·중소기업 131,044 (4.4) +22.7 +6.5

과학기술연구지원 31,223 (1.0) +16.8 +14.3

기술개발 20,008 (0.7) -1.5 +18.0

과학기술일반 4,992 (0.2) +6.1 +15.8

과학기술 56,224 (1.9) +8.6 +15.9

농업·농촌
197,453 (6.6) -6.9 +44.8

임업·산촌 22,879 (0.8) +3.9 +2.2

농림수산 230,866 (7.7) -5.0 +37.5

도로 178,609 (6.0) +6.5 +14.2

철도 105,388 (3.5) +4.3 +13.0

해운·항만 24,039 (0.8) -13.6 0.0

물류등기타 19,293 (0.6) +1.9 -13.5

도시철도 15,777 (0.5) -26.8 +4.4

수송및교통 346,973 (11.6) +2.7 +7.3

보훈 41,647 (1.4) +6.9 +4.7

보육·가족및여성
43,358 (1.5) +34.5 +21.2

노안·청소년
43,891 (1.5) +10.1 +5.3

기초생활보장
85,532 (2.9) +8.2 +5.1

사회복지 283,046 (9.5) +14.2 +3.8

공적연금 20,581 (0.7) +7.1 +14.6

노동 20,650 (0.7) +19.7 +26.7

취약계층지원 14,950 (0.5) +18.5 +6.8

사회복지일반 6,569 (0.2) +17.7 +5.9

주택 5,868 (0.2) +91.5 -78.8

보건 69,169 (2.3) +14.3 +3.8

건강보험 54,933 (1.8) +11.0 +6.5

보건료 11,588 (0.4) +34.5 -9.9

식품의약안전 2,649 (0.1) +8.7 +6.0

지방행정·재정지원 361,697 (12.1) +6.6 +9.6

재정·금융 111,878 (3.7) -14.6 +6.2

일반행정 22,189 (0.7) +12.2 -8.0

입법및선거관리 8,732 (0.3) -33.8 +71.0

정부자원관리 6,229 (0.2) -5.8 -8.3

국정운영 5,433 (0.2) +8.8 +2.3

일반공공행정 516,159 (17.3) +0.2 +8.6

경찰 83,316 (2.8) +2.8 +3.2

법무및검찰 26,907 (0.9) +4.0 +1.3

법원및헌재 15,295 (0.5) +6.2 -1.1

해경 10,729 (0.4) +3.3 -0.2

재난관리 9,809 (0.3) +1.8 +16.2

공공질서 146,056 (4.9) +3.3 +2.9

외교·통상 19,971 (0.7) +1.4 +12.9

통일 4,472 (0.1) -16.5 -7.6

외교·통일 24,444 (0.8) -2.4 +7.8

병력운영 142,718 (4.8) +5.8 +5.3

전력유지 109,008 (3.7) +3.8 +3.2

방위력개선 101,163 (3.4) +2.2 +2.1

병무행정 1,808 (0.1) -2.7 +2.1

국방 354,696 (11.9) +4.1 +3.6

방송통신 3,567 (0.1) -3.8 -7.7

우정 73,331 (2.5) +5.1 +6.3

통신 76,898 (2.6) +4.6 +5.5

문화예술 16,698 (0.6) +9.3 +15.0

문화재 5,154 (0.2) +6.3 +3.8

관광 4,053 (0.1) +8.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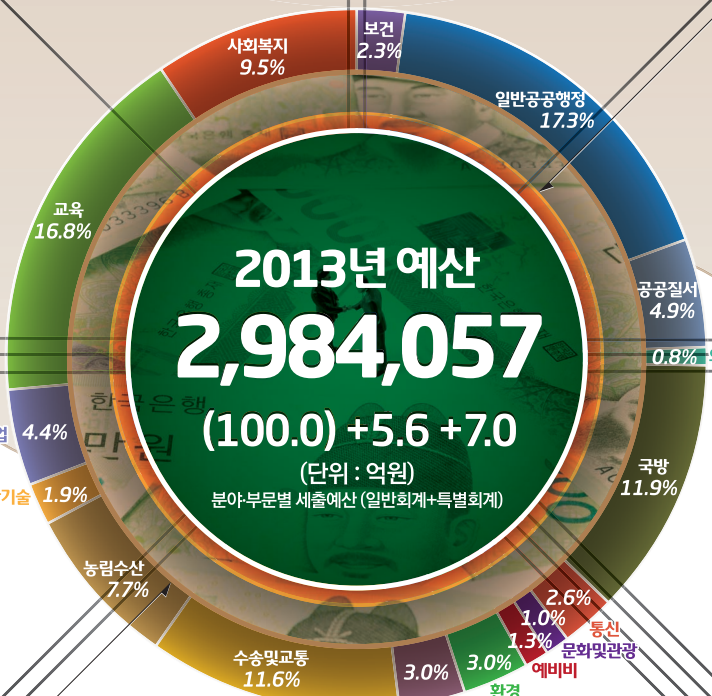
문화및관광일반 2,073 (0.1) +8.7 +0.3

체육 1,715 (0.1) +13.3 -2.7

문화및관광 29,693 (1.0) +8.8 +8.1

한 눈에 보는 2013 나라살림

342 조원
총 지출액



2013년 예산 2,984,057
(단위: 억원)
분야별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468.4 조원
국가채무 (2011)

2011년도 회계연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춘 일반정부 부채규모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형 부채

이렇게 보세요!

기능별 항목명	총예산 대비 점유율(%)
물류등기타	19,293 (0.6) +1.9 -13.5
항목별 예산금액(억원)	2011년 대비 2012년 증감률(%)
원의 크기는 총예산 대비 점유율	2012년 대비 증감률(%)
	증가는 청색, 감소는 적색

출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ttps://www.digitalbrain.go.kr) 2011, 2012, 2013 분야부문별 세출예산

지역및도시 51,987 (1.7) -4.6 -21.7
수자원 27,315 (0.9) -5.9 -42.2
산업단지 9,292 (0.3) -9.8 -5.0

환경일반 43,863 (1.5) +17.9 +3.2
상하수도·수질 33,283 (1.1) +6.2 +1.4
자연 4,260 (0.1) -3.6 +7.4
폐기물 3,390 (0.1) +17.6 +6.5
대기 2,919 (0.1) -9.7 +7.4

해양환경 1,981 (0.1) +21.9 -17.2



사이트안내